

연구보고서 2018-2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조성호 · 김지민

**【책임연구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조성호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현대아트컴

## 발간사 <<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work life balance’의 줄임말인 ‘워라밸’이 우리 사회 전반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입신양명, 출세 등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것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워라밸’이라는 삶의 질과 시간적 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을 챙길 여유가 없어진 현대인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향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정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가사, 여가 등의 활동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그 외 나머지 시간(육아·가사·여가·기타)의 배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명의 시간 배분이 다른 한 명의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간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독박 육아’라는 말도 성 평등 관점보다 워라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이들의 노동, 육아, 가사, 여가, 기타 시간 배분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육아, 가사, 여가, 기타 시간의 증감 관계 및 시간적인 비용과 시간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성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지민 연구원이 함께 집필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문을 해 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경 연구위원, 원내 김종훈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 목 차

|                                |            |
|--------------------------------|------------|
| Abstract .....                 | 1          |
| 요 약 .....                      | 3          |
| <b>제1장 서론 .....</b>            | <b>11</b>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3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16         |
| <b>제2장 이론적 배경 .....</b>        | <b>23</b>  |
| 제1절 일·생활 균형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 | 25         |
| 제2절 일·생활 균형의 실증 연구 고찰 .....    | 38         |
| 제3절 본 연구에서의 적용 .....           | 61         |
| <b>제3장 시간 배분 현황 .....</b>      | <b>67</b>  |
| 제1절 시간 사용의 변화 .....            | 69         |
| 제2절 시간 배분 현황 .....             | 71         |
| <b>제4장 시간 배분의 영향 요인 .....</b>  | <b>105</b> |
| 제1절 시간 배분 분석 사용 변수 .....       | 107        |
| 제2절 주중 시간 배분에 관한 분석 .....      | 109        |
| 제3절 주말 시간 사용에 관한 분석 .....      | 128        |
| 제4절 소결 .....                   | 129        |

---

|                                 |            |
|---------------------------------|------------|
| <b>제5장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b> .....  | <b>135</b> |
| 제1절 저출산 관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  | 137        |
| 제2절 고용노동 관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 | 143        |
| 제3절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국제 동향 .....     | 154        |
| <br>                            |            |
| <b>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b> .....    | <b>163</b> |
| 제1절 요약 .....                    | 165        |
| 제2절 정책적 제언 .....                | 170        |
| <br>                            |            |
| <b>참고문헌</b> .....               | <b>177</b> |
| <br>                            |            |
| <b>부 록</b> .....                | <b>189</b> |

## 표 목차

|   |    |
|---|----|
| 〈표 2-1〉 시간 사용 이론의 변화 .....                      | 39 |
| 〈표 2-2〉 시간 정의 및 분류의 변화 .....                    | 45 |
| 〈표 2-3〉 시간 사용 분류표 .....                         | 62 |
| 〈표 3-1〉 연도별 시간 사용량 추이 .....                     | 70 |
| 〈표 3-2〉 시간 배분 현황: 전체 .....                      | 71 |
| 〈표 3-3〉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         | 72 |
| 〈표 3-4〉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          | 73 |
| 〈표 3-5〉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         | 74 |
| 〈표 3-6〉 여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          | 75 |
| 〈표 3-7〉 남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중 .....              | 76 |
| 〈표 3-8〉 외벌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76 |
| 〈표 3-9〉 외벌이 남편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77 |
| 〈표 3-10〉 외벌이 남편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78 |
| 〈표 3-11〉 여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중 .....             | 79 |
| 〈표 3-12〉 외벌이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0 |
| 〈표 3-13〉 외벌이 아내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1 |
| 〈표 3-14〉 외벌이 아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2 |
| 〈표 3-15〉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중 .....                | 82 |
| 〈표 3-16〉 맞벌이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3 |
| 〈표 3-17〉 맞벌이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3 |
| 〈표 3-18〉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4 |
| 〈표 3-19〉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85 |
| 〈표 3-20〉 남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말 .....             | 86 |
| 〈표 3-21〉 외벌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87 |
| 〈표 3-22〉 외벌이 남편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88 |
| 〈표 3-23〉 외벌이 남편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89 |

|   |     |
|---|-----|
| 〈표 3-24〉 여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말 .....                 | 90  |
| 〈표 3-25〉 외벌이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1  |
| 〈표 3-26〉 외벌이 아내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1  |
| 〈표 3-27〉 외벌이 아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2  |
| 〈표 3-28〉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말 .....                    | 93  |
| 〈표 3-29〉 맞벌이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4  |
| 〈표 3-30〉 맞벌이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4  |
| 〈표 3-31〉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5  |
| 〈표 3-32〉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         | 96  |
| 〈표 3-33〉 유배우 남녀의 시간 부족감 .....                       | 97  |
| 〈표 3-34〉 시간 부족감에 따른 시간 사용량 .....                    | 98  |
| 〈표 3-35〉 시간 부족감에 따른 시간 사용량: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    | 100 |
| 〈표 3-36〉 전체 요일 및 성별의 동시행동 시간 사용 .....               | 101 |
| 〈표 4-1〉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주중 .....            | 108 |
| 〈표 4-2〉 아내의 임금함수 추정: 주중 .....                       | 110 |
| 〈표 4-3〉 아내의 시간 사용 추정: 주중 .....                      | 115 |
| 〈표 4-4〉 남편의 시간 사용 추정: 주중 .....                      | 118 |
| 〈표 4-5〉 본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중 .....                   | 121 |
| 〈표 4-6〉 배우자 시간 사용과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중 .....         | 123 |
| 〈표 4-7〉 교섭력 추정: 주중 .....                            | 125 |
| 〈표 4-8〉 본인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126 |
| 〈표 4-9〉 배우자의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127 |
| 〈표 5-1〉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진 계획 .....           | 139 |
| 〈표 5-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추진 계획 ..... | 140 |
| 〈표 5-3〉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                     | 141 |
| 〈표 5-4〉 고용노동부의 근무 혁신 10대 제안 .....                   | 143 |
| 〈표 5-5〉 유연근무제의 종류 .....                             | 145 |
| 〈표 5-6〉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및 내용 .....                      | 146 |



|  |     |
|--|-----|
| 〈표 5-7〉 시간선택제의 의미와 종류 .....                | 148 |
| 〈표 5-8〉 시간선택제 지원 유형 및 내용 .....             | 149 |
| 〈표 5-9〉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               | 150 |
| 〈표 5-10〉 임신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 .....              | 151 |
| 〈표 6-1〉 노동시간 단축, 달라진 근로기준법 .....           | 172 |
| 〈부표 1〉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주말 .....    | 189 |
| 〈부표 2〉 아내의 임금함수 추정: 주말 .....               | 190 |
| 〈부표 3〉 아내의 시간 사용 추정: 주말 .....              | 191 |
| 〈부표 4〉 남편의 시간 사용 추정: 주말 .....              | 192 |
| 〈부표 5〉 배우자 시간 사용과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말 ..... | 193 |
| 〈부표 6〉 본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말 .....           | 194 |
| 〈부표 7〉 상대임금 추정: 주말 .....                   | 195 |
| 〈부표 8〉 본인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195 |
| 〈부표 9〉 배우자의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196 |
| 〈부표 10〉 교섭력 추정(추정치): 주중 .....              | 197 |
| 〈부표 11〉 교섭력 추정(실측치): 주중 .....              | 198 |
| 〈부표 12〉 교섭력 추정(추정치): 주말 .....              | 199 |
| 〈부표 13〉 교섭력 추정(실측치): 주말 .....              | 200 |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OECD 국가의 6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 .....         | 13  |
| [그림 1-2] 연구 흐름도 .....                          | 18  |
| [그림 5-1]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 .....                 | 138 |
| [그림 5-2]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 .....         | 156 |
| [그림 5-3] 남성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 .....               | 157 |
| [그림 5-4]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 ..... | 159 |
| [그림 6-1] 시간 단축 시행 시기 .....                     | 173 |

---

## Abstract <<

### **Time Allocation for Work–Life Balance of Married Couples and Policy Implication**

Project Head: Cho, Sungho

Among the OECD countries, Korea is one of the hardest working countries has very long working time and a high percentage of long-time workers. Working long time has a lot of impact on life. Recently,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focuses on improving quality of life by reducing working ti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working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other times, and the effect of wage on time allo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reducing working time on childcare, housework, and leisure time, and whether it helps work-life bal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orking hour is 2.2 times long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However, housework hour is 7.2 times longer and parenting hour is 3.5 times longer for females than males. In the analysis of time use of husbands and wives, the major feature is that the factors of children are more influential than any other factors. For individual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time and other time is a trade-off. So, as work

## 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time increases, housework time and child care time decrease for both husbands and wives. For coupl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time and spouse's time is complementary. So, as one's work time increases, the other's work time decreases. As the wife's wage increased, her husband's work time and her own child-care time decreased. While husbands feel lack of time when they have a long working hours and preschool children, wives feel lack of time when they have a long parenting hours and feel lack of time less when they have long leisure hour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는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는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의 증감과 그 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그리고 임금이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완화가 육아·가사, 여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결과에서 남성은 노동, 여가, 가사, 육아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여성은 여가, 노동, 가사, 육아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가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7.2배, 육아시간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은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가사, 육아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외벌이일 경우에는 여성이 가사 및 육아를 하는 시간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

####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이 외벌이인 케이스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의 노동시간이 아내에 비하여 1.3배 길고, 가사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7.4배, 육아시간도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수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감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실제로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노동시간이 시간 부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유배우 부부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아내의 노동 참가 및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 미취학 자녀라는 요인은 아내의 노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등의 시간적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내의 시간 사용 분석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비선형성 경향을 보이는 점이며, 이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내의 노동시간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감소하고, 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존재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컸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사시간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증가했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감소하였는데, 이로써 가사시간 역시 자녀의 존재와 부모의 동거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아시간은 자녀 변수 효과의 방향성이 노동시간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증가하고,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감소하였다.

또한, 육아시간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의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부모 동거 여부는 가사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여가시간의 경우는 다른 시간 사용에 비하여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0~2세) 자녀의 존재는 여가시간을 감소시키지만, 학령기(6~12세)의 자녀가 있으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여가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모 동거 변수는 여타 시간 사용과 다르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함께 있을 경우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편하게 여가를 즐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타시간은 개인 속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의 기타시간의 정의가 주로 생존시간이 포함되고, 자녀 이외에 의무적으로 돌봄에 사용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것이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기타시간의 감소 폭이 다른 자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 많아지면, 기타시간을 줄여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남편의 시간 사용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자녀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유아(0~2세) 자녀가 있을 경우에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가사시간은 학령기(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증가하였다.

육아시간은 아내와 유사하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증가하고,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은 유아(3~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감소하였으나, 학령기(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였다. 기타시간은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였으나, 아내의 경우와는 다르게 13~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서는 아내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 본인의 가사·육아·여가·기타시간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기타시간의 증감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기타시간이 감소한 만큼 노동시간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아내의 시간 사용 간에는 모두 상충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모든 시간 사용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서도 아내와 동일하게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과 가사·육아시간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곧 육아를 하는 남편들이 가사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와 가사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여가시간과 기타시간과 가사시간이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남편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시간과 본인 시간과의 관계에서는 한쪽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다시 말하면 서로 보완적인 노동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부가노동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남편이 실직 등의 이유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내가 대신 노동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아내의 가사시간은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배우자의 시간 사용과 본인의 시간 사용 사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이 서로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육아는 대체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상대임금(임금 비율)을 교섭력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정치와 실측치를 모두 도입하여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상대임금이 증가하면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아내 자신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교섭력이 증가하면 아내의 육아시간이 감소하고, 아내의 임금 증가는 곧 아내의 시간당 기회비용이 남편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아내가 노동에 특화하여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부족감의 경우, 남편은 노동시간, 기타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아내는 육아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가시간이 길면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내는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는데도 시간 부족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시간이 증가해도 그것이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과 가사·육아시간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와 육아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 배분 현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육아시간이 절대적 수치로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의 장시간 노동 완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곧 부부의 일·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육아·가사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타시간도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기타시간은 대부분 생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가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수면 등의 시간도 증가하게 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성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여성은 직장에서 일을 한 뒤에도 퇴근 후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에 치이는, 소위 독박 육아·가사로 인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그 감소한 시간이 육아·가사 시간으로 이전된다면 그만큼 아내의 육아·가사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그럴 경우 아내도 일·생활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생활 균형의 포인트는 남편의 장시간 노동의 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였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7.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가진 부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의 국외 사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점이고, 남성 육아 휴직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 완화와 관련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용어: 시간 배분, 일·생활 균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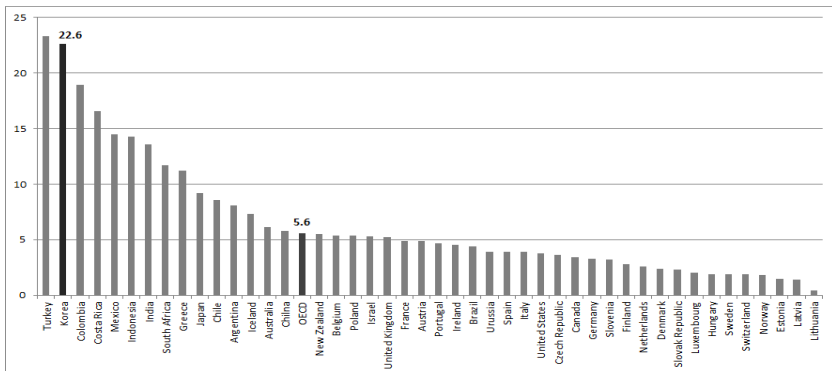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있다(OECD, 2017a). 6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로 23.3%이고, 한국은 22.6%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4배 많은 셈이다(OECD, 2017a).

[그림 1-1] OECD 국가의 6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

(단위, %)



자료: Forbes. (2018. 2. 2.). The Countries Where The Most Workers Are Putting In 60 hours A Week.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8/02/02/the-countries-where-workers-are-putting-in-a-shift-of-more-than-60-hours-infographic>에서 2018. 10. 2.에 인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전체 시간을 노동, 육아·가사, 여가시간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을 때, 노동시간의 증가는 다른 시간의 감소를 가져오는 시간 간의 상충(tradeoff)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증가가 다른 육아·가사, 여가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증가는 반드시 다른 시간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동시간의 증가가 여가시간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삶의 질 측면에서 악화될 것이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생활의 균형을 실천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진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아내의 육아·가사 시간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조성호, 2016),<sup>1)</sup> 남편의 장시간 노동 완화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가 육아·가사 시간으로 이전되는 것이 진정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본인의 시간 및 배우자의 시간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임금의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시간의 기회비용이 다른 시간 배분(여가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1) 조성호(2016)에서는 맞벌이 부부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육아시간이 약 3.5배, 가사시간이 약 9.2배 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은 보통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지고 노동시간의 증감은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대체효과는 임금이 증가하면 증가한 임금만큼 더 많이 노동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말하고, 소득효과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노동시간보다 여가시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여가시간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말하며, 이 두 효과가 결합되어 노동시간의 증감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효과와 실제 노동시간이 그 외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의 증감과 그 외의 시간 배분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려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완화가 육아·가사,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이들의 노동, 육아, 가사, 여가시간 배분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육아, 가사, 여가시간의 증감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려 한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소득, 종사상 지위, 직종, 맞벌이 여부에 따른 육아, 가사, 여가시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속성, 세부적으로는 소득, 종사상 지위, 직종, 맞벌이 여부 자녀수 등에 따른 노동, 육아, 가사, 여가시간 배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육아, 가사, 여가시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지금 정권으로 바뀐 이후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고 쓰이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은 이전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던 개념이었고, 지금도 부처의 정책 명칭에는 일·가정 양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둘의 개념은 교집합적인 측면과 한쪽의 여집합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이 둘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즉,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의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무슨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시간 배분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제3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그동안 우리나라 부부의 시간 배분이 어떠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엔 최근의 데이터로 조금 더 상세하게 시간 배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다. 먼저 요일에 상관없이 전체 시간 배분에 대한 현황을 보지만, 시간 배분은 주중과 주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이 둘을 나누어 살펴본다. 또

한, 속성에 따른 상세한 분석도 이루어지는데, 크게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부부에도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외별이 남성 및 여성, 맞벌이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시간 배분 현황을 살펴본 다음 제4장에서는 시간 배분에 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영향과 시간 사용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 정책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크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각 부처에서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6장은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에서 분석했던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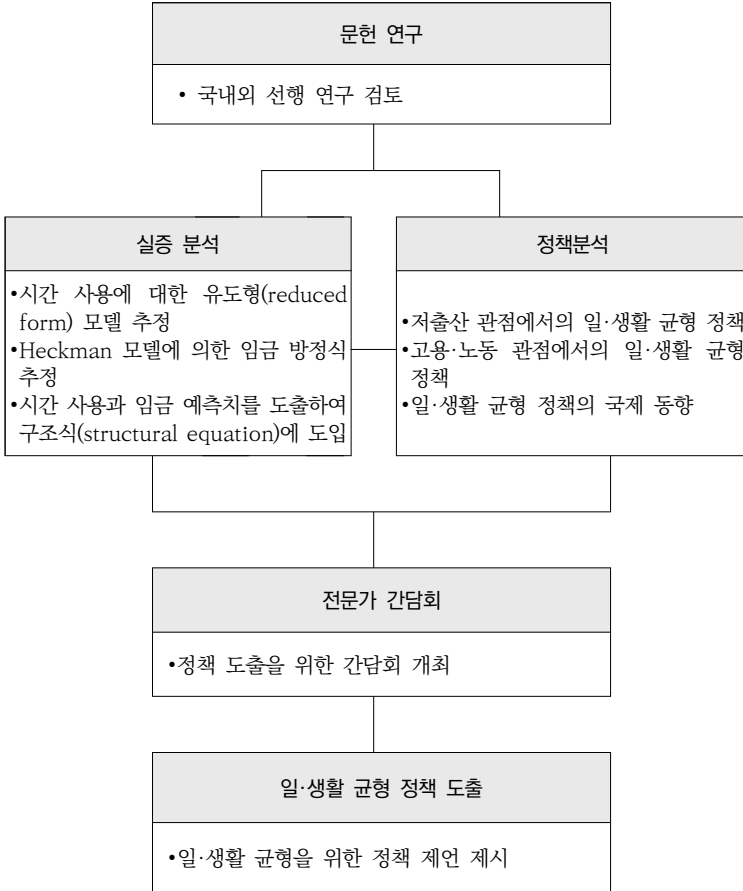
### 가. 연구 방법

서론 및 이론적 배경의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증 분석에서는 기존 조사 자료를 이용하는데,

18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주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시간 간의 관계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인간의 시간을 노동시간과 육아, 가사시

간으로 3등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동시간의 증감은 반드시 육아, 가사 시간 모두 또는 어느 한쪽 시간의 증감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점은 실증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시간 사용 사이에는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인 시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육아, 가사시간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하면, 육아, 가사시간이 설명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육아, 가사시간은 서로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정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간략하게 언급하면 시간 사용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각 시간 사용에 대하여 유도형(reduced form) 모델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치(fitted value)를 계산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여성의 임금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으로 추정하여 내생성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실증 분석 방법 이외에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일·생활 균형 정책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은 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차부터 3차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안에 일·가정 양립 영역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관점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정책이라는 것은 노동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등 남성 육아휴직 정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국제 동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와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 나.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시간 일지에 따라 실제 시간 사용량을 조사하여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문화, 교통 등에 관한 정책 수립이나 학문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통계법에 승인된 지정통계인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에 실시된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2004년, 2009년에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2014년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연혁을 살펴보면 1997~1998년에 생활시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개발을 위한 사전 시험 조사가 실시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제1회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었고 2003년에는 2004년 2차 조사에 대비하여 시험 조사와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9년 3차 조사는 3월과 9월에 걸쳐 2회 실시되었고 2014년 4차 조사는 7월, 9월, 12월에 걸쳐 3회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만 10세 이상 국민으로 조사 규모는 1999년에는 1만 7,000가구의 4만 6,109명, 2004년에는 1만 2,750가구의 3만 2,000명, 2009년에는 8,100가구의 2만 1,000명, 2014년에는 1만 2,000가구의 2만 7,000명이다. 조사 방법은 면접 조사와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시간 일지 보고이다. 면접 조사를 통해서는 가구 관련 항목과 개인 관련 항

목을 조사하고 시간 일지는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 사용을 일지에 기록한다. 시간 일지는 10분 간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매 10분 단위에 대해 자신이 한 행동을 기록한다.

면접 조사로 이루어지는 가구 관련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세 미만과 미취학 가구원의 유무를 파악하여 어린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연월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 돌봄이 필요한 이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유무와 분거 여부, 주택의 종류와 점유 형태, 가구 소득 등을 파악한다. 개인 관련 조사 항목은 교육 정도, 개인 소득, 인구·경제적 내용과 시간 사용에 대한 가치관과 주관적 느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여부와 시간 부족을 느끼는 이유, 일과 후에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본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한다.

시간 일지는 하루 24시간에 대해 10분 단위로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함께한 사람과 행위 장소, 이동 수단의 종류를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 일지를 작성한 날의 시간 사용 만족도, 건강 상태, 근무나 등교 여부 등을 함께 보고한다. 행동 유형은 2014년 기준 9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9개의 대분류는 개인유지(필수생활시간), 일(의무생활시간), 학습(의무생활시간), 가정관리(의무생활시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의무생활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여가생활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여가생활시간), 이동(의무생활시간), 기타(여가생활시간)이다. 대분류의 경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변동이 없었고 중분류 항목도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국민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 변화에 맞추어 소

분류 항목은 일부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1999년 행동 분류에는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중분류가 시장보기(식료품, 가구의 일용품 등)와 쇼핑하기(의복, 신발 등),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집,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구매)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온라인 쇼핑의 등장에 따라 2004년에는 무점포 쇼핑이 추가되었다. 2009년에는 나아가 물품구입 관련 소분류 항목이 모두 직접구입과 무점포 구입으로 분류되어, 생활용품 관련 직접쇼핑/무점포 쇼핑, 내구재 관련 직접쇼핑/무점포 쇼핑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에는 구입 항목을 생활용품과 내구재로 구분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로 분류하여, 상품 매장 쇼핑/온라인 쇼핑, 서비스 매장 쇼핑/온라인 쇼핑으로 소분류가 변경되었다.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삭제되거나 새로 추가된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애완 동·식물 돌보기,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의 항목이 추가되고 재봉·뜨개질, 저장식품(김치, 밑반찬, 잔치음식) 만들기가 삭제되었다.



## 제 2 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일·생활 균형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제2절 일·생활 균형의 실증 연구 고찰

제3절 본 연구에서의 적용



# 2

## 이론적 배경 <<

### 제1절 일·생활 균형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 1. 일·생활 균형의 개념

##### 가. 일·생활 균형의 정의

일반적으로 일·생활 균형이란 노동(유급 노동으로 한정) 영역에서의 수요와 다른 영역(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 등)의 수요가 호환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각 영역의 호환이란 한 영역에서의 활동량이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역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이를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 논의에 대해 노동과 개인/가정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강조하며 생활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생활 균형은 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 성 역할의 변화 등 사회의 여러 면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일·생활 균형은 어린 자녀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더 어렵고 이미 자녀들이 분가한 노년층 노동자나 독신자에게는 더 수월할 수 있다(Pichler, 2009).

일·생활 균형의 정도는 일과 생활에 사용하는 실제 시간량 측정이나 개인이 일과 생활을 유지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지표인 일·생활 균형감 측정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Pichler, 2009; 조미라, 2017). European Social Survey(ESS),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

SP)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사회조사에서는 주관적 일·생활 균형감 척도로 ‘가족으로 인한 일 갈등(family to work conflict)’, ‘일로 인한 가족 갈등(work to family conflict)’ 등을 묻는다. 시간량 측정은 노동시간, 가사시간 등 실제 시간 자체를 측정한다. 주관적 일·생활 균형감의 경우 직업적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조미라, 2017에서 재인용).

## 나. 일·생활 균형과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work life balance)과 일·가정 양립(work family balance)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일·생활 균형은 가정, 가족과의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뿐 아니라 취미생활, 개인만의 시간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선미, 구혜령, 이승미, 2018; 배규식 외, 2013). 일·생활 균형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직장, 가족, 개인의 세 가지 영역을 일·생활 균형의 요소로 꼽는다. 즉, 가족은 일·생활 균형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Delecta, 2011). Rao & India(2010) 역시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이며 개인의 삶 영역에 가정생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건강과 직업 만족도,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중 가족 수준의 균형은 결혼과 결혼 생활, 가족의 안정, 행복, 응집력 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신경아(2009)는 서구 사회에서는 일과 가족 둘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적 삶 또한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이라는 용어가 ‘일-가족-개인적 삶의 균형

(work-family-personal life balance)' 혹은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젠더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유럽의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03)에서는 정책적 지향점을 일-삶의 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일 영역에서 겪는 불리함을 개선하고 남성이 가족 영역에서 겪는 불리함을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신경아, 2009; 재인용). Lewis & Gambles & Rapoport(2007) 역시 일-가정이라는 용어는 여성,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가사와 양육으로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일-삶'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일·생활 균형의 이론적 논의<sup>2)</sup>

### 가. 경계론

Clark(2000)의 경계론(Border theory)에서는 일 환경과 가족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룬다(Lambert & Pasupuleti & Cluse-Tolar, Jennings & Baker, 2006). 산업혁명 이후 일이 가정에서 분리되면서 일과 가정은 목적과 문화가 다른 구분된 영역이 되었다. 개인들은 매일 이 두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목표와 대인관계 성향 등을 수정하기도 한다.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각자가 원하는 방향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균형'이란 "일 영역과 가족 영역 양쪽에서 만족감이 있고 적절한 기능이 유지되면서 역할 갈등은 최소한

2) 외국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일·생활 균형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일-가정생활 균형(work-family life balance)에 대한 이론을 포함.

인 상태”를 의미한다(Clark, 2000, p. 751).

또한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일과 가정 영역에서 중심 참여자(central participant) 혹은 주변인적 참여자(peripheral participant)의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한다고 본다. 중심 참여자는 해당 영역의 문화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다른 중심 참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 영역에서의 역할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 주변인적 참여자는 중심 참여자의 반대 역할을 한다(Lambert et al., 2006).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지지가 중요하다. 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border crosser)과 경계의 주요 구성원들(border keeper)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갈등을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lark, 2000).

Clark의 경계론은 일과 가정의 성격과 그 경계의 강도, 경계가 가진 다양성, 개인의 성향과 목적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차원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 영역의 공간적 분리가 모호해지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유연 시간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업무 시간과 일상 시간의 분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동향을 비추어 볼 때 초기의 경계론은 일·생활 균형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배규식 외, 2013).

## 나. 성 역할 이론

부부의 일·생활 균형에 관해서는 성 역할에 관련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다. 성 역할 이론(Gender role theory: Eagly, 1987)은 남성과 여성이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Eagly, 2013; Li & Bagger & Cropanzano, 201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구분이 엄격할수록 성 고정관념 또한 강화된다. 남성의 사회적 역할은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일 중심적이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전업주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정 중심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그것이다(Li et al., 2017). 그러나 과거에는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 모델의 가구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점차 이중생계부양자 모델의 가구와 한부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Greenhaus & Powell, 2006).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정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일로 인한 가정 갈등이 있을 때 여성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Colombo & Ghislieri, 200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중반부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른 성 역할이 규범적 지배력을 잃어 가고 있는 서구 사회에 비해 아직 변화가 더딘 편이다(신경아, 2014).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일·생활 시간 분배나 일 영역, 가족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 모델에 입각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력하다(신경아,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주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가사노동에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인정받아도 경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강이수, 2011; 김수정, 김은지, 2007).

성 역할 고정관념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의 지원이나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그 제도의 사용을 망설일 수 있다.

Hall(1990)은 여성 노동자와 비교해 남성 노동자는 가족 휴가를 적게 사용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이를 '보이지 않는 아빠 트랙(invisible daddy

track)’이라고 명명하였다. 직원이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직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거나 동료와의 경쟁 관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인식과 그러한 실제 문화 때문에 아버들이 가족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여성들의 시장노동 진입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식과 조직 구조의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다.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은 노동자가 조직에 헌신하게 되는 과정을 직원-조직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교환은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관계에 가치를 둘 때 발생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복지를 위한 조직의 노력을 인식하고 조직이 기대 이상으로 지지적이라고 느끼면 조직원인 노동자는 조직과의 교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게 된다(Blau, 1964). 즉, 노동자가 조직으로부터 지원과 배려를 받는다고 느끼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동자는 조직에 더 나은 태도와 행동, 헌신으로서 보답하고자 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사회교환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노력은 노동자의 조직에 대한 헌신을 높이는 부가적인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Kim(2014)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경험은 조직에 대한 헌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McNall & Nicklin & Masuda(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교환이론에 입



각하여 선행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일-가정 향상(work-family enrichment)과 가정-일 향상(family-work enrichment) 모두 직업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헌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Nall et al., 2010).

### 3. 일·생활 균형 관련 주요 이슈

넓은 의미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개념의 시초는 1800년대 말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Raja & Stein, 2014). 과도한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1919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첫 국제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협약으로 채택하였다(1919년 근로시간협약 제1호: ILO, 1919). 미국에서는 1938년에 공정 노동 기준 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적정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정하였다(Raja & Stein, 2014).

1972년에는 국제 노동관계 콘퍼런스(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conference)에서 노동자의 건강, 생활, 삶 전반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노동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 lif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Sinha, 2012).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 된 개념이다(이세영, 2013). 노동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연한 근무 환경,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등이다(Bhola, 2016; Sinha, 2012). 노동자가 자신의 직업 생활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업무 효

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인이 된다는 견해는 20세기 후반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Raja & Stein, 2014).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이 증가한 후로는 워킹맘과 공동 생계부양자 모델 가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Lewis et al., 2007). 1980년대에는 유연근무제와 출산휴가 등이 확립되었는데 초기에는 여성이 직장의 경력을 보류하고 가정을 돌보게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여성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Raja & Stein, 2014). 특히 여성, 어머니의 역할에 초점을 둔 ‘일-가정’에서 현재 일·생활 균형의 근간이 되는 ‘일-삶’으로의 전환은 1990년대에 그 담론이 시작되었다(Lewis et al., 2007).

### 가.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간

적절한 노동시간은 일·생활 균형의 기본 요인이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일·가정 갈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사회적 교류, 연인이나 가족과의 시간 등을 감소시키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긴 노동시간 때문에 연인과 결별하기도 한다. 유급 노동은 경제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정신건강과 개인, 가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gan & Lyonette & Smith & Saldaña-Tejeda, 2012).

한편 노동시장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양뿐 아니라 유연성과 자율성 등의 질적 요소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Galea & Houkes & De Rijk, 2014). 다양한 노동시간 형태로 노동시간이 재구조화된 것은 고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욕구, 인터넷

의 발달이 반영된 결과이다(Fagan & Vermeylen, 2016, p. 1). 고용자는 필요한 시간에만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간에만 단시간 근무를 하거나 전일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재택 원격 근무, 시차가 있는 지역 간의 동시 근무 등을 가능하게 해 전통적인 노동시간 구조의 경계를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시간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고 일·생활 갈등감을 감소시키는 등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xter & Chesters, 2011; Fiksenbaum, 2014). 그리고 노동시간에 대한 선호는 성별, 자녀의 유무, 나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Wadsworth & Facer, 2016).

하지만 적절한 근무시간 보장에 관한 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한 근무시간 구조는 많은 장점과 함께 일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장시간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생활시간이 가족들의 생활시간과 달라 일·가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시장에서 조건이 열악한 저임금 야간 근무 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ILO, 2018).

## 나. 일·생활 균형과 노동 환경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정책 등 노동 환경은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일·생활 균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 친화적 정책은 앞서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간에서 언급한 유연근무제와 같은 시간 보장형 제도 외에도 가족 지원 제도, 보육 지원 제도

등으로 다양하다. 노동 환경은 휴가, 보육 지원 제도와 같은 공식적 부분(제도)과 직장 분위기 및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가족 친화적 가치 등의 비공식적 부분(문화)으로 구성된다(Feeney & Stritch, 2017).

보육 지원 정책은 노동자가 직장 때문에 가정을 비우는 동안 자녀 보육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일·생활 균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녀 보육 비용은 부모인 노동자가 일자리와 관련된 선택을 할 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 따라서 직장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모인 노동자의 일·생활의 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직장 문화와 분위기 또한 일·생활 균형에 중요한 요인이다. 김준기,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공식적 제도 지원보다 양성 평등적 직장 분위기와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 내의 지원이 일·생활 균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조규진(2017)의 연구에서도 공식적인 지원 제도는 제한적인 갈등 완화 효과만 있고 가족의 지지와 조직 문화가 일·가정 양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eeney & Justin(2017)에 따르면 노동 환경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직장 어린이집, 자유로운 육아휴직 등의 노동 환경은 특히 남성의 일·생활 균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 중 하나는 직장에서의 노동 환경 변화가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직장의 공식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가 문화와 비공식적 규범을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다. 일·생활 균형과 성별 격차

일·생활 균형의 초기 개념은 기혼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출산, 양육과 가사노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었다. 즉,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 영역에 국한해 다루어졌다(김종관, 이운경, 2009).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려되었던 개념이 기혼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가사라는 이중적 부담을 가져오게 되었다(김영주, 안선영, 김현아, 박효진, 2014).

노동 영역에서 일·생활 불균형의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M자 곡선을 이루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아예 중단하고 가정에 몰입하는 일·생활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이 M자 곡선은 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평등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OECD, 2017b). 이와 관련해 OECD(2012)의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이나 보육제도의 개선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와 회식 문화, 출산휴가에 따르는 불이익 등의 직장 문화로 인해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시에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성들이 가정에 시간을 더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장 문화와 고용 노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가정 영역에서 일·생활 불균형의 성별 격차는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급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이는 성 역할 규범으로 인해 남성은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에서 여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따라서 직장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 규범이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Fagan et. al., 2012).

최근까지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과 생활의 보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하는 기혼 여성의 노동과 가정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일·생활 균형재단, 2014). 이처럼 좁은 범주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생활 균형 정책의 상당수는 맞벌이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이 치우칠 경우, 맞벌이가 아닌 부부, 무자녀 부부, 결혼하지 않은 개인들의 삶은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정책은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가사 이중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가정생활로 한정했던 생활의 범주를 삶 전체로 확장하고, 이것이 비단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라는 관점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

## 라. 통신 발달과 일·생활 균형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 환경이 이전보다 비교적 유연해졌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부 직종에서는 출퇴근 시간, 업무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도 상사나 동료와의 의

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공간을 벗어나더라도 업무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일과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여러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업무 시간 외에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고현미, 박재춘, 2017).

통신기기의 활용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박상철, 고준(2014)은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스마트 기기가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업무를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성탁, 김종욱, 박상철(2015)의 실증 연구에서는 업무 종료 후에도 동료들과 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족 문화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한국사회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퇴근 후의 업무 지시가 일·가정 스트레스에 더욱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박재춘, 2017). 특히 퇴근 후에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업무 지시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는 직무 요구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현미, 박재춘, 2017).

이러한 문제에 따라 퇴근 후에는 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외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의안번호 2000400, 신경민 의원 등 12인).

## 제2절 일·생활 균형의 실증 연구 고찰

### 1. 일·생활 균형 접근 방식

#### 가. 시간 사용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시간 사용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의 시초는 Becker(1965)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가계(household)를 소비의 주체라고 했던 고전 경제학의 정의를 뒤집어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정의하였다.<sup>3)</sup> 즉, 가계는 가계 고유의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market good)와 가계 구성원의 시간을 투입하여 가계 내 상품(commodity)을 생산하여 가계 내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여기에서 신고전 경제학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소득에 대한 제약만이 존재했었다면, 가계 생산함수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포함되고, 따라서 가계 내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시간 배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Becker, 1965).<sup>4)</sup>

그러나 그의 이론에서는 가계 내 생산 시간을 여가시간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Becker(1965)의 이론을 확장한 것이 Gronau(1977)의 이론이다. 그는 가계 내 생산품을 산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가계 내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 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와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엄마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과 베이비시터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

3) 그런 의미로 가계를 '작은 공장(small factory)'이라 인식하는 경제학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Becker, 1965, p. 496).

4) 기존의 신고전 경제학에서 정의한 효용함수와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를 소비하며 효용을 극대화하였으나, Becker(1965)에서는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가 가계 내 생산함수의 투입물(input)이 되어 그 산출물(basic goods)을 소비하며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이다.



는 것이 완전 대체재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상기 이론이 발표된 이후, 시간 사용에 관한 이론은 가계 생산함수의 보완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는데, Gronau(1977)가 지적하였던 공동 생산(joint production)과 공동 소비(joint consumption)를 모델에 도입하여 그들의 이론을 발전시켰다(Graham & Green, 1984; Kiker & Ng, 1990; Kooreman & Kapteyn, 1987; Solberg & Wong, 1992). 다른 한편으로는 Gronau(1977)가 가정했던 가계 내 생산물이 시장재와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home-produced childcare)가 육아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process util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이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고 하였다(Kimmel & Connelly, 2007). 그렇기 때문에 가계 내 노동에서 육아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2-1〉 시간 사용 이론의 변화

| 학자(연도)                  | 내용  |
|-------------------------|---|
| Becker(19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까지 가계는 소비의 주체였으나 생산의 주체로도 정의됨.</li> <li>- 소득 제약과 함께 시간 제약이 도입됨.</li> <li>-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가 가계 내 생산함수의 투입물이 되어 새로운 재화를 생산함.</li> </ul> |
| Gronau(19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 내 생산품을 산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가계 내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 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와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나눔.</li> <li>- 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를 기본으로 모델을 발전시킴.</li> </ul>           |
| Kimmel & Connelly(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 내 생산물이 시장재와 완전 대체가 불가능함을 주장.</li> <li>- 육아를 하면서 얻는 효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대체 불가능.</li> <li>- 따라서 가계 내 노동에서 육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li> </ul>    |

5) 물론 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가정이 가계 생산 이론의 본질을 호도할 정도도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 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Gronau, 1977, p. 1122).

## 나. 시간 사용 정의 및 분류

Becker(1965)는 그동안 경제학에서 일하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외의 시간(여가시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후의 시간 연구에서는 시간 사용을 더욱 다양하게 이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Voss(1967)의 경우는 Becker(1965)와 유사하게 일하는 시간(work time)과 그 외의 일하지 않는 시간(nonwork time)으로 나누었으며, 일하지 않는 시간 속에는 여가시간(leisure time)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 Enke(1968, p. 438)는 임금노동시간(paid work), 비임금노동시간(unpaid work)으로 나눈 것은 다른 연구와 유사하나, 수면, 식사시간 등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생존시간(survival time)으로 정의 및 분류하였다.

반면, 경제학 이외에서 시간 사용 연구자들은 시간 사용을 ①임금 노동(paid work), ②가족 돌봄(household/family care), ③개인 시간(personal time), ④자유 시간(free time)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즉, 노동자(worker), 배우자(spouse), 부모(parents) 역할에 따라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다(Robinson & Godbey, 1997, p. 11).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임금 노동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하는 시간, 가족 돌봄은 가사, 육아, 쇼핑 등의 시간, 개인 시간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수면, 식사시간 등이 포함되며, 자유 시간은 TV 시청, 사교, 문화, 취미 등의 시간이 포함된다(Robinson & Godbey, 1997, pp. 11-13).

경제학과 경제학 이외에서의 시간 분류를 비교하면, 시장노동시간은 임금노동시간, 육아 및 가사시간은 가족 돌봄 시간, 여가시간의 경우는 개인 시간과 자유 시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경우에

도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여가의 경우에도 개인 시간과 자유 시간으로 분류된 것처럼 여러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정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보통 일을 하는 시간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는 GNP를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Voss, 1967). 그러나 Becker(1965)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은 소득을 얻기 위한 시장노동시간과 가계 내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가계 내 노동시간(육아·가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으나, 그동안 시장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은 모두 여가시간으로 분류가 되어 왔던 관계로 가계 내 노동시간 또한 대부분 여가시간으로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노동과 가계 내 노동은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노동과 가계 내 노동시간을 여가시간에서 분리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Gronau, 1977; Hawrylyshyn, 1978). 즉, 그동안 시간을 일과 여가로 나눈 이분법적 분류는 시대 및 경제적인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정의도 조정되어야만 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권익 향상과 함께 여성의 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 사용에 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Kimmel & Connelly(2009)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여성의 시간 사용을 가계 노동시간에서 육아시간을 분리하여, 임금노동시간, 가계노동시간(가사), 육아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분류했고,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시간 분류를 따르고 있다(Bloemen

& Stancanelli, 2008; Bloemen & Pasqua & Stancanelli, 2010; 윤자영, 2010; 조성호, 2016)

그 외에 노동과 관련되어 소비한 시간 또한 노동시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노동시간의 일부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Solberg & Wong, 1992).

## 2) 여가시간의 정의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여가시간의 정의를 일하는 시간 이외의 잔여 시간(residual time)으로 정의해 왔다. 그러나 여가시간은 개인의 의도 및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만일 여가시간을 일하는 시간 이외의 잔여시간으로만이 아닌 생산적 소비(productive consumption)를 하는 시간<sup>6)</sup>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동안 인식해 왔던 여가시간 접근법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시간은 소득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기회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Becker, 1965, p. 1965). 다시 말하면, 여가시간은 가게 내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생산적 소비에 사용하는 시간은 가게 내 상품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서는 육아와 가사시간을 여가시간에서 분리하지 않았는데, Gronau (1977)가 지적한 것과 같이 아이와 놀아 주는 것이 여가인지 가게 내 노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여가시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하는 시간 이외의

---

6) 이러한 시간은 수면, 식사 등이 포함된다.

잔여 시간 중에서 본인이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였는데(Voss, 1967, p. 102), 여기에는 ‘강제성의 정도(measure of constraint)’라는 기준이 있어서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해야만 하는(have to)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여가시간(nonleisure time)으로 분류되었다. 즉, 일하는 시간 이외의 잔여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감(obligation)으로부터 비롯될 경우에는 여가시간이라 할 수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discretionary time)을 여가시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sup>7)</sup>

한편, 여가시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면 시간과 같이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여가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의 여가시간은 전체 시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paid work),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unpaid work), 생존에 필요한 시간(survival time)을 뺀 시간으로 정의된다(Enke, 1968, p. 438).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레크리에이션 관점의 여가, 두 번째는 소비 관점의 여가, 세 번째는 일하는 시간 이외의 잔여 개념의 여가이다. 레크리에이션 관점의 여가는 사람들이 여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넓게 확대하면 집에서 TV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행동, 정신적인 휴식으로서의 독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Gershuny & Fisher, 2000, pp. 624-625).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여가를 소비하며, 이에 따라 여가시간이 정의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하는 시간

7) 이와 관련하여 Gronau(1977)와 Hawrylyshyn(1978)는 가계 내 노동(household work)이 여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의 모든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Gershuny & Fisher, 2000, p. 625).

반면, 여가시간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는데(Aguiar & Hurst, 2007), 첫 번째는 여가를 오직 직접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쓰인 시간, 예를 들어, TV 시청, 독서, 파티 참석, 쇼핑, 바에 가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 인터넷 서핑, 친구와 놀러 가는 것으로 분류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효용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에 쓰인 시간으로 수면, 식사, 개인적 케어(personal care)에 소비한 시간이다.<sup>8)</sup> 세 번째는 두 번째 시간에 더하여 자녀 돌봄이 포함된 시간이며, 네 번째는 세 번째 시간에 더하여 일하는 시간 이외의 잔여 시간, 즉 앞서 언급한 과거 경제학에서 정의했던 여가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변해 왔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육아·가사에 투입한 시간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면 노동시간으로 분류되면서도 이것이 가계 내에서 자급하게 되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거쳐 왔다. 그러면서 육아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라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비임금 노동으로 정의되었다.<sup>9)</sup> 이상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

8) 두 번째 의미의 여가시간은 첫 번째 의미의 여가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9) 비임금(nonwork) 노동시간은 비시장(non-market) 노동시간으로도 쓰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해당 연구자가 쓰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

〈표 2-2〉 시간 정의 및 분류의 변화

|                                       | 시간 분류                      |              |              |                 |          |      |
|---------------------------------------|----------------------------|--------------|--------------|-----------------|----------|------|
|                                       | Becker(1965)<br>Voss(1967) | 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Enke(1968)                            | 임금 노동<br>시간                | 비임금 노동<br>시간 | 생존시간         | 여가시간            |          |      |
| Gronau(1977)<br>Hawrylyshyn<br>(1978) | 노동시간                       | 육아·가사<br>시간  | 여가시간         |                 |          |      |
| Kimmel·Connelly<br>(2009)             | 노동시간                       | 육아<br>시간     | 가사<br>시간     | 여가시간            |          |      |
| Gershuny·<br>Fisher(2000)             | -                          |              | 레크리에이션<br>시간 | 소비시간            | 잔여시간     |      |
| Aguiar·Hurst<br>( 2007)               | -                          |              | 즐거움<br>시간    | 효용·생산성<br>행동 시간 | 생존<br>시간 | 잔여시간 |

## 2. 시간 배분 관련 이론 및 실증 분석 모델

### 가. 시간 배분 관련 이론 모델

시간 배분 이론은 기본적으로 (1)식과 같이 남편의 효용함수( $U_m$ )와 아내의 효용함수( $U_f$ )로 구성된 복지 함수(welfare function,  $W_h$ )를 극대화하는 것(maximizing)에서부터 시작된다.<sup>10)</sup>

$$(1) W_h = W(U_m, U_f)$$

복지 함수 내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효용함수는 각각 (2)식과 같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재화( $X_{mk}$ ), 가계 내의 생산함수에 의하여 생산된

10) 이론 모델은 Stancanelli & Stratton(2010)과 조성호(2016)를 참고하였다.

재화( $C_{hk}$ ), 여가시간( $l_k$ )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중  $C_{hk}$ 는 (3)식의 가계 내 생산함수( $F(\cdot)$ )에 의하여 생산되며, 가계 내 생산함수는 남편과 아내의 가계 내 생산시간( $t_{hk}$ )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로 구성된다.

$$(2) U = U_k(X_{mk}, C_{hk}, l_k) \quad k = m(\text{male}), f(\text{female})$$

$$(3) C_{hk} = F(t_{hm}, t_{hf}, X_{mk})$$

그러나 이 효용함수는 소득 제약과 시간 제약 하에서 극대화되는데, 소득 제약은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자신의 비근로소득( $Y$ )과 소득( $w_k t_{pk}$ )<sup>11)</sup>의 양 만큼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X_{mk} = Y + w_k t_{pk}$$

그리고 개인의 시간은 하루 최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t_{pk}$ ), 가계 내 생산시간( $t_{hk}$ ), 여가시간( $t_{lk}$ )의 합( $T$ )이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5식). 단, 가계 내 생산시간은 육아시간( $t_{cck}$ )과 가사시간( $t_{dwk}$ )으로 나뉜다(5'식).

$$(5) t_{pk} + t_{hk} + t_{lk} \leq T = 24$$

$$(5') t_{hk} = t_{cck} + t_{dwk}$$

---

11) 임금률(시간당 임금)×노동시간



다시 말하면, 기존의 가계는 예산 제약하에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시켰다면, 시간배분이론에서 정의하는 가계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시간 제약과 소득 제약하에서 가계 내 노동시간(육아·가사)을 투입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키며, 이 최대점에서 가계 생산물을 생산하는 최적의 시간 배분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복지 함수는 전체 효용에서 배우자가 점하는 비율(weight)과 가계에서 생산되어진 재화의 양(가치), 그리고 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도형(reduced form) 함수를 이용하여 구조적 수요 함수(structural demand function)를 도출하였다(Bloemen & Stancaelli, 2008; 조성호, 2016에서 재인용).

$$(6) \quad t_{dw, k} = dw_k(w_m, w_f, z)$$

$$(7) \quad t_{cc, k} = cc_k(w_m, w_f, z)$$

$$(8) \quad t_{l, k} = l_k(w_m, w_f, z)$$

$$(9) \quad t_{e, k} = e_k(w_m, w_f, z)$$

(6)~(9)식은 각각 육아, 가사, 여가, 기타 시간에 대한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을 나타내며,  $z$ 는 임금 이외에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나타낸다.

Bloemen & Stancaelli(2008)와 조성호(2016) 외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아내의 임금( $w_f$ )이 상승하는 것은 아내의 시간적인 가격(가치)이 상대적으로 남편

의 시간적인 가격보다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가 실제 시간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기 논의한 이론에서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에 있어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고 한다면, 시장노동시간( $t_p$ )이 증가하여 그만큼 가게 내 생산에 소비하는 시간( $t_h$ )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편 및 아내의 임금 변화는 가게 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변화하여 가게 내 생산물( $h_f$ )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만일 아내가 가게 내 생산보다 시장노동을 중요시한다면, 가게 내 생산의 수준을 낮추려 할 것이고, 이는 가게 내 생산시간( $t_h$ )의 감소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는 실제 분석을 통하여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섭력이란 집합적 모델(collective model)에서의  $\theta$ , 즉 분배 규칙(sharing rule)<sup>12)</sup>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Gupta & Stratton, 2008; Pollak, 2005; 조성호 2015, 2016),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부부 간의 상대적인 교육 수준(Gupta & Stratton, 2008), 상대적 임금(Addabbo & Favaro, 2011; Friedberg & Webb, 2005; Bloemen & Stanca-nelli, 2008; Bloemen & Pasqua & Stanca-nelli, 2010)을 사용하고 있으나, Pollak(2005, p. 4)는 임금률(wage rate)이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가게 내의 시간 배분 관점에서 볼 때, 시장노동시간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가게 내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일 임금이 높으면 시장노동시간이 짧음에도 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12) 분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iappori(1997) 참조.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임금을 사용할 경우는 실제 관찰된 임금(observed wage)을 사용하는 경우와 추정 임금(imputed wage or estimated wage)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관찰된 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분석 대상을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 즉 맞벌이 부부로 한정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로, 실제 관찰된 임금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맞벌이를 하지 않는 많은 비율의 부부가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시간 사용 방정식에서는 임금과 오차항 간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기 때문에,<sup>13)</sup>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정임금을 사용한다. 추정 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샘플에 추정된 임금을 대입하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샘플의 임금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금의 추정은 주로 Heckman의 2단계 추정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 취업 여부 방정식, 2단계에서 실제 임금률의 추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부부의 교육 수준을 도입하는 경우는, 교육이 임금과 매우 큰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 내에서의 힘(power)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Gupta & Stratton, 2008).

## 나. 시간 배분 관련 실증 분석 모델

### 1) 임금함수 추정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앞서 언급한 구조적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그러

13) 남성의 경우 임금함수를 추정할 때,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관찰된 임금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여성의 경우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관찰된 임금으로 추정을 하는 것은 선택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여성의 임금에는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예측치(fitted values)를 산출한다(Heckman 1976, 1979). 이 예측치는 전체 여성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 임금 정보가 없는 여성도 예측치가 적용되어, ‘이 여성이 만일 일을 할 경우’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예측치는 후에 남편의 임금을과 함께 교섭력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0) \quad y_{1i} = x'_{1i}\beta_1 + u_{1i}$$

$$y_{2i} = x'_{2i}\beta_2 + u_{2i}$$

$$d_i = 1(y_{2i} > 0), \quad i = 1, 2, \dots, N,$$

여기에서  $d_i$ 는 참일 때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정의함수(indicator function)이고,  $y_{2i}$ 는 오직 방향성(부호)만이 관찰되며,  $y_{1i}$ 는  $d_i = 1$ 일 때만 관찰되는 함수이다. 그리고  $(u_{1i}, u_{2i})$ 는 평균이 0, 분산은  $(\sigma_1^2, 1)$ , 공분산은  $\sigma_{12}$ 로 정의되는 결합정규분포(jointly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며, 만일  $d_i = 1$ 일 때,  $y_{1i}$ 의 조건부 기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quad E(y_{1i}|d_i = 1) = x'_i\beta_1 + \sigma_{12}\lambda(x'_2\beta_2),$$

$$\lambda(z) = \phi(z)/\Phi(z),$$

여기에서  $z$ 는 실수(real number)이며,  $\phi$ 는 정규분포의 밀도함수(density function of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Phi$ 는 정규분포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나타내며,  $\lambda(z)$ 는 소위 역 밀 비율(inverse Mill's ratio: IMR)을 나타낸다. 역 밀 비율을 (10)식의 첫째 식에 대입하면 (12)와 같은 식이 도출되며 이 식으로 임금을 추정하게 된다.

$$(12) y_{1i} = x'_{1i}\beta_1 + \sigma_{12}\lambda(x'_{2i}\beta_2) + u_{1i}$$

## 2) 시간 사용 방정식 추정

본 연구에서의 시간 사용 분석은 노동, 가사, 육아, 여가, 기타시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즉, 각 시간 간 관계 분석을 위하여 이 모든 시간이 한 방정식에 도입되기 때문에 시간 간의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법으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법을 이용하여 유도 방정식(reduced form)을 추정한다.

$$(13) t_m = x'_m\beta_m + g_m + u_m \quad m = p, dw, cc, l, s$$

여기에서  $g_m$ 은 도구변수를 의미하며, 노동시간 추정에서는 조사 월, 가사시간에서는 주거지의 전용면적, 육아시간은 주거지, 여가와 기타시간은 건강 상태를 도입한다. 각 방정식별로 도구변수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하면, 노동시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절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본 데이터에서는 7월, 9월, 12월, 총 3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 시기 변수를 노동시간 방정식의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가사시간은 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을 가사시간 방정식의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그리고 육아시간은 어린이집 등의 인프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인프라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거지역 변수를 육아시간 방정식의 도구변수로 도입한다. 여가시간의 도구변수는 건강 상태를 이용하는데, 건강 상태에서도 약간 안 좋은 경우를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여가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건강이 약간 안 좋을 경우에는 여가 시간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도록 한다. 기타시간 또한 유사한 이유로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상기 5개의 방정식을 추정한 후, 시간별 예측치를 계산하여 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식(structural equation)에 도입한다(13' 식). 이 방정식에는 본인의 시간과 배우자의 시간을 모두 분석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아내의 임금 예측치와 남편의 임금을 나누어 상대임금률을 계산하여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도입한다.<sup>14)</sup>

$$(13') \hat{t}_m = x'_m \beta_m + \theta_m + \hat{t}_m + u_m \quad m = p, dw, cc, l, s$$

### 3) 시간 부족감 추정

마지막으로는 시간 부족감에 대한 분석을 한다. 시간 부족감에 대한 분석도 앞서 도출한 시간 예측치를 도입하여 시간 사용에 따라 시간 부족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하도록 한다.

$$(14) ts = x'_i \beta_i + \hat{t}_{im} + u_i \quad m = p, dw, cc, l, s$$

14) 상대임금의 계산은 (아내의 임금률/남편의 임금률)로 계산되며, 1보다 클 경우는 아내의 임금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시간 배분 관련 선행 연구

시간 배분과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시간 사용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며,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간 사용 조사 데이터는 각 나라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국가별 시간 사용 조사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본 후 시간 배분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 가. 시간 사용 조사 데이터의 국가별 특징

미국의 시간 사용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는 가구 구성원 중의 한 명에 대해서 시간 사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시간 사용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덴마크의 시간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엄밀하게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즉, 이는 시간 사용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결정되는(jointly determined)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간 사용 데이터는 10세 이상의 모든 가계 구성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배우일 경우에는 부부 간의 시간 사용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프랑스의 시간 사용 조사(French Time Use Survey)도 부부 간의 분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Bloemen & Stancanelli, 2008). 영국 시간 조사(United Kingdom Time Use Survey: UKTUS)의 경우에도, 8세 이상의 모든 가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부 간의 분석이 가능하다(Stancanelli & Stratton, 2010). 이탈리아는 유럽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관한 통계(Europe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의 틀에서 조사된 데이터(IT SILC)가 존재하며, 이 조사는 가계 구성원의 소득 및 시간 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되고 있다(Addabbo & Favaro, 2011). 독일의 시간 조사 데이터(German Time Use Data: GTUS)도 부부의 시간 사용은 물론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Berdtmann, 2014).

## 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여기에서는 부부 및 본인에게 있어서 각각의 시간 사용이 본인 또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려 한다. 시간 사용 간의 관계는 주로 남편(아내)의 시간 사용이 아내(남편)의 시간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남편(아내) 본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부 간의 시간 관계를 보면,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고(Berdtmann, 2014; 조성호, 2016), 아내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Berdtmann, 2014). 남편과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의 시장노동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으나 배우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즉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0이 되면 남편의 경우는 주당 1시간, 여성은 주당 1.5시간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부부의 시장노동시간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Montgomery, 2013).

그리고 남편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시장노동시간과 가계 내 노동시간도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Berdtmann, 2014; 성



지미, 2006). 반면 남편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반대의 결과도 제시되었는데(조성호, 2016), 이러한 차이는 육아와 가사를 통합한 것과 분리하여 분석한 것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sup>15)</sup> 그 외에 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성지미, 2006).

다음으로 본인 시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내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아내 자신의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 자신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였다(Berdtmann, 2014). 특히 아내의 경우에는 시장노동시간과 가계 내 노동시간이 서로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Berdtmann, 2014). 반면, 남편(아내) 자신의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은 함께 증가하고 함께 감소하는 양(+ )의 관계에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조성호, 2016).

#### 다. 남편 및 아내의 임금과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앞서 모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의 상대적 임금의 변화, 즉 교섭력의 변화는 가계 내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각 주체의 가치관 및 행동에 의하여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유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경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선행 연구는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변수(임금과 교육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5) Berdtmann(2014)와 성지미(2006)에서는 육아·가사 시간은 가계 내 노동시간으로 분석한 반면, 조성호(2016)에서는 육아와 가사시간을 분리하였으며, 남편과 아내의 가사시간의 결과가 음(-)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먼저 임금을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Kiker & Ng(1990)의 경우, (남편임금/아내임금)의 경우는 (남편의 여가시간/아내의 여가시간)의 비율에 음(-)의 영향, (아내임금/남편임금)은 (남편의 가계 내 노동시간/아내의 가계 내 노동시간)의 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 때 남편의 여가시간이 감소하거나 아내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아내의 임금이 증가하면 아내의 여가시간이 감소하거나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본인의 노동시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임금 증가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 내 노동시간의 경우는 남편의 임금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아내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아내의 임금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감소하거나 아내의 가계 내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Friedberg & Webb(2005)의 연구는 미국의 시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상대임금<sup>16)</sup>이 증가하면 아내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여가시간 중에서도 휴식하는 시간과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요리 및 청소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시간 사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조성호(2016)가 관찰된 시간당 임금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점은 분석 대상<sup>17)</sup>과 본인과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관찰된 임금)을 직접 도입한

16) 상대임금은 (아내임금/남편임금)으로 산출되었다.

17)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본인 기준에서 19~50세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그 연령대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성호(2016)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남편의 경우(주중), 본인의 임금은 본인의 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아내의 노동시간과 가사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아내의 경우(주중), 본인의 임금은 본인의 노동시간과 가사시간에 음(-)의 영향을, 남편의 노동시간에 음(-)의 영향, 가사시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반면,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부부의 교육 수준을 도입한 Gupta & Stratton(2008)의 연구에서는 덴마크와 미국의 시간 조사 데이터로 20~6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교섭력과 여가시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교육수준<sup>19)</sup>과 여가시간은 양(+의 관계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미국이 덴마크보다 더욱 밀접했고, 유의성도 미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관찰된 임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추정 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언급한 상대임금을 도입한 선행 연구에서는 추정 임금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sup>20)</sup> 그러나 관찰된 임금만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 많은 비율의 부부가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측치와 추정치를 둘 다 도입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

표본을 19~50세 미만으로 설정하여,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18) 10%에서 유의하였으나, 아내의 임금이 남편의 육아시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상대교육수준 변수는 (본인 교육연수/(본인 교육연수+배우자 교육연수))로 도출하였다.

20) 그러나 임금이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추정 임금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Addabbo & Favaro, 2011; Bloemen & Stancanelli, 2009; Kalenkoski & Ribar & Stratton, 2009; Stancanelli & Stratton, 2010; 윤자영, 2010).

## 라. 시간량의 과대 추정 문제

Fisher & Layte(2004)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한 조사<sup>21)</sup>는 시간 일지를 작성하는 것에 비하여 큰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이러한 조사는 일한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사람이 일을 할 때 스톱 워치를 가지고 재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엄밀하게 일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일하기 전에 대기를 한다든가, 출퇴근하는 시간 등은 엄밀하게 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Fisher & Layte, 2004, p. 3). 이와 관련하여 Robinson & Godbey(1997, p. 59)에서도 유사한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일주일 시간의 합계가 일주일의 전체 시간인 16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중첩되는 행동의 시간도 고려하고 있는데(Fisher & Layte, 2004; Robinson & Godbey, 1997),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중첩된 행동들이 삶의 질과 일·생활 균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Fisher & Layte, 2004, p. 10). 즉, 일과 중첩된 행동들이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닌 제도 및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Fisher & Layte, 2004, p. 12).

21) 이러한 종류의 시간 조사 방식을 시간 추정(time estimates) 조사 방식이라고 한다.

## 마. 시간 부족감

시간 부족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시간 부족’과 ‘시간 부족감’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부족’이란 수면시간, 노동시간 등 필수 활동에 참여하고 남는 사회적 및 인적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실제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시간 빈곤(Time Poverty), 시간 결핍(Time Scarcity, Time Deficits)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간 빈곤은 주관적 인식보다는 물리적으로 측정된 실제 시간량의 부족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개념임에 반하여(Kalenkoski & Hamrick, 2014), ‘시간 부족감’이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 부족감(Feeling of Time Deficits)은 시간 압박감(Time Pressure), 시간 스트레스(Time Stress)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스스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는 ‘시간 부족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이론은 실제 사용 가능한 시간의 양이나 구성에 따라 주관적 인식이 달라진다는 가용시간론(Time Availability Perspective)과 실제로는 동일한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젠더론적 접근 등이 있다(장연주, 이기영, 최현자, 2012). 가용시간론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 여가시간 등 객관적으로 측정된 실제 시간 배분에 따라 시간량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이 증가해서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적어질 경우 이로 인해 개인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Bianchi & Robinson & Milke, 2006). 반면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젠더론적 접근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나 성 역할 등이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 배분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이 다

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과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주관적 시간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장연주 외, 2012). 이러한 젠더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부부의 시간 부족감 차이 혹은 성 역할과 시간 부족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우선 활동별 소요 시간의 비율은 시간 부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여성들이 시간 부족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맞벌이 부부의 유형을 취약형(양육, 가사, 여가시간이 적은 유형), 가사 양육 우위형(양육과 가사시간이 많은 유형), 여가 우위형(여가시간이 많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간 부족감을 분석한 결과, 남성 은 유형에 따라 시간 부족감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여가 시간이 긴 경우보다 가사와 양육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시간 부족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이성림, 2013).

한편 실질적인 시간 사용량뿐 아니라 성 평등 의식이나 성 역할 태도와 같은 주관적 요인도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성 평등 의식은 소득이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 요인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 부족감도 높아질 수 있지만 부부의 성 평등 의식이 높으면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부족감이 낮아질 수 있다. 즉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부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 역할 태도, 성 평등 의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플 단위의 분석이 중요하다(주익현, 2015).

또한 성 역할 태도가 진보적일 때 시간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일과 가정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성 역할 태도가 같은 수준일지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여가 높기 때문에 여성의

시간 압박감이 남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았을 때 남성은 실제 시간 배분에 따라, 여성은 성 역할 태도에 따라 시간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연주 외, 2012).

### 제3절 본 연구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시간적 정의를 종합하여 시간을 정의하였다. 신고전 경제학에서 여가의 시간은 일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여가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본 연구에서의 시간을 정의하도록 한다.

먼저 Becker(1965)가 지적인 생산적 소비를 하는 시간,<sup>22)</sup> 다시 말하면 수면, 식사시간 등은 여가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 외에 생산적인 시간으로는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Becker, 1993), 여가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분류해야 한다. 만일 Becker(1993)의 인적 자본 축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아직 사회 진출을 하지 않은 학생 또는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을 받는 시간이 곧 미래의 소득을 결정짓는 시기<sup>23)</sup>이므로 노동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24)</sup>

자녀 돌봄(육아)의 경우, Aguiar & Hurst(2007)는 자녀와 이야기하고 놀아 주고 책을 읽어 주는 것이 부모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이에 소비하는 시간을 여가로 분류하고 있으나, Kimmel &

22) Enke(1968)의 정의에 의하면 이는 생존시간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에 사용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23)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생애 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y & Newburger, 2002).

24) Friedberg & Webb(2005)의 연구에서도 교육받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Connelly(2007)에서는 유사한 의미에서 육아가 부모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하며 육아·가사 시간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육아·가사 시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돌봄 이외에 부모 및 친인척 돌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돌봄은 본인이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은 기타 의무시간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의 효용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에 쓰인 시간, 즉 수면, 식사, 개인적인 케어에 사용한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Aguiar & Hurst, 2007), 본 연구에서는 Becker(1965)와 Enke(196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상기 시간을 여가시간에서 제외하여 기타(생존) 시간으로 분류한다. 그 외의 세부 시간들은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사용되는 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여가시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이동 시간은 해당 행위로 인한 이동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시간에 합산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간 사용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시간 사용 분류표

| 행동 분류          | 시간 분류      |
|----------------|------------|
| <b>개인 유지</b>   |            |
| 수면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잠 못 이룸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식사             | 기타시간(생존시간) |
| 간식·음료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자기 치료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아파서 쉬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의료 서비스 받기      | 기타시간(생존시간) |
| 개인 위생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외모 관리          | 여가시간       |
|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 여가시간       |
| 기타 개인 유지       | 여가시간       |



| 행동 분류             | 시간 분류 |
|-------------------|-------|
| <b>일</b>          |       |
| 주업                | 노동시간  |
| 부업                | 노동시간  |
|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 노동시간  |
|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 노동시간  |
|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 노동시간  |
| 일 중 휴식            | 노동시간  |
| 일 관련 연수           | 노동시간  |
| 기타 일 관련 행동        | 노동시간  |
| 구직 활동             | 노동시간  |
| <b>학습</b>         |       |
| 학교 수업             | 노동시간  |
| 학교 수업 간 휴식        | 노동시간  |
| 학교 자율학습           | 노동시간  |
| 학교 행사             | 노동시간  |
| 기타 학교 활동          | 노동시간  |
| 학원 수강             | 노동시간  |
| 방송·인터넷 수강         | 노동시간  |
| 스스로 학습            | 노동시간  |
|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 노동시간  |
| <b>가정 관리</b>      |       |
| 식사 준비             | 가사시간  |
|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 가사시간  |
| 설거지·식후 정리         | 가사시간  |
|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 가사시간  |
| 세탁하기              | 가사시간  |
|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 가사시간  |
|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 가사시간  |
| 청소                | 가사시간  |
| 정리                | 가사시간  |
| 쓰레기 버리기           | 가사시간  |
| 주거 관리             | 가사시간  |
| 가정용품 관리·제작        | 가사시간  |
|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 가사시간  |

64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 행동 분류                    | 시간 분류      |
|--------------------------|------------|
|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 가사시간       |
| 차량 관리하기                  | 여가시간       |
| 차량 서비스 받기                | 여가시간       |
| 애완동물 돌보기                 | 여가시간       |
| 식물 돌보기                   | 여가시간       |
| 애완 동·식물 서비스 받기           | 여가시간       |
| 상품 매장 쇼핑                 | 여가시간       |
| 상품 온라인 쇼핑                | 여가시간       |
| 서비스 현장 구입                | 여가시간       |
| 서비스 온라인 구입               | 여가시간       |
| 기타 쇼핑 관련 행동              | 여가시간       |
| 가계부 정리                   | 가사시간       |
| 금융기관 이용                  | 가사시간       |
| 관공서 등 이용                 | 가사시간       |
| 기타 가정 관리                 | 가사시간       |
| <b>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b>      |            |
|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 육아시간       |
|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 육아시간       |
| 책 읽어 주기, 놀아 주기(만 10세 미만) | 육아시간       |
|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 육아시간       |
|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 육아시간       |
|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 육아시간       |
|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 육아시간       |
|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 육아시간       |
|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 육아시간       |
|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 기타시간(의무시간) |

| 행동 분류             | 시간 분류      |
|-------------------|------------|
|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 기타시간(의무시간) |
| <b>참여활동</b>       |            |
| 의무적 참여 활동         | 기타시간(의무시간) |
| 자녀 교육 관련          | 기타시간(의무시간) |
| 기타 참여 활동          | 여가시간       |
| 국가·지역 행사 관련       | 여가시간       |
| 소외계층 관련           | 여가시간       |
| 재해 주민 관련          | 여가시간       |
| 기타 자원봉사           | 여가시간       |
|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 여가시간       |
| 소득 있는 활동 돕기       | 여가시간       |
| 가사활동 돕기           | 여가시간       |
| 기타 돕기             | 여가시간       |
| <b>교제 및 여가활동</b>  |            |
| 대면 교제             | 여가시간       |
| 화상·음성 교제          | 여가시간       |
| 문자·메일 교제          | 여가시간       |
| 기타 교제 활동          | 여가시간       |
| 책 읽기              | 여가시간       |
| 신문 보기             | 여가시간       |
| 잡지 보기             | 여가시간       |
| 실시간 방송 보기         | 여가시간       |
| 비디오 보기            | 여가시간       |
| 라디오 듣기            | 여가시간       |
| 오디오 듣기            | 여가시간       |
| 인터넷 정보 검색         | 여가시간       |
|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 여가시간       |
| 개인적 종교 활동         | 여가시간       |
| 종교 집회·모임 참가       | 여가시간       |
| 기타 종교 관련 활동       | 여가시간       |
| 영화관·비디오방          | 여가시간       |
| 연극·콘서트            | 여가시간       |
|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 여가시간       |
| 스포츠 경기 관람         | 여가시간       |

66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 행동 분류            | 시간 분류      |
|------------------|------------|
| 관광·드라이브          | 여가시간       |
| 기타 문화·관광 활동      | 여가시간       |
| 걷기·산책            | 여가시간       |
| 달리기·조깅           | 여가시간       |
| 등산               | 여가시간       |
| 자전거·인라인          | 여가시간       |
| 개인 운동            | 여가시간       |
| 구기 운동            | 여가시간       |
| 낚시·사냥            | 여가시간       |
| 기타 스포츠·레포츠       | 여가시간       |
| 관혼상제 등 의례        | 여가시간       |
| 집단게임·놀이          | 여가시간       |
| 컴퓨터·모바일 게임       | 여가시간       |
| 개인 취미활동          | 여가시간       |
| 여가·교양 학습         | 여가시간       |
| 유흥               | 여가시간       |
| 담배 피우기           | 여가시간       |
| 아무것도 안하고 쉬       | 여가시간       |
| 기타 여가 관련 활동      | 여가시간       |
| <b>이동</b>        |            |
| 개인 유지 관련 이동      | 기타시간(생존시간) |
| 출·퇴근             | 노동시간       |
| 기타 일 관련 이동       | 노동시간       |
| 학습 관련 이동         | 여가시간       |
| 가정 관리 관련 이동      | 가사시간       |
|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 기타시간(의무시간) |
|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 기타시간(의무시간) |
| 참여·봉사활동 관련 이동    | 여가시간       |
|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 여가시간       |
| 기타 이동 관련         | 여가시간       |
|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 여가시간       |
| 기타 미분류 행동        | 여가시간       |
| 재택               | 여가시간       |

제 3 장

## 시간 배분 현황

제1절 시간 사용의 변화

제2절 시간 배분 현황



# 3

## 시간 배분 현황 <<

본 장에서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9~49세 유배우 부부의 시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려 한다. 크게 주중과 주말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고, 각각 전체 시간, 남성 외별이, 여성 외별이,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분석한다.

### 제1절 시간 사용의 변화

19~49세 유배우 부부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생활 시간 사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에 약간 증가하였고 여성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1999년 464.7분(7.7시간)에서 2014년 412.4분(6.9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209.6분(3.5시간)에서 186.2분(3.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일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의 시간 사용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시간 사용 경향에서는 남녀 모두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의 노동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5)</sup>

가사시간의 경우 남성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

25)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근무를 의미하는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 4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시범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김희재, 남기성, 2007).

나 2014년에는 2004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 가사시간의 절대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감소율은 크지만, 감소 수준은 약 7~8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2014년 가사시간도 1999년에 비해 59.6분 감소한 179.8분(3.0시간)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은 남성의 경우 1999년 12.2분에서 2014년 24.6분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1999년 70.7분에서 2014년 86.4분으로 16분 정도 증가하였다. 남성의 육아시간 또한 가사시간과 유사하게 절대치가 작기 때문에 두 배가 증가하였음에도 그 증가시간은 약 12분 정도로 여성의 약 16분 증가보다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증가하였다가 2004년 이후로 다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남성은 16.9분, 여성은 30.6분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은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여가시간이 8.4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식사시간 등을 포함하는 기타시간은 남녀 모두 199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1999년 626.2분(10.4시간)에서 2014년 681.7분(11.4시간)으로, 여성은 621.6분(10.4시간)에서 675.1분(11.3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표 3-1〉 연도별 시간 사용량 추이

|    | 1999년 |       | 2004년 |       | 2009년 |       | 2014년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노동 | 464.7 | 209.6 | 428.9 | 195.1 | 409.4 | 187.7 | 412.4 | 186.2 |
| 가사 | 21.6  | 239.4 | 25.0  | 218.1 | 32.7  | 218.3 | 24.9  | 179.8 |
| 육아 | 12.2  | 70.7  | 13.8  | 70.9  | 19.8  | 79.6  | 24.6  | 86.4  |
| 여가 | 315.2 | 298.7 | 332.1 | 329.3 | 319.8 | 304.1 | 296.4 | 312.5 |
| 기타 | 626.2 | 621.6 | 640.2 | 626.7 | 658.2 | 650.3 | 681.7 | 675.1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단위: 분)



## 제2절 시간 배분 현황

본 절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중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배우 부부들의 시간 사용량을 살펴볼 것이다. 생활시간 조사의 시간량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하고, 결과는 주중과 주말을 합친 전체, 그리고 주중, 주말 순서로 제시하려 한다. 또한 유배우 부부의 시간 배분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시간을 별도로 보여 주려 한다.

### 1. 전체 시간 배분

시간 사용량의 전체 요일 평균을 살펴보면, 수면을 포함한 기타 활동을 제외할 경우, 남성은 노동, 여가, 가사, 육아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여성은 여가, 노동, 가사, 육아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정도 많았으나, 가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7.2배, 육아시간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정도 많았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 차이는 16분 정도로 남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시간 배분 현황: 전체

단위: 분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남성 | 412.4 | 24.9  | 24.6 | 296.4 | 681.7 |
| 여성 | 186.2 | 179.8 | 86.4 | 312.5 | 675.1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전체 요일에 대한 남성의 시간 사용 배분을 살펴보면, 노동, 가사, 육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연령대는 30대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0대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대신 여가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짧고 가사와 육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시간은 중졸 이하나 고졸에 비해 대학 재학 이상에서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학력자의 연령이 낮고, 따라서 10세 미만 가구원(자녀)이나 미취학 가구원(자녀)의 존재 확률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                 |          | 단위: 분 |      |      |       |       |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연령              | 19~29세   | 413.9 | 24.7 | 30.6 | 281.8 | 689.1 |
|                 | 30~39세   | 418.6 | 26.4 | 41.0 | 271.7 | 682.3 |
|                 | 40~49세   | 408.4 | 24.0 | 14.0 | 312.6 | 680.9 |
| 학력              | 중졸 이하    | 474.6 | 13.4 | 14.3 | 241.5 | 696.2 |
|                 | 고졸       | 417.2 | 22.5 | 14.0 | 302.8 | 683.4 |
|                 | 대학 재학 이상 | 408.1 | 26.5 | 30.2 | 294.9 | 680.3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415.4 | 25.0 | 2.3  | 321.1 | 676.3 |
|                 | 1명       | 408.2 | 25.6 | 37.9 | 281.2 | 687.0 |
|                 | 2명 이상    | 412.0 | 24.0 | 49.9 | 269.0 | 685.1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413.7 | 25.1 | 6.5  | 316.5 | 678.2 |
|                 | 1명       | 406.4 | 24.6 | 44.4 | 273.4 | 691.2 |
|                 | 2명 이상    | 418.8 | 25.0 | 66.8 | 251.5 | 677.8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사시간이 적어지는 반면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시간이 긴 직종은 단순노무, 서비스·판매, 기능·장치 순이었고, 육아시간이 긴 직종은 사무직과 관리·전문직, 농림·어업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육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직의 경우 가사, 육아, 여가와 기타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6)</sup>

〈표 3-4〉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 소득  | 300만 원 미만  | 414.4 | 26.0 | 25.5 | 292.1 | 682.1 |
|        | 300~500만 원 | 409.8 | 25.1 | 25.5 | 296.7 | 682.9 |
|        | 500만 원 이상  | 412.3 | 20.6 | 19.1 | 311.5 | 676.6 |
| 직종     | 관리·전문      | 413.1 | 25.5 | 27.9 | 298.3 | 675.1 |
|        | 사무         | 401.0 | 26.6 | 28.1 | 297.1 | 687.3 |
|        | 서비스·판매     | 439.1 | 22.6 | 20.4 | 279.9 | 678.0 |
|        | 농림어업       | 369.3 | 38.5 | 27.1 | 322.2 | 682.9 |
|        | 기능·장치      | 430.6 | 20.8 | 21.0 | 290.4 | 677.2 |
|        | 단순노무       | 455.0 | 19.2 | 18.9 | 262.0 | 685.0 |
|        | 정규직        | 421.2 | 23.6 | 26.0 | 290.8 | 678.4 |
| 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 419.2 | 24.0 | 18.5 | 294.5 | 683.8 |
|        | 자영업        | 421.9 | 24.3 | 20.1 | 289.9 | 683.7 |
|        | 무직         | 71.8  | 68.1 | 43.1 | 511.4 | 745.6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그리고 여성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30대 구간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육아와 가사시간이 증가하다가, 40대가 되면 육아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 그래프가 M자 형을 그리는 독특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일 경우 노동, 여가시간이 길고 대졸 이상은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학력자의 연령이 낮고, 따라서 10세 미만 가구원이나 미취학 가

26)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의 활동 종류를 노동·육아·가사·여가·기타로 분류하면서 학업,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스스로 학습 등을 노동시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무직인 응답자라 할지라도 상기의 항목에 포함되는 시간이 있으면 노동시간이 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원의 존재 확률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 가구원이나 미취학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 여가시간이 길고, 이들이 존재하면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163.0 | 158.4 | 140.2 | 286.2 | 692.2 |
|                 | 30~39세   | 141.3 | 177.5 | 141.8 | 288.9 | 690.5 |
|                 | 40~49세   | 226.1 | 184.2 | 34.2  | 335.1 | 660.4 |
| 학력              | 중졸 이하    | 249.2 | 163.6 | 41.3  | 309.9 | 676.0 |
|                 | 고졸       | 204.8 | 185.7 | 55.0  | 323.2 | 671.3 |
|                 | 대학 재학 이상 | 169.9 | 176.6 | 110.5 | 305.2 | 677.7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241.6 | 178.8 | 12.4  | 344.1 | 663.1 |
|                 | 1명       | 142.4 | 177.9 | 147.6 | 286.9 | 685.3 |
|                 | 2명 이상    | 109.3 | 184.3 | 185.9 | 269.5 | 691.1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226.7 | 180.2 | 26.9  | 338.8 | 667.3 |
|                 | 1명       | 113.1 | 179.8 | 182.8 | 272.2 | 692.1 |
|                 | 2명 이상    | 109.3 | 177.3 | 222.6 | 247.2 | 683.7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 육아,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 따라서는 기능·장치, 서비스·판매, 단순노무 순서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의 경우 노동시간이 짧고 가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해 무직인 사람의 육아시간이 약 2배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무직인 경우에 육아시간이 2.6~3.2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여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전체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176.4 | 183.4 | 87.9  | 316.4 | 675.8 |
|           | 300~500만 원 | 262.2 | 152.2 | 77.0  | 280.7 | 667.9 |
|           | 500만 원 이상  | 312.2 | 130.7 | 59.8  | 264.5 | 672.8 |
| 직종        | 관리·전문      | 290.7 | 143.5 | 65.9  | 277.3 | 662.5 |
|           | 사무         | 301.0 | 141.0 | 57.4  | 276.4 | 664.2 |
|           | 서비스·판매직    | 336.9 | 140.6 | 38.5  | 262.8 | 661.1 |
|           | 농림어업       | 280.6 | 207.9 | 36.5  | 215.9 | 699.1 |
|           | 기능·장치      | 377.6 | 129.7 | 25.9  | 246.8 | 659.9 |
|           | 단순노무       | 324.6 | 163.7 | 30.2  | 276.8 | 644.7 |
|           | 정규직        | 330.5 | 132.6 | 52.3  | 263.0 | 661.6 |
| 종사상<br>지위 | 비정규직       | 276.5 | 164.7 | 47.2  | 288.5 | 663.1 |
|           | 자영업        | 322.1 | 151.7 | 43.1  | 267.3 | 655.8 |
|           | 무직         | 12.6  | 227.1 | 136.5 | 369.3 | 694.5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2. 주중의 시간 배분

앞서 주중과 주말을 합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주중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월, 화, 수, 목, 금 5일에 대한 시간량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외별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 순서로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제시하려 한다.

### 가. 남성 외별이 부부의 주중 시간 배분

다음은 남성 외별이 부부, 즉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시간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외별이 남편은 수면을 포함한 기타 활동을 제외하면 노동에 가장 긴 시간(553.7분)을 사용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9.2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경우 가사에 약 4시간, 육아에 약 2.5시간 등을 사용한다. 남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 아내가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1위가 가사(1,742명 중 816명), 2위가 자녀 양육(1,742명 중 790명)이었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표 3-7〉 남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남성 | 553.7 | 11.5  | 18.7  | 207.7 | 648.4 |
| 여성 | 21.2  | 238.9 | 152.2 | 356.1 | 671.6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은 주중 외벌이 남편의 시간량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30대의 경우 노동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길고 여가시간과 기타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와 가사는 20대 구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노동과 육아시간이 길고 기타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세 미만 가구원과 미취학 가구원이 많을수록 노동, 육아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외벌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487.1 | 25.4 | 34.2 | 219.6 | 673.8 |
|                 | 30~39세   | 566.3 | 12.4 | 27.0 | 189.6 | 644.7 |
|                 | 40~49세   | 546.4 | 10.2 | 11.1 | 222.1 | 650.2 |
| 학력              | 중졸 이하    | 553.6 | 3.6  | 12.8 | 189.6 | 680.4 |
|                 | 고졸       | 545.5 | 11.9 | 13.7 | 209.1 | 659.8 |
|                 | 대학 재학 이상 | 557.5 | 11.7 | 21.2 | 207.8 | 641.9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534.6 | 11.5 | 1.1  | 244.2 | 648.6 |
|                 | 1명       | 558.4 | 12.3 | 29.6 | 187.9 | 651.8 |
|                 | 2명 이상    | 571.9 | 10.7 | 28.3 | 184.7 | 644.4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544.4 | 10.9 | 5.2  | 231.3 | 648.2 |
|              | 1명    | 560.4 | 12.3 | 30.1 | 187.3 | 650.0 |
|              | 2명 이상 | 568.0 | 11.8 | 36.3 | 178.2 | 645.7 |

주: 외벌이 남편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동시간이 짧고 가사와 기타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간과 육아시간은 300만~500만 원 구간에서 길지만,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직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농림어업은 가사, 육아, 여가, 기타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정규직의 노동, 가사시간이 길고 여가, 기타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외벌이 남편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547.0 | 13.4 | 19.8 | 203.2 | 656.6 |
|           | 300~500만 원 | 562.0 | 10.7 | 21.2 | 202.9 | 643.2 |
|           | 500만 원 이상  | 552.0 | 8.4  | 9.9  | 230.9 | 638.8 |
| 직종        | 관리·전문      | 552.5 | 11.3 | 17.9 | 218.1 | 640.2 |
|           | 사무         | 575.5 | 10.2 | 20.6 | 196.6 | 637.1 |
|           | 서비스·판매직    | 549.0 | 10.4 | 17.8 | 204.4 | 658.5 |
|           | 농림어업       | 435.0 | 16.1 | 43.3 | 260.6 | 685.0 |
|           | 기능·장치      | 551.3 | 12.9 | 17.6 | 207.2 | 651.0 |
|           | 단순노무       | 552.0 | 13.2 | 13.8 | 213.5 | 647.5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564.4 | 10.8 | 18.6 | 203.7 | 642.5 |
|           | 비정규직       | 528.1 | 15.9 | 19.9 | 219.4 | 656.8 |
|           | 자영업        | 532.8 | 12.5 | 18.4 | 218.1 | 658.1 |

주: 1) 외벌이 남편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2)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외벌이 남편의 아내, 즉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에서 아내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육아시간은 20대와 30대에 길고 40대에는 짧아지면서 40대에는 여가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남편의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향은 알 수 없다.

〈표 3-10〉 외벌이 남편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25.2 | 206.7 | 195.4 | 304.0 | 708.8 |
|                 | 30~39세   | 20.0 | 230.7 | 210.5 | 305.1 | 673.7 |
|                 | 40~49세   | 21.9 | 254.7 | 74.4  | 426.8 | 662.2 |
| 학력              | 중졸 이하    | 31.4 | 223.2 | 119.5 | 369.1 | 696.8 |
|                 | 고졸       | 15.2 | 243.2 | 110.4 | 397.2 | 674.0 |
|                 | 대학 재학 이상 | 24.4 | 237.0 | 178.5 | 330.9 | 669.3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30.4 | 258.5 | 26.0  | 460.7 | 664.4 |
|                 | 1명       | 16.2 | 228.2 | 213.3 | 302.7 | 679.6 |
|                 | 2명 이상    | 14.1 | 224.4 | 254.3 | 274.4 | 672.8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28.1 | 254.4 | 53.4  | 435.2 | 669.0 |
|                 | 1명       | 12.6 | 221.8 | 245.6 | 283.1 | 676.9 |
|                 | 2명 이상    | 15.5 | 222.4 | 288.4 | 243.8 | 669.9 |

주: 외벌이 남편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나. 여성 외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배분

외벌이 아내, 즉 아내만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에서 아내의 시간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부부의 상당수는 맞벌이 혹은 남성 외벌이 구조로, 아내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외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자료에서도 시간 사용량을 보고한 19~49세 응답자 중 여성 외벌이 부부 응답자는 176명뿐이고 이 중 남성 응답자는 48명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1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20명,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4명으로 응답자 수가 매우 적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고 여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 무직인 아내의 노동시간이 21.2시간으로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여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 무직인 남편의 노동시간이 162.1시간으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무직 남편의 노동시간 구성을 살펴보면 스스로 학습(47.5분), 방송 인터넷 수강(5.21분) 등 학습 관련이 가장 많았고 구직 활동도 20분이었다. 무직 남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취업 준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18명(2위는 기타 16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배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외벌이 부부는 무직인 아내의 가사시간이 238.9분으로 남편의 가사시간 11.5분에 비해 월등히 길었던 것에 비해 여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 무직인 남편의 가사시간이 100.3분으로 아내의 가사시간 99.3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육아시간의 경우는 남편이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육아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3-11〉 여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남성 | 162.1 | 100.3 | 5.9  | 477.2 | 694.5 |
| 여성 | 461.5 | 99.3  | 40.1 | 212.4 | 626.8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외벌이 아내는 30대에 노동시간과 함께 육아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남편의 경우 노동시간은 30대에 가장 길지만 가사와 육아시간은 20대에 가장 긴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육아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외벌이 남편의 시간 배분과는 차이가 있다. 외벌이

남편은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육아시간이 30분 정도만 증가한 것에 비해 외벌이 아내는 어린 가구원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육아시간이 한 시간 이상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사시간에 있어서도 남성 외벌이 부부와는 차이가 있다. 외벌이 남편의 경우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사시간이 10분 내외로 매우 적었으나 외벌이 아내는 10세 미만, 미취학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1시간 30분 이상 가사를 하고 10세 미만,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사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보면 외벌이 아내의 경우 외벌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과 육아·가사의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12〉 외벌이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465.0 | 50.0  | 0.0   | 135.0 | 790.0 |
|                 | 30~39세   | 466.5 | 83.0  | 63.9  | 177.4 | 649.1 |
|                 | 40~49세   | 459.3 | 107.8 | 31.6  | 229.8 | 611.5 |
| 학력              | 중졸 이하    | 532.5 | 92.5  | 7.5   | 190.0 | 617.5 |
|                 | 고졸       | 508.8 | 95.5  | 23.5  | 190.5 | 621.8 |
|                 | 대학 재학 이상 | 401.1 | 104.2 | 62.2  | 239.2 | 633.3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488.2 | 92.2  | 8.4   | 225.5 | 625.8 |
|                 | 1명       | 401.9 | 120.0 | 95.6  | 201.9 | 620.6 |
|                 | 2명 이상    | 404.4 | 105.6 | 135.6 | 151.1 | 643.3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481.7 | 95.5  | 16.6  | 218.2 | 628.0 |
|                 | 1명       | 406.0 | 101.0 | 130.0 | 193.0 | 610.0 |
|                 | 2명 이상    | 310.0 | 144.0 | 166.0 | 176.0 | 644.0 |

주: 외벌이 아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외벌이 아내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 여가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벌이 아내 응답자 수가 128명이고 이 중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시간 배분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또한 직종의 경우 농림어업은 응답자가 없고 기능·장치가 10명, 사무직이 14명 등으로 분류별 응답자 수가 적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표 3-13〉 외벌이 아내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460.1 | 99.4  | 35.7 | 220.4 | 624.3 |
|           | 300~500만 원 | 441.1 | 97.8  | 78.9 | 163.3 | 658.9 |
|           | 500만 원 이상  | 740.0 | 100.0 | 0.0  | 90.0  | 510.0 |
| 직종        | 관리·전문      | 475.0 | 76.2  | 58.8 | 168.5 | 661.5 |
|           | 사무         | 513.3 | 83.3  | 13.3 | 218.9 | 611.1 |
|           | 서비스·판매직    | 393.2 | 111.4 | 58.2 | 276.8 | 600.5 |
|           | 기능·장치      | 580.0 | 93.8  | 15.0 | 140.0 | 611.3 |
|           | 단순노무       | 444.0 | 134.0 | 10.7 | 228.7 | 622.7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515.9 | 79.8  | 15.5 | 196.8 | 632.0 |
|           | 비정규직       | 430.0 | 120.5 | 57.5 | 215.0 | 617.0 |
|           | 자영업        | 351.3 | 126.3 | 86.3 | 251.9 | 624.4 |

주: 1) 외벌이 아내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2)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여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 남편은 20대 응답자가 없었으며 30대가 10명, 40대가 38명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 남편이 일하지 않은 이유는 취업 준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육아시간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표 3-14〉 외벌이 아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30~39세   | 370.0 | 80.0  | 6.0  | 250.0 | 734.0 |
|                 | 40~49세   | 118.8 | 104.6 | 5.8  | 524.6 | 686.3 |
| 학력              | 중졸 이하    | 0.0   | 0.0   | 0.0  | 510.0 | 930.0 |
|                 | 고졸       | 54.5  | 137.3 | 3.6  | 560.9 | 683.6 |
|                 | 대학 재학 이상 | 241.2 | 82.4  | 7.6  | 421.2 | 687.6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137.9 | 108.4 | 2.6  | 509.5 | 681.6 |
|                 | 1명       | 84.3  | 104.3 | 12.9 | 524.3 | 714.3 |
|                 | 2명 이상    | 496.7 | 40.0  | 10.0 | 163.3 | 730.0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138.9 | 107.8 | 6.3  | 490.7 | 696.3 |
|                 | 1명       | 590.0 | 0.0   | 0.0  | 190.0 | 660.0 |
|                 | 2명 이상    | 360.0 | 0.0   | 0.0  | 400.0 | 680.0 |

주: 외벌이 아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다. 맞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배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남편의 노동시간이 아내에 비해 1.3배 정도 길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사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7.4배, 육아시간도 아내가 남편에 비해 3.5배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가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15〉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남성 | 546.8 | 17.4  | 14.9 | 215.8 | 645.0 |
| 여성 | 412.4 | 129.5 | 52.2 | 215.5 | 630.5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가시

간은 40대에서 가장 길고, 육아시간은 30대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동, 육아시간은 길어지고 가사, 여가, 기타시간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 육아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6〉 맞벌이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578.0 | 13.2 | 11.0 | 189.3 | 648.5 |
|                 | 30~39세   | 561.4 | 16.4 | 28.9 | 187.3 | 646.1 |
|                 | 40~49세   | 538.3 | 18.2 | 8.6  | 230.6 | 644.3 |
| 학력              | 중졸 이하    | 525.0 | 26.9 | 7.5  | 240.0 | 640.6 |
|                 | 고졸       | 534.7 | 17.3 | 6.1  | 230.7 | 651.2 |
|                 | 대학 재학 이상 | 553.1 | 17.3 | 19.3 | 208.2 | 642.1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545.0 | 17.3 | 1.6  | 236.3 | 639.8 |
|                 | 1명       | 541.4 | 17.6 | 27.0 | 201.1 | 653.0 |
|                 | 2명 이상    | 560.4 | 17.7 | 37.3 | 175.5 | 649.1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541.6 | 18.5 | 5.1  | 232.2 | 642.6 |
|                 | 1명       | 555.9 | 13.8 | 33.5 | 181.6 | 655.1 |
|                 | 2명 이상    | 566.4 | 17.5 | 48.2 | 167.6 | 640.4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가사, 여가시간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농림어업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가사시간이 긴 특징이 있다.

〈표 3-17〉 맞벌이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528.1 | 20.7 | 15.8 | 225.4 | 650.1 |
|      | 300~500만 원 | 566.5 | 13.1 | 14.0 | 207.7 | 638.6 |
|      | 500만 원 이상  | 575.1 | 15.6 | 13.4 | 195.2 | 640.7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직종        | 관리·전문   | 554.9 | 17.6 | 20.3 | 208.3 | 639.0 |
|           | 사무      | 567.5 | 13.6 | 14.3 | 201.7 | 642.8 |
|           | 서비스·판매직 | 553.9 | 16.6 | 15.2 | 212.1 | 642.3 |
|           | 농림어업    | 341.0 | 58.6 | 9.3  | 344.5 | 686.6 |
|           | 기능·장치   | 539.4 | 18.0 | 11.0 | 229.2 | 642.3 |
|           | 단순노무    | 540.7 | 15.6 | 17.7 | 195.7 | 670.3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568.4 | 15.4 | 15.7 | 204.3 | 636.1 |
|           | 비정규직    | 467.6 | 22.6 | 18.0 | 256.4 | 675.4 |
|           | 자영업     | 510.6 | 21.6 | 12.1 | 236.1 | 659.6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30대에 노동 시간이 가장 짧고 육아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육아로 인한 노동시간 감축이나 휴직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사시간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여가는 육아시간이 가장 긴 30대에 가장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가사시간과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육아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매우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가사시간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412.6 | 95.6  | 80.9 | 200.9 | 650.1 |
|    | 30~39세   | 381.5 | 126.3 | 98.9 | 187.9 | 645.4 |
|    | 40~49세   | 431.1 | 134.7 | 21.1 | 233.6 | 619.5 |
| 학력 | 중졸 이하    | 364.4 | 151.6 | 23.8 | 233.6 | 666.6 |
|    | 고졸       | 430.6 | 136.2 | 31.2 | 217.0 | 625.0 |
|    | 대학 재학 이상 | 402.9 | 123.6 | 68.1 | 213.3 | 632.0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439.8 | 129.6 | 10.2  | 236.8 | 623.6 |
|                 | 1명    | 367.3 | 127.1 | 107.5 | 195.4 | 642.7 |
|                 | 2명 이상 | 370.9 | 132.7 | 136.9 | 160.1 | 639.4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431.0 | 131.1 | 20.7  | 231.5 | 625.6 |
|                 | 1명    | 352.9 | 124.0 | 140.0 | 174.6 | 648.5 |
|                 | 2명 이상 | 370.1 | 126.4 | 154.6 | 153.7 | 635.2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비해 100분 정도 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9〉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중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401.1 | 134.4 | 52.0 | 219.6 | 632.8 |
|           | 300~500만 원 | 466.9 | 107.4 | 58.6 | 189.6 | 617.5 |
|           | 500만 원 이상  | 523.8 | 75.0  | 36.6 | 191.8 | 612.8 |
| 직종        | 관리·전문      | 415.0 | 123.2 | 66.7 | 209.3 | 625.9 |
|           | 사무         | 442.0 | 110.8 | 53.7 | 204.7 | 628.7 |
|           | 서비스·판매직    | 399.7 | 137.9 | 41.7 | 223.1 | 637.6 |
|           | 농림어업       | 276.1 | 191.3 | 37.0 | 226.1 | 709.6 |
|           | 기능·장치      | 490.8 | 101.9 | 24.4 | 198.9 | 623.9 |
|           | 단순노무       | 396.2 | 157.9 | 35.9 | 234.0 | 616.0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465.4 | 106.2 | 51.7 | 190.5 | 626.2 |
|           | 비정규직       | 346.5 | 158.8 | 53.9 | 245.8 | 635.0 |
|           | 자영업        | 377.3 | 148.8 | 42.0 | 238.6 | 633.4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3. 주말의 시간 배분

본 소절에서는 주말의 시간 배분에 관하여 살펴보려 한다. 여기에서 주말 시간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량을 의미한다.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주 6일 근무제일 경우, 교대제로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주말에도 영업하는 자영업자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해서 모든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날의 시간을 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등을 노동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주말에 학원을 가는 경우 및 주말농장 등의 활동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 가. 남성 외벌이 부부의 주말 시간 배분

먼저 남성 외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앞서 주중에는 남편의 여가시간이 207.7분으로 아내의 여가시간 356.1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하여, 주말 여가시간은 421.5분(7.0시간)으로 아내(386.9분)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시간의 경우 아내는 주중 238.9분에 비해 30분가량 짧아졌으나, 남편의 가사시간이 주중 11.5분에 비해 35.6분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육아시간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주중 152.2분(2.5시간)에 비해 45분 정도 짧아졌고 대신 남편의 육아시간이 주중 18.7분에 비해 25분 정도 긴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0〉 남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말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남성 | 204.5 | 35.6  | 43.2  | 421.5 | 735.2 |
| 여성 | 7.3   | 210.4 | 107.7 | 386.9 | 727.7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단위: 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외벌이 남편의 주말 육아 시간은 30대에 가장 길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육아시간도 함께 길어졌지만, 가사시간의 경우는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이 1명일 때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40대, 학력이 높을수록,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 가사,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육아, 가사, 여가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외벌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252.2 | 24.4 | 44.4  | 397.2 | 721.7 |
|                 | 30~39세   | 202.1 | 41.3 | 68.6  | 394.3 | 733.8 |
|                 | 40~49세   | 203.9 | 31.8 | 23.8  | 443.4 | 737.0 |
| 학력              | 중졸 이하    | 382.0 | 20.0 | 22.7  | 263.3 | 752.0 |
|                 | 고졸       | 254.7 | 29.8 | 24.9  | 406.6 | 724.1 |
|                 | 대학 재학 이상 | 174.1 | 38.9 | 52.7  | 434.2 | 740.0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212.8 | 30.9 | 3.6   | 455.7 | 737.1 |
|                 | 1명       | 194.9 | 41.8 | 54.5  | 410.1 | 738.7 |
|                 | 2명 이상    | 204.5 | 34.8 | 77.8  | 393.3 | 729.6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205.9 | 31.1 | 8.1   | 458.6 | 736.3 |
|                 | 1명       | 209.7 | 41.4 | 59.4  | 388.2 | 741.3 |
|                 | 2명 이상    | 190.0 | 36.5 | 112.2 | 381.6 | 719.7 |

주: 외벌이 남편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육아시간은 소득이 높고, 사무, 비정규직일 경우에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가시간은 소득이 높을수록 길게 나타났고,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자영업-비정규직 순서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에서 살

떠났던 바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주말 노동시간이 길고 육아, 가사, 여가시간이 짧았는데, 여기에서도 유사하게 소득이 낮은 경우 노동시간이 길고 가사, 여가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학력과 소득과의 상관 관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2〉 외벌이 남편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240.6 | 32.9 | 45.9 | 391.5 | 729.0 |
|           | 300~500만 원 | 177.9 | 38.2 | 45.3 | 432.0 | 746.7 |
|           | 500만 원 이상  | 180.6 | 35.8 | 32.5 | 466.7 | 724.3 |
| 직종        | 관리·전문      | 190.7 | 35.8 | 40.2 | 436.0 | 737.3 |
|           | 사무         | 153.3 | 40.9 | 50.3 | 445.8 | 749.7 |
|           | 서비스·판매직    | 224.1 | 39.5 | 32.3 | 425.2 | 718.9 |
|           | 농림어업       | 360.0 | 40.0 | 43.6 | 310.0 | 686.4 |
|           | 기능·장치      | 231.3 | 29.2 | 45.4 | 399.8 | 734.3 |
|           | 단순노무       | 268.9 | 22.5 | 45.4 | 370.4 | 732.9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185.5 | 36.0 | 47.8 | 430.0 | 740.8 |
|           | 비정규직       | 322.8 | 23.6 | 17.2 | 367.2 | 709.2 |
|           | 자영업        | 239.9 | 37.2 | 34.1 | 406.0 | 722.7 |

주: 1) 외벌이 남편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2)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외벌이 남성 아내의 주말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육아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10세 미만이나 미취학 가구원이 많을수록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사시간은 학력이 높을수록,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이 많을수록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10세 미만이나 미취학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23〉 외벌이 남편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1.0  | 205.4 | 171.8 | 342.6 | 719.2 |
|                 | 30~39세   | 4.9  | 192.1 | 150.6 | 356.1 | 736.3 |
|                 | 40~49세   | 11.2 | 234.4 | 44.5  | 432.1 | 717.9 |
| 학력              | 중졸 이하    | 0.0  | 234.2 | 86.7  | 405.8 | 713.3 |
|                 | 고졸       | 7.3  | 223.2 | 66.9  | 414.3 | 728.3 |
|                 | 대학 재학 이상 | 7.5  | 200.9 | 136.6 | 367.4 | 727.7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14.2 | 233.8 | 12.6  | 457.8 | 721.6 |
|                 | 1명       | 5.4  | 200.8 | 155.9 | 350.1 | 727.9 |
|                 | 2명 이상    | 0.9  | 191.9 | 174.6 | 337.9 | 734.7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12.0 | 228.4 | 27.3  | 447.3 | 724.9 |
|                 | 1명       | 3.2  | 196.1 | 174.8 | 331.2 | 734.6 |
|                 | 2명 이상    | 0.6  | 182.9 | 223.4 | 311.3 | 721.7 |

주: 외벌이 남편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나. 여성 외벌이 부부의 주말 시간 배분

여성 외벌이 부부의 주말 시간 배분은 앞서 살펴본 여성 외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배분과 마찬가지로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량을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 외벌이 부부이면서 주말 시간 사용량을 보고한 응답자는 67명으로 이 중 남성은 19명뿐이고, 19명의 남성 중에서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6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먼저 주말 외벌이 아내의 노동시간을 보면, 주중에 비해 280.9분(4.7시간) 감소한 180.6분(3.0시간)으로 나타났고 노동시간이 감소한 만큼 가사시간이 62분, 여가시간이 146.4분, 기타시간이 90.5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외벌이 아내의 무직 남편은 가사시간이 주중에 비해 28.2분 감소하였고 육아는 76.2분, 여가는 51.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에 무직인 아내의 육아시간이 감소하고 외벌이 남편의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반하여, 여성 외벌이 부부도 무직인 남편의 육아시간이 주말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말 시간 응답자 중 여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 남편이면서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6명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표 3-24〉 여성 외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말

| (단위: 분) |       |       |      |       |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남성      | 38.9  | 72.1  | 82.1 | 528.4 | 718.4 |
| 여성      | 180.6 | 161.3 | 22.1 | 358.8 | 717.3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외벌이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주말 시간 사용량을 보고한 30대 미만 외벌이 여성 응답자가 없기 때문에 30대 미만이 제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동, 육아와 기타시간은 30대가 40대에 비해 길고, 가사와 여가시간은 40대가 30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 가구원의 유무나 그 가구원 수에 따른 육아시간을 보면, 10세 미만 가구원이 많을수록 육아시간이 길고, 미취학 가구원 수는 1명일 때 육아시간이 가장 긴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가사시간은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이 없을 때 가장 길고, 남성의 시간량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도 학력이 낮을수록 주말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외벌이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30~39세   | 244.0 | 118.7 | 32.0  | 281.3 | 764.0 |
|                 | 40~49세   | 151.8 | 180.6 | 17.6  | 393.9 | 696.1 |
| 학력              | 중졸 이하    | 368.3 | 121.7 | 0.0   | 326.7 | 623.3 |
|                 | 고졸       | 206.7 | 175.6 | 24.4  | 301.7 | 731.7 |
|                 | 대학 재학 이상 | 114.2 | 160.4 | 25.8  | 409.6 | 730.0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156.7 | 176.1 | 3.0   | 393.0 | 711.2 |
|                 | 1명       | 256.7 | 116.7 | 58.3  | 291.7 | 716.7 |
|                 | 2명 이상    | 217.8 | 136.7 | 67.8  | 277.8 | 740.0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153.1 | 174.6 | 8.2   | 389.2 | 714.9 |
|                 | 1명       | 238.3 | 136.7 | 103.3 | 211.7 | 750.0 |
|                 | 2명 이상    | 423.3 | 36.7  | 40.0  | 256.7 | 683.3 |

주: 외벌이 아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외벌이 아내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300만~500만 원인 경우 주말 노동시간이 짧고, 육아와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벌이 남편의 주말 시간 사용과 비교했을 때, 외벌이 남편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말 노동시간이 긴 것에 비하여, 외벌이 여성은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주말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종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없어서 제외되었고,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자영업-비정규직 순으로 주말 노동시간이 길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 육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6〉 외벌이 아내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199.5 | 159.7 | 19.5 | 334.5 | 726.8 |
|      | 300~500만 원 | 31.4  | 142.9 | 37.1 | 558.6 | 670.0 |
|      | 500만 원 이상  | 290.0 | 223.3 | 20.0 | 200.0 | 706.7 |
| 직종   | 관리·전문      | 65.5  | 182.0 | 25.5 | 453.0 | 714.0 |
|      | 사무         | 100.0 | 180.0 | 22.0 | 394.0 | 744.0 |
|      | 서비스·판매직    | 405.8 | 95.8  | 12.5 | 260.8 | 665.0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종사상<br>지위 | 기능·장치 | 425.0 | 100.0 | 0.0  | 355.0 | 560.0 |
|           | 단순노무  | 126.7 | 205.6 | 32.2 | 261.1 | 814.4 |
|           | 정규직   | 193.8 | 151.7 | 11.3 | 365.4 | 717.9 |
|           | 비정규직  | 153.3 | 181.7 | 20.0 | 356.7 | 728.3 |
|           | 자영업   | 181.7 | 160.0 | 45.8 | 347.5 | 705.0 |

주: 1) 외벌이 아내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2)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여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 시간 사용량을 보고한 30대 미만 남편 응답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 구간이 제외되었다. 가사, 육아시간은 30대가 40대보다 월등히 긴 반면, 여가시간은 40대가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사와 육아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말 시간 사용량을 보고한 여성 외벌이 부부의 남편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 5명, 40대 14명,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1명, 고졸 5명, 대졸 이상 13명으로 매우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표 3-27> 외벌이 아내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30~39세   | 0.0   | 106.0 | 124.0 | 458.0 | 752.0 |
|                 | 40~49세   | 52.9  | 60.0  | 67.1  | 553.6 | 706.4 |
|                 | 중졸 이하    | 0.0   | 0.0   | 0.0   | 550.0 | 890.0 |
| 학력              | 고졸       | 0.0   | 74.0  | 26.0  | 644.0 | 696.0 |
|                 | 대학 재학 이상 | 56.9  | 76.9  | 110.0 | 482.3 | 713.8 |
|                 | 없음       | 40.0  | 74.4  | 5.6   | 595.6 | 724.4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1명       | 0.0   | 30.0  | 136.7 | 590.0 | 683.3 |
|                 | 2명 이상    | 54.3  | 87.1  | 157.1 | 415.7 | 725.7 |
|                 | 없음       | 32.3  | 62.3  | 18.5  | 591.5 | 735.4 |
| 미취학<br>가구원 수    | 1명       | 0.0   | 60.0  | 206.7 | 463.3 | 710.0 |
|                 | 2명 이상    | 106.7 | 126.7 | 233.3 | 320.0 | 653.3 |

주: 외벌이 아내의 남편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다. 맞벌이 부부의 주말 시간 배분

맞벌이 부부의 주말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시간은 135.4분(4.3배), 육아시간은 19.8분(1.7배) 길고, 노동시간은 82.1분(1.6배), 여가시간은 48분(1.1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중에는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시간이 7.4배, 육아시간이 3.5배 길고 남편이 아내보다 노동시간이 1.3배 길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3-28〉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남성 | 224.6 | 41.0  | 28.8 | 410.4 | 735.1 |
| 여성 | 142.5 | 176.4 | 48.6 | 362.4 | 710.2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맞벌이 남성의 주말 시간량을 살펴보면, 육아시간은 30대에 가장 길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을 제외한 가사, 육아, 여가, 기타시간이 증가하고,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육아와 가사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여가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외벌이와 마찬가지로 맞벌이의 경우에도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육아, 여가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9〉 맞벌이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291.0 | 50.0 | 34.3 | 377.1 | 687.6 |
|                 | 30~39세   | 212.0 | 45.5 | 51.8 | 386.0 | 744.6 |
|                 | 40~49세   | 228.1 | 38.2 | 16.4 | 424.9 | 732.4 |
| 학력              | 중졸 이하    | 429.2 | 10.8 | 8.3  | 295.8 | 695.8 |
|                 | 고졸       | 272.8 | 31.2 | 16.0 | 400.3 | 719.8 |
|                 | 대학 재학 이상 | 190.1 | 47.8 | 37.1 | 419.7 | 745.3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240.2 | 41.0 | 3.8  | 429.6 | 725.4 |
|                 | 1명       | 211.6 | 39.5 | 48.1 | 397.3 | 743.5 |
|                 | 2명 이상    | 203.9 | 43.4 | 64.7 | 380.6 | 747.5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239.9 | 40.0 | 9.3  | 424.1 | 726.8 |
|                 | 1명       | 189.5 | 40.4 | 62.7 | 393.7 | 753.7 |
|                 | 2명 이상    | 200.2 | 49.8 | 87.1 | 353.1 | 749.8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적거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인 경우 주말 노동시간이 긴 반면, 정규직인 경우에는 주말에 노동시간이 짧고, 그만큼 육아, 가사, 여가, 기타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이 긴 만큼 육아와 여가에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0〉 맞벌이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255.0 | 36.9 | 28.2 | 394.9 | 725.0 |
|      | 300~500만 원 | 196.3 | 48.1 | 30.1 | 421.6 | 743.9 |
|      | 500만 원 이상  | 179.7 | 32.9 | 26.8 | 447.7 | 752.9 |
| 직종   | 관리·전문      | 175.6 | 49.6 | 44.2 | 439.4 | 731.2 |
|      | 사무         | 145.1 | 55.9 | 38.2 | 435.1 | 765.7 |
|      | 서비스·판매직    | 297.8 | 33.2 | 22.1 | 361.4 | 725.6 |
|      | 농림어업       | 194.0 | 14.0 | 36.0 | 544.0 | 652.0 |
|      | 기능·장치      | 268.6 | 28.8 | 17.6 | 406.4 | 718.7 |
|      | 단순노무       | 301.4 | 35.6 | 7.2  | 356.9 | 738.9 |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198.1 | 44.3 | 31.8 | 425.1 | 740.7 |
|           | 비정규직 | 246.9 | 39.2 | 10.0 | 420.3 | 723.6 |
|           | 자영업  | 285.4 | 33.5 | 24.8 | 372.5 | 723.9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40대의 노동 시간이 길고, 가사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육아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은 중졸 이하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고 육아, 여가시간이 짧은 반면, 대졸 이상은 노동시간이 짧고 육아, 가사, 여가시간이 긴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10세 미만 가구원이 많을수록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육아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1〉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96.9  | 150.6 | 109.2 | 374.7 | 708.6 |
|                 | 30~39세   | 96.5  | 167.0 | 91.0  | 351.3 | 734.2 |
|                 | 40~49세   | 176.1 | 184.4 | 16.3  | 368.9 | 694.4 |
| 학력              | 중졸 이하    | 268.8 | 146.6 | 15.3  | 330.9 | 678.4 |
|                 | 고졸       | 191.1 | 180.2 | 23.6  | 348.5 | 696.6 |
|                 | 대학 재학 이상 | 92.7  | 175.2 | 72.0  | 376.3 | 723.8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179.2 | 183.4 | 7.0   | 376.5 | 694.0 |
|                 | 1명       | 100.6 | 162.6 | 96.2  | 350.5 | 730.0 |
|                 | 2명 이상    | 71.6  | 171.2 | 128.8 | 329.0 | 739.4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165.8 | 181.9 | 16.9  | 375.1 | 700.2 |
|                 | 1명       | 71.0  | 164.0 | 128.5 | 333.1 | 743.4 |
|                 | 2명 이상    | 94.8  | 153.7 | 155.7 | 312.5 | 723.3 |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맞벌이 남성은 소득이 적을수록 주말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맞벌이 여성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 노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300만~500만 원 구간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

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300만~500만 원 구간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만큼 가사, 육아, 여가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맞벌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일 경우 노동시간이 짧고, 육아시간이 긴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은 노동시간이 길고 육아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2〉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간 배분: 주말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151.0 | 174.1 | 45.3 | 361.9 | 707.7 |
|        | 300~500만 원 | 75.9  | 197.2 | 77.1 | 367.5 | 722.3 |
|        | 500만 원 이상  | 126.4 | 167.7 | 43.2 | 358.6 | 744.1 |
| 직종     | 관리·전문      | 91.4  | 183.3 | 65.4 | 383.7 | 716.1 |
|        | 사무         | 54.1  | 196.3 | 66.0 | 399.6 | 724.1 |
|        | 서비스·판매직    | 226.7 | 152.0 | 33.0 | 325.2 | 703.2 |
|        | 농림어업       | 315.6 | 233.3 | 0.0  | 203.3 | 687.8 |
|        | 기능·장치      | 185.4 | 178.3 | 27.0 | 337.0 | 712.2 |
|        | 단순노무       | 198.2 | 175.4 | 21.7 | 360.7 | 684.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11.1 | 180.2 | 57.2 | 377.3 | 714.3 |
|        | 비정규직       | 166.1 | 177.4 | 37.8 | 354.5 | 704.2 |
|        | 자영업        | 210.1 | 162.0 | 34.8 | 328.2 | 704.9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4. 주관적 시간 부족감과 실제 시간 사용량

유배우 남녀의 주관적 시간 부족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72.9%가 항상 혹은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간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7.7%, 여성의 경우 68.9%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맞벌이와 외벌이를 구분하면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상세히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의 81.0%, 남성의 79.8%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에서는 남편만 일하는 외벌이 남편의 경우 77.6%, 여성만 일하는 외벌이 아내의 경우 85.9%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외벌이 아내가 외벌이 남편에 비해 시간 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인 아내와 여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인 남편의 시간 부족감 차이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 아내 중 52.2%가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비해 여성 외벌이 부부의 무직 남편은 37.5%만이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14.7%p 정도 차이를 보였다. 부부가 둘 다 무직인 경우에도 남편은 42.3%만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아내는 55.6%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33〉 유배우 남녀의 시간 부족감

(단위: N, %)

|               |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
|---------------|---------------|---------------|---------------|--------------|
| 전체            | 2,570 (32.9%) | 3,130 (40.0%) | 1,762 (22.5%) | 358 (4.6%)   |
| 남성 전체         | 1,348 (38.1%) | 1,404 (39.6%) | 710 (20.0%)   | 80 (2.3%)    |
| 여성 전체         | 1,222 (28.6%) | 1,726 (40.3%) | 1,052 (24.6%) | 278 (6.5%)   |
| 맞벌이 남성        | 720 (39.4%)   | 738 (40.4%)   | 320 (17.5%)   | 48 (2.6%)    |
| 맞벌이 여성        | 862 (37.2%)   | 1,016 (43.8%) | 358 (15.4%)   | 82 (3.5%)    |
| 외벌이 남편        | 614 (38.0%)   | 640 (39.6%)   | 338 (20.9%)   | 24 (1.5%)    |
| 외벌이 아내        | 58 (45.3%)    | 52 (40.6%)    | 12 (9.4%)     | 6 (4.7%)     |
| 외벌이 남편의 무직 아내 | 272 (15.6%)   | 638 (36.6%)   | 656 (37.7%)   | 176 (10.1%)  |
| 외벌이 아내의 무직 남편 | 4 (8.3%)      | 14 (29.2%)    | 24 (50.0%)    | 6 (12.5%)    |
| 둘 다 무직 부부 남편  | 10 (19.2%)    | 12 (23.1%)    | 28 (53.8%)    | 2 (3.8%)     |
| 둘 다 무직 부부 아내  | 30 (33.3%)    | 20 (22.2%)    | 26 (28.9%)    | 14 (15.6%)   |

주: 1) 시간 부족을 느끼는 정도: 부족(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여유(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2) 외벌이 남편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외벌이 아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시간 부족감에 따른 실제 시간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전체 결과를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실제로 여가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 육아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에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외벌이 남성과 외벌이 여성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4〉 시간 부족감에 따른 시간 사용량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전체               | 부족 | 324.2 | 98.1  | 59.4  | 283.2 | 675.0 |
|                  | 여유 | 192.6 | 141.9 | 54.3  | 364.8 | 686.4 |
| 맞벌이 남성           | 부족 | 437.8 | 24.7  | 20.4  | 279.2 | 677.9 |
|                  | 여유 | 377.4 | 32.7  | 19.2  | 327.9 | 682.7 |
| 맞벌이 여성           | 부족 | 322.2 | 144.0 | 53.5  | 259.1 | 661.2 |
|                  | 여유 | 259.4 | 161.0 | 39.5  | 322.0 | 658.1 |
| 외벌이 남편           | 부족 | 428.0 | 21.1  | 29.1  | 283.2 | 678.6 |
|                  | 여유 | 368.8 | 21.0  | 26.0  | 326.0 | 698.1 |
| 외벌이 아내           | 부족 | 367.6 | 113.1 | 31.0  | 262.9 | 665.4 |
|                  | 여유 | 286.1 | 180.0 | 47.8  | 293.9 | 632.2 |
| 외벌이 남편의<br>무직 아내 | 부족 | 16.9  | 223.0 | 173.5 | 334.1 | 692.5 |
|                  | 여유 | 14.4  | 232.9 | 92.3  | 405.5 | 695.0 |
| 외벌이 아내의<br>무직 남편 | 부족 | 137.8 | 58.3  | 60.0  | 430.6 | 753.3 |
|                  | 여유 | 98.7  | 107.7 | 21.7  | 537.7 | 674.3 |
| 둘 다 무직인<br>남성    | 부족 | 302.3 | 16.8  | 53.2  | 357.7 | 710.0 |
|                  | 여유 | 60.3  | 53.3  | 40.3  | 546.3 | 739.7 |
| 둘 다 무직인<br>여성    | 부족 | 61.6  | 191.2 | 165.0 | 339.2 | 683.0 |
|                  | 여유 | 0.0   | 212.8 | 44.5  | 443.3 | 739.5 |

주: 시간 부족을 느끼는 정도: 부족(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여유(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그 외에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간 부족감에 따른 실제 시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유배우 남녀 전체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육아시간이 길게 나타났는데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때는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부족감은 가사·육아시간보다는 노동시간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벌이 남성과 외벌이 여성을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외벌이 여성의 여가시간이 매우 짧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외벌이 여성 중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외벌이 여성이나 외벌이 남성에 비해 여가시간이 매우 짧고 대신 노동, 육아,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 육아, 가사시간을 합쳐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외벌이 남성은 500.0분(8.3시간),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외벌이 남성은 453.8분(7.6시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외벌이 여성은 566분(9.4시간)을 노동, 육아, 가사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외벌이 여성이 노동, 육아,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630분(10.5시간)으로 가장 길다. 그러나 노동시간만을 보면, 여유롭다고 느끼는 이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의 노동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 부족감은 다른 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표 3-35〉 시간 부족감에 따른 시간 사용량: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전체         | 부족 | 274.8 | 99.9  | 120.8 | 258.4 | 686.0 |
|            | 여유 | 188.2 | 121.8 | 140.8 | 291.1 | 698.0 |
| 맞벌이 남성     | 부족 | 416.1 | 27.0  | 49.5  | 254.6 | 692.9 |
|            | 여유 | 404.5 | 21.1  | 56.7  | 278.2 | 679.5 |
| 맞벌이 여성     | 부족 | 252.0 | 137.8 | 139.8 | 229.2 | 681.3 |
|            | 여유 | 230.6 | 145.6 | 150.3 | 236.5 | 677.0 |
| 외벌이 남편     | 부족 | 426.2 | 23.9  | 49.9  | 261.3 | 678.7 |
|            | 여유 | 381.5 | 20.8  | 51.5  | 284.3 | 701.9 |
| 외벌이 아내     | 부족 | 353.0 | 109.5 | 103.5 | 223.5 | 650.5 |
|            | 여유 | 312.5 | 117.5 | 200.0 | 95.0  | 715.0 |
| 외벌이 남편의 아내 | 부족 | 9.0   | 212.3 | 240.9 | 283.9 | 693.9 |
|            | 여유 | 9.3   | 205.1 | 214.8 | 307.5 | 703.3 |
| 외벌이 아내의 남편 | 부족 | 227.5 | 62.5  | 225.0 | 285.0 | 640.0 |
|            | 여유 | 90.0  | 77.5  | 105.0 | 450.0 | 717.5 |
| 둘 다 무직인 남성 | 부족 | 325.6 | 16.9  | 70.0  | 310.6 | 716.9 |
|            | 여유 | 80.0  | 35.0  | 94.2  | 475.0 | 755.8 |
| 둘 다 무직인 여성 | 부족 | 54.7  | 191.6 | 237.5 | 273.4 | 682.8 |
|            | 여유 | 0.0   | 216.7 | 191.7 | 280.0 | 751.7 |

주: 시간 부족을 느끼는 정도: 부족(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여유(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5. 동시행동 시간 사용

동시행동은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국민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의식하고 있는 동시행동만 기록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동시행동은 대부분 제외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동시행동이 주행동에 비해 상당히 적게 측정되며 따라서 동시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김희재, 남기성, 2007). 특히 저연령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보살핌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주은선, 김사현, 김민

성, 2014) 이러한 시간은 생활시간조사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100여 분의 동시행동을 보고하였다. 동시행동의 내용으로는 여가활동이 대부분이었고 세부적으로는 대면 교제, 방송 보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 등이 있다.

〈표 3-36〉 전체 요일 및 성별의 동시행동 시간 사용

단위: 분

|                 |            | 노동  | 가사  | 육아  | 여가    | 기타   |
|-----------------|------------|-----|-----|-----|-------|------|
| 연령              | 19~29세     | 0.0 | 0.8 | 6.8 | 92.9  | 7.8  |
|                 | 30~39세     | 0.3 | 0.9 | 4.5 | 94.4  | 10.9 |
|                 | 40~49세     | 0.4 | 0.7 | 0.6 | 95.1  | 10.2 |
| 학력              | 중졸 이하      | 0.0 | 1.3 | 1.8 | 96.3  | 7.0  |
|                 | 고졸         | 0.4 | 0.7 | 1.3 | 85.8  | 10.2 |
|                 | 대학 재학 이상   | 0.3 | 0.8 | 3.2 | 100.0 | 10.6 |
| 10세 미만<br>가구원 수 | 없음         | 0.4 | 0.7 | 0.1 | 99.4  | 10.3 |
|                 | 1명         | 0.2 | 0.8 | 5.1 | 92.7  | 11.1 |
|                 | 2명 이상      | 0.2 | 0.8 | 4.2 | 87.5  | 9.6  |
| 미취학<br>가구원 수    | 없음         | 0.3 | 0.7 | 0.5 | 98.4  | 11.0 |
|                 | 1명         | 0.4 | 0.8 | 5.5 | 91.7  | 9.4  |
|                 | 2명 이상      | 0.1 | 0.9 | 6.3 | 81.9  | 9.3  |
| 개인소득            | 300만 원 미만  | 0.3 | 0.9 | 2.8 | 91.3  | 10.0 |
|                 | 300~500만 원 | 0.2 | 0.4 | 1.5 | 101.8 | 11.3 |
|                 | 500만 원 이상  | 0.8 | 0.5 | 1.8 | 108.1 | 11.2 |
| 직종              | 관리·전문      | 0.5 | 0.7 | 2.5 | 102.3 | 11.1 |
|                 | 사무         | 0.3 | 0.5 | 2.6 | 97.0  | 10.8 |
|                 | 서비스·판매직    | 0.2 | 0.5 | 1.0 | 100.1 | 11.7 |
|                 | 농림어업       | 0.0 | 0.2 | 0.9 | 73.4  | 6.4  |
|                 | 기능·장치      | 0.1 | 0.3 | 1.1 | 92.2  | 8.1  |
|                 | 단순노무       | 1.8 | 0.8 | 0.6 | 75.1  | 6.3  |
| 종사상<br>지위       | 정규직        | 0.2 | 0.5 | 2.1 | 95.8  | 10.6 |
|                 | 비정규직       | 0.7 | 0.7 | 1.2 | 91.1  | 9.1  |
|                 | 자영업        | 0.7 | 0.4 | 1.0 | 99.0  | 9.6  |
|                 | 무직         | 0.1 | 1.5 | 4.7 | 91.2  | 11.2 |

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6. 소결

본 절에서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 변화와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년 데이터로 유배우 부부의 속성별 시간 사용 경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로 2004년 조사의 경우, 그 전회 조사보다 노동시간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고, 감소한 노동시간이 여가시간으로 전이된 것을 볼 수 있었다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2014년의 데이터로는 부부의 일하는 형태, 즉 외벌이, 맞벌이로 나누고 외벌이는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와 아내가 외벌이일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속성은 인구학적, 경제적 속성으로 나누어, 인구학적 속성은 연령, 학력, 미취학 가구원 수로, 경제적 속성은 개인소득, 직종, 종사상 지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경우와 주중, 주말을 나누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결과에서 남성은 노동, 여가, 가사, 육아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여성은 여가, 노동, 가사, 육아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가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7.2배, 육아시간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은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가사, 육아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 안일을 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외벌이일 경우에는 여성이 가사 및 육아를 하는 시간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이 외벌이인



케이스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맞벌이 부부는 주중 남편의 노동시간이 아내에 비하여 1.3배 길고, 가사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7.4배, 육아시간도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수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이는 주말의 경우도 주중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단, 노동시간의 경우는 주중보다 전체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중보다 주말의 노동시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간 부족감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실제로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노동시간이 시간 부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 제 4 장

## 시간 배분의 영향 요인

제1절 시간 배분 분석 사용 변수

제2절 주중 시간 배분에 관한 분석

제3절 주말 시간 사용에 관한 분석

제4절 소결



# 4

## 시간 배분의 영향 요인 <<

### 제1절 시간 배분 분석 사용 변수

본 절에서는 2014년의 시간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 배분에 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분석은 앞의 실증 분석모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예측치를 계산하고, 각 시간 방정식(노동, 가사, 육아, 여가, 기타시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각 시간의 예측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예측치(임금 및 시간)를 각 시간의 구조식에 도입하여 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시간 배분에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고용 등의 개인 속성과 자녀의 정보를 분석에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주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연령, 교육연수, 고용 형태, 직종, 건강 상태,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 주거 지역, 지역별 실업률, 조사 시기, 주거 면적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범주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장치, 단순노무직으로 나누었다.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은 편'을 통합하여 건강이 좋은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자녀수는 영유아, 학령기(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인기로 구분하였고, 그중에서 0~2세, 3~5세 변수로부터 미취학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자녀 및 가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축하였다.

<표 4-1>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주중

|                | 아내    |        |        | 남편    |        |        |
|----------------|-------|--------|--------|-------|--------|--------|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 연령             | 4,198 | 39.402 | 5.862  | 3,595 | 40.657 | 5.490  |
| 교육연수           |       | 13.784 | 2.193  |       | 14.404 | 2.235  |
| 고용 형태          |       |        |        |       |        |        |
| 정규직*           |       | 0.516  | 0.500  |       | 0.687  | 0.464  |
| 비정규직           | 2,313 | 0.230  | 0.421  | 3,538 | 0.061  | 0.239  |
| 자영업·가족종사자      |       | 0.254  | 0.435  |       | 0.252  | 0.434  |
| 직종             |       |        |        |       |        |        |
| 관리·전문직         |       | 0.303  | 0.460  |       | 0.213  | 0.410  |
| 사무직            |       | 0.214  | 0.410  |       | 0.260  | 0.439  |
| 서비스·판매직*       | 2,313 | 0.282  | 0.450  | 3,538 | 0.180  | 0.384  |
| 농림어업           |       | 0.016  | 0.127  |       | 0.016  | 0.126  |
| 기능·장치          |       | 0.054  | 0.227  |       | 0.282  | 0.450  |
| 단순노무직          |       | 0.131  | 0.337  |       | 0.049  | 0.215  |
| 건강 상태(좋은=1)    |       | 0.391  | 0.488  |       | 0.407  | 0.491  |
| 자녀수            |       |        |        |       |        |        |
| 0~2세           |       | 0.183  | 0.410  |       | 0.211  | 0.434  |
| 3~5세           |       | 0.207  | 0.437  |       | 0.237  | 0.460  |
| 6~12세          | 4,198 | 0.511  | 0.683  | 3,595 | 0.579  | 0.704  |
| 13~18세         |       | 0.437  | 0.664  |       | 0.417  | 0.658  |
| 18세 이상         |       | 0.254  | 0.550  |       | 0.132  | 0.388  |
| 미취학 아동 여부(=1)  |       | 0.337  | 0.473  |       | 0.386  | 0.487  |
| 부모 동거 여부(동거=1) |       | 0.077  | 0.302  |       | 0.075  | 0.297  |
| 주거 지역          |       |        |        |       |        |        |
| 서울·경기*         |       | 0.280  | 0.449  |       | 0.282  | 0.450  |
| 광역시            | 4,198 | 0.369  | 0.483  | 3,595 | 0.367  | 0.482  |
| 기타 도 지역        |       | 0.351  | 0.477  |       | 0.352  | 0.478  |
| 지역별 실업률        |       | 3.378  | 0.723  |       | 3.371  | 0.721  |
| 조사 시기          |       |        |        |       |        |        |
| 7월             |       | 0.251  | 0.434  |       | 0.244  | 0.430  |
| 9월             | 4,198 | 0.485  | 0.500  | 3,595 | 0.495  | 0.500  |
| 12월*           |       | 0.263  | 0.440  |       | 0.261  | 0.439  |
| 주거 면적          |       | 83.035 | 28.173 |       | 82.611 | 27.895 |

주: \*은 준거변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주거 지역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통합하였는데, 서울과 경기도, 6개의 광역시, 기타 도 지역을 묶어 변수를 구축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변수화한 것으로 7월, 9월, 12월 세 번 이루어진 것을 카테고리화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주거면적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는 평방미터( $m^2$ )이다.

## 제2절 주중 시간 배분에 관한 분석

### 1. 아내의 임금함수 추정

아내의 임금함수는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는데, 첫 번째로 노동 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에 대하여 추정을 하고, 두 번째로 임금률(시간당 임금)에 대한 추정을 한다. 1단계인 노동 참가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인 속성인 연령, 교육연수 이외에 아내의 노동 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건강 상태, 미취학 아동이 있는지의 여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 지역 변수 및 지역별 실업률을 도입하였다. 2단계인 임금률 방정식은 가능한 Mincer의 임금함수로 추정하려 하였으나, 연령과 교육연수 이외에 일자리 경력 변수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고용 형태, 직종 변수를 도입하였다.

노동 참가 방정식 추정 결과를 보면, 기본적인 속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노동 참가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것 또한 노동 참가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함께 살고 있으면 매우 강한 유의 수준에서 노동 참가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변수를 보면, 서울·

경기에 비하여 기타 도 지역의 여성 노동 참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lambda$ 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임금률 추정은 선택 편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추정, 즉 Heckman의 2단계 추정을 해야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임금률 방정식은 기본적인 속성인 연령, 연령 제곱, 교육연수, 교육연수 제곱 변수가 모두 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교육이 임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연령과 교육연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 형태 중 자영업·가족종사자의 임금률이 정규직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에 비하여 관리·전문직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사무직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나머지 농림어업, 기능·장치, 단순노무직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아내의 임금함수 추정: 주중

|                 | 노동 참가             | 임금률                 |
|-----------------|-------------------|---------------------|
| 연령              | 0.078<br>(0.048)  | 0.183*<br>(0.075)   |
| 연령 제곱           | -0.001<br>(0.001) | -0.002*<br>(0.001)  |
| 교육연수            | -0.143<br>(0.089) | -0.241*<br>(0.122)  |
| 교육연수 제곱         | 0.004†<br>(0.002) | 0.012***<br>(0.003) |
| 연령*교육연수         | 0.001<br>(0.002)  | 0.000<br>(0.002)    |
| 고용 형태(Ref. 정규직) |                   |                     |
| 비정규직            |                   | -0.031<br>(0.074)   |



|                            | 노동 참가                | 임금률                  |
|----------------------------|----------------------|----------------------|
| 자영업·가족종사자                  |                      | -1.536***<br>(0.073) |
| 직종(Ref. 서비스·판매직)<br>관리·전문직 |                      | 0.346***<br>(0.083)  |
| 사무직                        |                      | -0.088<br>(0.088)    |
| 농림어업                       |                      | -1.409***<br>(0.227) |
| 기능·장치                      |                      | -0.479***<br>(0.128) |
| 단순노무직                      |                      | -0.355***<br>(0.093) |
| 건강 상태                      | -0.083*<br>(0.041)   |                      |
| 미취학 아동 여부(=1)              | -0.472***<br>(0.056) |                      |
| 부모 동거 여부(=1)               | 0.332***<br>(0.069)  |                      |
| 주거 지역(Ref. 서울·경기)<br>광역시   | 0.008<br>(0.051)     |                      |
| 기타 도 지역                    | 0.189**<br>(0.063)   |                      |
| 지역별 실업률                    | -0.035<br>(0.035)    |                      |
| 상수항                        | -0.893<br>(1.273)    | -3.537†<br>(1.881)   |
| λ 추정치                      |                      | 0.683**<br>(0.215)   |
| log-likelihood             |                      | -2686.9              |
| R-squared                  |                      | 0.073                |
| left-censored              |                      | 1,954                |
| uncensored                 |                      | 2,244                |
| Observations               |                      | 4,198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2. 아내의 시간 사용 추정

시간 사용 방정식 추정에서는 도구 변수 이외에 공통적으로 연령(연령 제곱), 교육연수(교육연수 제곱), 연령과 교육연수의 교차항, 연령별 자녀수(0~2세, 3~5세, 6~12세, 13~18세, 18세 이상), 부모 동거 여부를 도입한다. 아내의 시간 사용 중 노동시간과 육아시간<sup>27)</sup>의 추정은 Tobit 모델로 하였다.

### 가. 노동시간

아내의 노동시간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연령은 연령 제곱 변수와 함께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으며, 이 지점을 계산하면 39.6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내의 노동시간은 39.6세에 가장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연수와 제곱항도 유의하긴 하나 1차항에서는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과 유사하게 비선형성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0~5세)가 있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8)</sup> 단,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다. 부모와 동거할 경우 또한 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

27) 본 분석의 대상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연령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등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있어도 육아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많은 비율로 육아시간이 0인 경우가 존재한다.

28) 본 분석에 도입한 자녀변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엄밀하게 0~5세의 자녀가 많을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석해야 하나 자녀의 존재로 해석해도 큰 차이가 없고 해석이 용이하기에 자녀유무의 의미로 해석하도록 한다.

간 방정식에서 도구변수로 도입한 조사 월 변수는 12월에 비하여 7월과 9월의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7월이 더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나. 가사시간

가사시간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시간 방정식에서 유의했던 연령과 교육연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으나, 자녀수와 부모 동거 여부 변수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감소한다. 반면, 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부모의 도움이 아내의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사시간 방정식을 식별하기 위하여 도입한 도구변수인 주거 전용면적은 강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거 전용면적이 클수록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육아시간

육아시간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연령과 연령 제곱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변화 경향은 노동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곡점을 계산하면 26.3세로 나타나며, 따라서 아내의 육아시간은 26.3세가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연수와 교육연수 제곱항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의 효과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변수의 효과는 노동시간과 반대 경향이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증가하고,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감소한다. 단, 육아시간도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의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육아가 노동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 동거 여부는 가사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구변수로 도입한 주거지역 변수는 서울·경기에 비하여 광역시가 10%의 유의성 범위에서 육아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도 지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여가시간

여가시간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연령의 영향이 여타 시간과 유사하게 비선형성을 띠고 있으나, 그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시간(노동시간, 육아시간)의 경우는 초기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에 반하여, 여가시간은 나중에 증가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변곡점을 계산하면 45.2세로 나타는데, 이 결과로부터 아내의 여가시간은 45.2세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과 교육연수의 교차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연수가 높으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가시간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녀수의 경우를 보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여가시간이 감소하지만, 6~12세의 자녀가 있으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 자녀의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모 동거 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변수로 도입한 건강 상태는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 기타시간

기타시간은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유의한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의 기타시간은 주로 생존시간이 포함되고, 자녀 이외에 의무적으로 돌봄에 사용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것이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기타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기타시간의 감소 폭이 다른 자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 많아지면 기타시간을 줄여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가시간과 같이 기타시간의 도구변수로는 건강 상태를 도입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을수록 기타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아내의 시간 사용 추정: 주중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여가시간                  | 기타시간               |
|---------|-------------------------|----------------------|----------------------|-----------------------|--------------------|
| 연령      | 41.144*<br>(17.022)     | -2.813<br>(3.990)    | 15.767***<br>(4.724) | -22.649***<br>(5.486) | -3.564<br>(3.860)  |
| 연령 제곱   | -0.522*<br>(0.207)      | 0.081†<br>(0.049)    | -0.310***<br>(0.058) | 0.254***<br>(0.067)   | 0.070<br>(0.047)   |
| 교육연수    | -54.388†<br>(28.939)    | 5.804<br>(7.198)     | 18.733*<br>(8.633)   | -9.476<br>(9.862)     | 9.825<br>(6.938)   |
| 교육연수 제곱 | 1.986**<br>(0.642)      | -0.109<br>(0.165)    | -0.476*<br>(0.223)   | -0.515*<br>(0.226)    | -0.115<br>(0.159)  |
| 연령*교육연수 | 0.161<br>(0.505)        | -0.169<br>(0.122)    | -0.025<br>(0.150)    | 0.546**<br>(0.168)    | -0.209†<br>(0.118) |
| 자녀수     |                         |                      |                      |                       |                    |
| 0~2세    | -184.870***<br>(23.253) | 17.020**<br>(5.244)  | 94.941***<br>(5.877) | -16.079*<br>(7.209)   | 0.088<br>(5.071)   |
| 3~5세    | -103.189***<br>(19.477) | 18.397***<br>(4.533) | 49.632***<br>(5.119) | -5.569<br>(6.232)     | 4.821<br>(4.384)   |

116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여가시간                    | 기타시간                   |
|----------------------|-----------------------|-----------------------|-----------------------|-------------------------|------------------------|
| 6~12세                | -26.195*<br>(13.102)  | 18.142***<br>(3.178)  | 5.394<br>(3.658)      | 10.026*<br>(4.367)      | -2.287<br>(3.072)      |
| 13~18세               | 84.607***<br>(12.830) | 10.037**<br>(3.189)   | -43.028***<br>(3.841) | 2.621<br>(4.384)        | -22.308***<br>(3.084)  |
| 18세 이상               | 83.771***<br>(16.954) | -12.006**<br>(4.297)  | -71.426***<br>(5.920) | 2.766<br>(5.900)        | -10.982**<br>(4.150)   |
| 부모 동거 여부             | 96.267***<br>(20.764) | -21.882***<br>(5.282) | -23.820***<br>(6.314) | -33.772***<br>(7.221)   | 14.269**<br>(5.080)    |
| 조사 월 (Ref. 12월)      |                       |                       |                       |                         |                        |
| 7월                   | 58.449**<br>(18.207)  |                       |                       |                         |                        |
| 9월                   | 40.625*<br>(15.927)   |                       |                       |                         |                        |
| 주거 전용면적              |                       | 0.211***<br>(0.059)   |                       |                         |                        |
| 주거 지역 (Ref. 서울·경기)   |                       |                       |                       |                         |                        |
| 광역시                  |                       |                       | 8.376†<br>(4.733)     |                         |                        |
| 기타 도 지역              |                       |                       | -12.162*<br>(4.814)   |                         |                        |
| 건강 상태<br>(약간 안 좋음=1) |                       |                       |                       | -15.375*<br>(6.809)     | 12.153*<br>(4.790)     |
| 상수항                  | -457.125<br>(423.145) | 166.746†<br>(101.092) | -190.952<br>(117.607) | 694.303***<br>(138.673) | 685.177***<br>(97.556) |
| log-likelihood       | -17987.8              |                       | -19635.7              |                         |                        |
| R-squared            | 0.015                 | 0.025                 | 0.074                 | 0.062                   | 0.043                  |
| left-censored        | 1,951                 |                       | 1,101                 |                         |                        |
| uncensored           | 2,247                 |                       | 3,097                 |                         |                        |
| Observations         | 4,198                 | 4,198                 | 4,198                 | 4,198                   | 4,198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2. 남편의 시간 사용 추정

남편의 시간 사용 중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은 0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Tobit 모델로 추정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편의 시간 사용은

자신의 속성, 예를 들어 연령, 교육연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단지 자녀의 수 정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노동시간에서는 0~2세 자녀의 존재가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2세 자녀를 가진 남편의 가사시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육아시간에서는 아내와 유사하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증가하고,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변화 폭은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가시간에서는 3~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의 경우는 13세 이상 자녀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 기타시간은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소하였으나, 아내의 경우와는 다르게 13~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시간 증가 때문에 자신의 생존 및 의무시간을 희생하는 경향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은 아내의 결과와 유사하게 남편의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각 시간 방정식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한 도구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은 12월에 비하여 9월, 7월의 순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시간은 주거 전용면적이 클수록 10%의 유의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내와 정반대의 결과로, 집 크기와 상관없이 남편이 가사 일에 무관심한 것을 반영한다. 육아시간에서도 아내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아내의 경우는 기타 도 지역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편의 경우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지역변수를 보육 인프라의 대리변수라

고 한다면 주로 육아를 하는 아내의 영향은 지역의 보육 인프라가 서울·경기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육아시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나, 남편의 영향은 아마도 수도권의 남편보다 육아에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4〉 남편의 시간 사용 추정: 주중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여가시간                  | 기타시간                 |
|----------------|-----------------------|----------------------|-----------------------|-----------------------|----------------------|
| 연령             | 3.354<br>(8.069)      | 1.011<br>(4.583)     | 2.248<br>(4.267)      | 1.467<br>(5.731)      | -5.448<br>(4.513)    |
| 연령 제곱          | -0.121<br>(0.095)     | 0.051<br>(0.054)     | -0.032<br>(0.051)     | 0.033<br>(0.068)      | 0.056<br>(0.053)     |
| 교육연수           | -13.650<br>(15.097)   | 9.034<br>(8.742)     | 5.868<br>(8.022)      | 14.794<br>(10.719)    | -12.285<br>(8.441)   |
| 교육연수 제곱        | 0.232<br>(0.359)      | 0.180<br>(0.202)     | -0.054<br>(0.196)     | -0.340<br>(0.255)     | 0.184<br>(0.201)     |
| 연령*교육연수        | 0.265<br>(0.245)      | -0.326*<br>(0.140)   | -0.056<br>(0.135)     | -0.137<br>(0.174)     | 0.081<br>(0.137)     |
| 자녀수            |                       |                      |                       |                       |                      |
| 0~2세           | -30.161***<br>(8.824) | 26.389***<br>(4.842) | 53.347***<br>(4.254)  | -7.967<br>(6.262)     | 1.022<br>(4.931)     |
| 3~5세           | -0.526<br>(7.755)     | 12.592**<br>(4.365)  | 38.936***<br>(3.827)  | -18.697***<br>(5.508) | -4.298<br>(4.337)    |
| 6~12세          | -7.952<br>(5.540)     | 13.316***<br>(3.109) | 1.306<br>(2.959)      | 3.032<br>(3.936)      | 1.088<br>(3.100)     |
| 13~18세         | -5.133<br>(6.044)     | 7.763*<br>(3.446)    | -31.755***<br>(3.851) | 13.227**<br>(4.292)   | -4.162<br>(3.380)    |
| 18세 이상         | -1.450<br>(9.389)     | 5.035<br>(5.356)     | -34.555***<br>(6.810) | 20.832**<br>(6.670)   | -15.060**<br>(5.252) |
| 부모 동거 여부       | 9.103<br>(9.667)      | -17.442**<br>(6.171) | -11.688*<br>(5.413)   | 1.195<br>(6.859)      | -0.170<br>(5.402)    |
| 조사 월 (Ref.12월) |                       |                      |                       |                       |                      |
| 7월             | -13.951 †<br>(8.071)  |                      |                       |                       |                      |
| 9월             | -18.157**<br>(6.939)  |                      |                       |                       |                      |
| 주거 전용 면적       |                       | -0.105 †<br>(0.062)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여가시간      | 기타시간       |
|----------------------|-----------|-----------|-----------|-----------|------------|
| 주거 지역 (Ref.서울·경기)    |           |           |           |           |            |
| 광역시                  |           |           | 8.544*    |           |            |
|                      |           |           | (3.965)   |           |            |
| 기타 도 지역              |           |           | 18.945*** |           |            |
|                      |           |           | (3.914)   |           |            |
| 건강 상태<br>(약간 안 좋음=1) |           |           |           | -0.043    | 7.957      |
|                      |           |           |           | (-7.263)  | (-5.720)   |
| 상수항                  | 634.625** | -157.414  | -125.978  | 31.315    | 864.455*** |
|                      | (215.846) | (124.353) | (113.229) | (153.224) | (120.663)  |
| log-likelihood       |           | -7653.8   | -8337.1   |           |            |
| R-squared            | 0.010     | 0.004     | 0.056     | 0.046     | 0.008      |
| left-censored        |           | 2,479     | 2,310     |           |            |
| uncensored           |           | 1,116     | 1,285     |           |            |
| Observations         | 3,595     | 3,595     | 3,595     | 3,595     | 3,595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3. 시간 사용 간의 관계

#### 가.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시간 사용 간의 관계 방정식에 도입하는 시간들은 모두 상기 도구 변수를 이용한 추정을 시행하고 난 후의 예측치를 계산하여 도입한 것이며, 종속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는 노동, 가사, 육아시간에 대한 추정을 할 것이다.

먼저 아내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중 본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내 본인의 가사시간은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데, 이러한 효과는 아내의 다른 시간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육아·여가·기타시간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기타시간의 증감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타시간의 감소가 노동시간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제3장의 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의 노동시간은 생존 및 의무시간의 희생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사시간 또한 노동시간과 같이 그 외 다른 모든 시간들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노동·육아·여가·기타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육아시간에서도 나타나는데, 노동·가사·여가·기타시간이 증가하면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내의 시간 사용 간에는 모두 상충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시간 사용 사이에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를 보면, 아내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과 가사·육아시간이 서로 상충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경우, 아내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외의 모든 시간이 노동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사시간에서는 노동시간 이외에 육아·여가·기타시간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시간과 기타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가사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이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육아를 하는 남편들이 가사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와 가사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가시간 및 기타시간과 가사시간이

양(+)<sup>1</sup>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들이 가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시간은 노동시간과 음(-)의 관계, 가사시간과는 앞의 결과와 같이 양(+)<sup>1</sup>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타시간의 경우는 육아시간에 양(+)<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우에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5〉 본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중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본인 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 -0.350***<br>(0.007) | -0.886***<br>(0.011) |                      | -0.347***<br>(0.012) | -0.497***<br>(0.021) |
| 가사시간      | -0.986***<br>(0.021)  |                      | -0.055*<br>(0.026)   | -0.526***<br>(0.019) |                      | 0.428***<br>(0.027)  |
| 육아시간      | -0.560***<br>(0.011)  | -0.092***<br>(0.008) |                      | -0.275***<br>(0.012) | 0.156***<br>(0.01)   |                      |
| 여가시간      | -0.350***<br>(0.037)  | 0.357***<br>(0.021)  | -0.933***<br>(0.032) | -0.936***<br>(0.028) | 0.327***<br>(0.025)  | -2.038***<br>(0.027) |
| 기타시간      | -1.683***<br>(0.026)  | -0.791***<br>(0.018) | -0.342***<br>(0.033) | -0.531***<br>(0.03)  | 0.121***<br>(0.025)  | 0.074†<br>(0.042)    |
| 연령        | 6.405***<br>(0.961)   | 15.291***<br>(0.525) | 12.976***<br>(0.953) | 3.727***<br>(0.404)  | 3.787***<br>(0.325)  | 3.814***<br>(0.545)  |
| 연령 제곱     | -0.027**<br>(0.01)    | -0.147***<br>(0.006) | -0.308***<br>(0.011) | -0.050***<br>(0.005) | -0.028***<br>(0.004) | -0.013†<br>(0.007)   |
| 교육연수      | 2.093<br>(1.279)      | 4.005***<br>(0.76)   | -9.589***<br>(1.238) | 0.058<br>(0.899)     | -1.358†<br>(0.73)    | 27.681***<br>(1.117) |
| 교육연수 제곱   | 0.398***<br>(0.033)   | 0.359***<br>(0.019)  | -0.152***<br>(0.039) | 0.081***<br>(0.021)  | 0.360***<br>(0.016)  | -0.727***<br>(0.026) |
| 연령*교육연수   | -0.360***<br>(0.03)   | -0.408***<br>(0.017) | 0.498***<br>(0.033)  | -0.009<br>(0.013)    | -0.168***<br>(0.01)  | -0.101***<br>(0.018) |
| 미취학 자녀수   | -11.760***<br>(1.167) | 1.218†<br>(0.704)    | 2.770**<br>(0.983)   | -7.268***<br>(0.649) | 5.356***<br>(0.528)  | 5.312***<br>(0.882)  |
| 부모 동거 여부  | 41.658***             | 22.041***            | -0.853               | -3.765***            | -14.019***           | 1.809*               |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 (1.511)                 | (0.917)                | (1.507)                | (0.568)                | (0.4)                | (0.767)               |
| 상수항            | 1529.613***<br>(31.726) | 413.732***<br>(22.695) | 639.064***<br>(33.774) | 980.747***<br>(28.596) | -60.368*<br>(26.725) | 317.963***<br>(43.96) |
| log-likelihood | -11993.786              |                        |                        |                        |                      |                       |
| R-squared      | 0.956                   | 0.652                  | 0.389                  | 0.821                  | 0.687                | 0.952                 |
| left-censored  | 1,265                   |                        |                        |                        |                      |                       |
| uncensored     | 2,933                   |                        |                        |                        |                      |                       |
| Observations   | 4,198                   | 4,198                  | 4,198                  | 3,595                  | 3,595                | 3,595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나. 배우자 시간과 본인 시간과의 관계

배우자의 시간 또한 본인 시간 간의 관계에서 도입한 예측치를 도입하여 추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아내의 노동시간은 배우자의 모든 시간에 대하여 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노동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쪽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한쪽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 즉 서로 보완적인 노동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부가노동가설(added work hypothesis)에서 이야기하는 부가노동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남편이 실직 등으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내가 대신 노동 공급을 하는 것으로, 본 분석의 결과로부터 생각하면, 우리나라 부부 사이에는 부가노동가설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Becker(1981)가 지적한 동류혼 assortative mating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자신과 유사한 상대라면 서로 노동시간이 길어야 하는데 본 분석의 결과에서는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50% 내외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편과 여성의 노동시간이 보완 관계로 나타난 것이라면 유사한 상대와 결혼을 했음에도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만으로는 동류혼인지의 여부를 알기 힘들다.

다음으로 아내의 가사시간은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편의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시간이 감소하고, 남편의 기타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시간은 증가한다. 아내의 육아시간은 남편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며, 남편의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편의 시간 사용의 효과도 아내의 시간 사용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사와 육아가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시간 사용과 본인의 시간 사용 사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에서 나타났는데,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과 육아시간 사이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육아는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4-6〉 배우자 시간 사용과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종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배우자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0.683***<br>(0.03)  | 0.023<br>(0.022)     | -0.561***<br>(0.035) | -0.073***<br>(0.011) | -0.147***<br>(0.006) | -0.419***<br>(0.012) |
| 가사시간      | -1.068***<br>(0.033) | 0.704***<br>(0.024)  | 0.639***<br>(0.039)  | -0.263***<br>(0.015) | 0.151***<br>(0.009)  | -0.007<br>(0.017)    |
| 육아시간      | -1.450***<br>(0.02)  | -0.043**<br>(0.015)  | 0.858***<br>(0.024)  | -0.243***<br>(0.009) | 0.062***<br>(0.005)  | 0.025*<br>(0.01)     |
| 여가시간      | -0.470***<br>(0.049) | -0.358***<br>(0.036) | -0.870***<br>(0.057) | -0.037*<br>(0.015)   | -0.045***<br>(0.009) | -0.145***<br>(0.017) |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기타시간           | -1.336***<br>(0.04)     | 0.264***<br>(0.029)  | 0.343***<br>(0.05)   | 0.328***<br>(0.022)    | -0.537***<br>(0.013)  | 0.122***<br>(0.024)     |
| 연령             | 17.310***<br>(0.65)     | 3.152***<br>(0.474)  | 18.079***<br>(0.867) | 8.426***<br>(0.485)    | -0.326<br>(0.283)     | 7.988***<br>(0.534)     |
| 연령 제곱          | -0.214***<br>(0.008)    | -0.032***<br>(0.006) | -0.356***<br>(0.011) | -0.189***<br>(0.006)   | 0.072***<br>(0.003)   | -0.108***<br>(0.006)    |
| 교육연수           | -23.052***<br>(1.227)   | -1.676†<br>(0.895)   | 16.596***<br>(1.502) | -13.177***<br>(0.936)  | 7.742***<br>(0.546)   | 1.276<br>(1.031)        |
| 교육연수 제곱        | 0.984***<br>(0.031)     | -0.130***<br>(0.022) | -0.461***<br>(0.044) | 0.230***<br>(0.023)    | 0.216***<br>(0.013)   | 0.019<br>(0.025)        |
| 연령*교육연수        | -0.019<br>(0.022)       | 0.055***<br>(0.016)  | 0.065*<br>(0.031)    | 0.266***<br>(0.015)    | -0.331***<br>(0.009)  | 0.017<br>(0.017)        |
| 미취학 자녀수        | 3.229**<br>(1.07)       | -7.367***<br>(0.78)  | 4.443***<br>(1.204)  | 7.237***<br>(0.639)    | -3.262***<br>(0.373)  | 18.063***<br>(0.704)    |
| 부모 동거 여부       | 24.834***<br>(1.018)    | -5.771***<br>(0.743) | 3.993***<br>(1.192)  | -2.514**<br>(0.858)    | -0.149<br>(0.5)       | 5.808***<br>(0.945)     |
| 상수항            | 1247.870***<br>(48.866) | 57.098<br>(35.651)   | 100.234†<br>(59.217) | 399.729***<br>(23.597) | 244.318***<br>(13.75) | -169.927***<br>(25.987) |
| log-likelihood | -12273.891              |                      |                      |                        |                       |                         |
| R-squared      | 0.961                   | 0.533                | 0.407                | 0.727                  | 0.757                 | 0.951                   |
| left-censored  | 699                     |                      |                      |                        |                       |                         |
| uncensored     | 2,862                   |                      |                      |                        |                       |                         |
| Observations   | 3,561                   | 3,561                | 3,561                | 3,561                  | 3,561                 | 3,561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4. 교섭력과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임금은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도입되고, 임금을 추정하는 경우와 관찰된 실질임금을 도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추정한 임금으로 산출된 상대임금과 실제로 관찰된 임금으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본 분석에서의 상대임금은 (아내의 임금/남편의 임금)의 대수로 도출되었으며, 이것은 아내

의 교섭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추정치를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고, 남편의 경우 10%의 유의 수준에서 상대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측치로 계산된 교섭력의 결과를 보면, 아내의 교섭력이 증가하면 아내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나, 남편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편의 노동시간은 추정치일 경우 아내의 임금이 증가하면 본인의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실측치일 경우 아내의 임금이 증가하면 아내 자신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노동시간 결과는 조성호(2016)와 유사하나, 아내의 육아시간은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의 임금과 배우자의 임금 비율이 아닌 본인의 대수 임금(률)만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상대적 임금 비율로 보면 아내의 임금 증가는 아내 자신의 육아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7〉 교섭력 추정: 주중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교섭력 추정치 | 0.004  | -0.008 | 0.008   | -0.015† | -0.002 | -0.011 |
| 교섭력 실측치 | -0.077 | -0.076 | -0.385* | 0.038   | 0.061  | 0.012  |

주: 1) 본 추정 결과에는 본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시간 사용, 배우자의 시간 사용 변수가 통제되어 있으며, 상세한 추정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2)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5. 시간 부족감

시간 부족감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시간 사용과 시간 부족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려 한다. 먼저 본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른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편은 노동시간이 길수록(10% 유의수준), 기타시간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육아시간이 길수록(10% 유의수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가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8〉 본인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남편                  | 아내                   |
|-----------|---------------------|----------------------|
| 본인 시간 추정치 |                     |                      |
| 노동시간      | 0.007 †<br>(0.004)  | 0.001<br>(0.001)     |
| 가사시간      | 0.007<br>(0.005)    | 0.002<br>(0.002)     |
| 육아시간      | -0.004<br>(0.003)   | 0.002 †<br>(0.001)   |
| 여가시간      | -0.002<br>(0.007)   | -0.015***<br>(0.004) |
| 기타시간      | 0.019**<br>(0.007)  | 0.003<br>(0.004)     |
| 연령        | 0.023<br>(0.090)    | -0.155<br>(0.114)    |
| 연령 제곱     | -0.001<br>(0.001)   | 0.001<br>(0.001)     |
| 교육연수      | 0.319<br>(0.198)    | -0.290*<br>(0.139)   |
| 교육연수 제곱   | -0.008 †<br>(0.005) | -0.005<br>(0.004)    |
| 연령*교육연수   | 0.000<br>(0.003)    | 0.012***<br>(0.003)  |
| 미취학 자녀수   | 0.374*<br>(0.146)   | -0.168<br>(0.136)    |



|                | 남편                 | 아내                 |
|----------------|--------------------|--------------------|
| 부모 동거 여부       | 0.062<br>(0.127)   | -0.418*<br>(0.171) |
| 상수항 1          | 14.024†<br>(7.286) | -7.904<br>(5.168)  |
| 상수항 2          | 16.594*<br>(7.286) | -5.935<br>(5.168)  |
| 상수항 3          | 18.435*<br>(7.287) | -4.159<br>(5.167)  |
| log-likelihood | -3993.966          | -5091.528          |
| chi2           | 103.587            | 107.424            |
| Observations   | 3,595              | 4,198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배우자의 시간이 본인의 시간 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내의 시간은 남편의 시간 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반면, 아내는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시간 부족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것은 남편의 가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사시간이 증가해도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9〉 배우자의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남편                | 아내                 |
|------------|-------------------|--------------------|
| 배우자 시간 추정치 |                   |                    |
| 노동시간       | 0.001<br>(0.001)  | 0.004<br>(0.004)   |
| 가사시간       | -0.002<br>(0.002) | 0.011**<br>(0.004) |
| 육아시간       | 0.001<br>(0.001)  | -0.001<br>(0.002)  |
| 여가시간       | -0.001<br>(0.003) | 0.001<br>(0.006)   |
| 기타시간       | 0.003<br>(0.004)  | 0.007<br>(0.005)   |
| 연령         | 0.033<br>(0.092)  | 0.003<br>(0.077)   |

|                | 남편                | 아내                 |
|----------------|-------------------|--------------------|
| 연령 제곱          | -0.001<br>(0.001) | -0.001<br>(0.001)  |
| 교육연수           | -0.052<br>(0.166) | -0.333*<br>(0.145) |
| 교육연수 제곱        | 0.000<br>(0.004)  | 0.007†<br>(0.004)  |
| 연령*교육연수        | 0.002<br>(0.003)  | 0.006*<br>(0.003)  |
| 미취학 자녀수        | 0.089<br>(0.118)  | 0.267*<br>(0.126)  |
| 부모 동거 여부       | -0.098<br>(0.155) | 0.265*<br>(0.123)  |
| 상수항 1          | -2.732<br>(4.227) | 2.066<br>(5.744)   |
| 상수항 2          | -0.182<br>(4.226) | 4.031<br>(5.744)   |
| 상수항 3          | 1.662<br>(4.226)  | 5.854<br>(5.744)   |
| log-likelihood | -3957.894         | -4272.882          |
| chi2           | 96.292            | 73.373             |
| Observations   | 3,561             | 3,561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제3절 주말 시간 사용에 관한 분석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고용 노동자들은 주중이 근로일이 되었다. 그러나 자영업 등의 개인 사업자들은 주 5일 근무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며, 교대 근무일 경우에도 주말에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말 시간 사용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은 주중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먼저 아내의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예측치를 산출하고, 시간

사용에 대한 유도 방정식을 추정하여 예측치를 산출한 후 구조식에 도입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임금함수에서 추정된 임금으로 교섭력(상대임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간 사용 예측치를 가지고 시간 부족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말 분석은 아내의 유도방정식뿐만 아니라 도구변수의 유의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측치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도록 한다.<sup>29)</sup>

##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배우 부부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여성 임금의 내생성을 고려한 추정이 이루어졌고, 시간 사용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변수법에 의한 추정을 하였다.

먼저 아내의 노동 참가 및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 아내의 노동 참가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였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증가하였다. 즉, 미취학 자녀는 돌봄 등 때문에 여성의 노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함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속성인 연령, 교육연수가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고, 관리·전문직의 임금이 높은 반면, 자영업·가족종사자의 임금은 낮다

29) 참고로 추정결과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내 시간 사용의 경우, 노동시간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비선형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내의 노동시간은 자녀의 존재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학 자녀(0~5세)가 있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사시간의 경우도 자녀의 존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증가했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가사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시간은 자녀 변수의 효과가 노동시간과 반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증가하고,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감소하였다. 또한, 육아시간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의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 동거 여부는 가사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여가시간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여타 시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가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는 여가시간을 감소시키지만, 6~12세의 자녀가 있으면 증가하고, 그보다 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반면, 부모 동거 변수는 여타 시간 사용과 다르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함께 있으면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편하게 여가를 즐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타시간은 여타 시간과는 다르게 유의한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타시간에는 주로 생존시간이 포함되고, 자녀 이외에 의무적으로 돌봄에 사용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것이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기타시간의 감소 폭이 다른 자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 많아지면, 기타시간을 줄여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편의 시간 사용은 연령, 교육 등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의 요인이 시간 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은 0~2세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고, 가사시간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증가하였다. 그리고 육아시간의 경우는 아내와 유사하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증가하고,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은 3~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감소한 반면,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였다. 기타시간은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였으나, 아내의 경우와는 다르게 13~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서는 아내 본인의 가사·육아·여가·기타시간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타시간의 증감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기타시간의 감소 폭만큼 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아내 노동시간의 증가는 생존 및 의무시간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외의 시간도 유사한 패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내의 시간 사용 간에는 모두 상충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모든 시간 사용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서는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시간과 기타시간이 증가해도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육아시간이 가사시간에 양(+)<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육아를 하는 남편들이 가사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곧 육아와 가사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여가시간과 기타시간이 가사시간에 양(+)<sup>2)</sup>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들이 가사를 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시간과 본인 시간과의 관계에서는 아내의 노동시간이 남편의 노동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대하여 음(-)<sup>3)</sup>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중에서 노동시간 간의 관계는 한쪽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 즉 서로 보완적인 노동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부가노동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남편이 실직 등의 이유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내가 대신 노동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 결과로써 우리나라 부부 사이에는 부가노동가설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내의 가사시간은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편의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시간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시간이 감소하고, 남편의 기타시간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시간은 증가하였다. 그 외에 아내의 육아시간은 남편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며, 남편의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배우자의 시간 사용과 본인의 시간 사용 사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이 서로 양(+)<sup>4)</sup>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육아는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의 상대임금(임금 비율)을 교섭력으로 정의하여

여러 분석을 수행했고, 본 연구에서도 상대임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는 임금의 실측치와 추정치 둘 중의 하나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정치과 실측치를 모두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상대임금이 증가하면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아내 자신의 육아시간이 감소하였다. 즉, 아내의 교섭력이 증가하면 아내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내의 시간당 기회비용이 남편보다 높기 때문에, 비교 우위 관점에서 아내가 노동에 특화하여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 부족감은 본인 시간의 경우, 남편은 노동시간, 기타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아내는 육아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가시간이 길면 시간 부족감이 완화되고 있었다. 그 외에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의 시간의 경우, 아내의 시간은 남편의 시간 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아내는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시간 부족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아마도 이는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시간이 증가해도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5 장

##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제1절 저출산 관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제2절 고용노동 관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제3절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국제 동향



# 5

##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

### 제1절 저출산 관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sup>30)</sup>

##### 가. 추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시도되었지만 제도와 실제 노동 현장 사이의 거리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실천적인 단계에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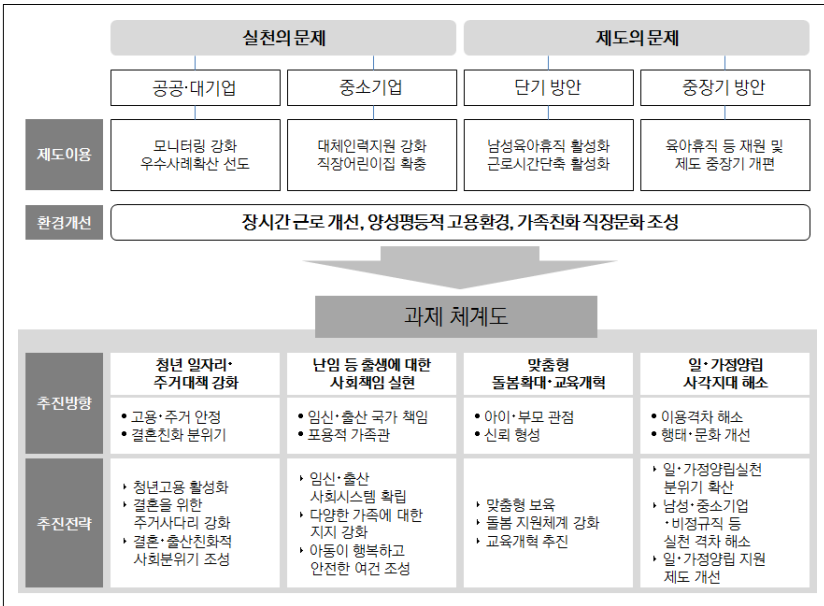
기업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공 및 대기업은 제도를 실천하는 단계, 중소기업은 제도 실천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육아휴직의 이용 기간과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 수준, 사각지대와 재원 등 다방면에서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 여건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장려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현황을 모니터링, 관리 감독하여 눈치 보지 않고

30) 본 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 내용 중 'I. 저출산 대책-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내용(pp. 93-104)을 요약 정리하였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55.

### 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그동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갖추어져 있다. 제도의 확립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일부 노동 현장 혹은 비정규직 등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경우 아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본적인 일·

가정 양립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를 모르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특성상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 계획으로는 제도 이용권의 보장,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진 계획

|                             |  |
|-----------------------------|--|
|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육아휴직제 확산(16)</li> <li>- 육아휴직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사용 자동 신청</li> <l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 개시일에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li> </ul>   |
|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데이터로 출산 근로자 출산휴가 모니터링 실시(16~)</li> <li>- 자동경보시스템 구축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출산·육아휴직 기간 중 부당해고 사업장을 수시 적발 및 처벌</li> <li>- 모성보호 근로감독체계를 사업장별에서 노동자 개인별로 개편(16~)</li> <li>- 노사정 협력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16~)</li> <li>- 육아휴직 사용률 및 고용 유지율이 저조한 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지역별 일·가정 양립 협의체 구성</li> </ul>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부문 가족 친화 인증 의무화(17) 및 참여 기업·기관 확대</li> <li>- 「일가양육 캠페인」을 대폭 확산</li> <li>-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16)</li> </ul>  |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정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 개선 추진(15)</li> <li>-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부터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선도(16~)</li> <li>-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환경 조성 지원</li> </ul>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94-96의 내용을 요약 정리.

#### 다.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기혼 여성 노동자의 95.6%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맞벌이가 보

편화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저조하여 여성이 일과 가정 양쪽에서 모두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을 촉진하고 남성의 제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실천 여건을 확충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표 5-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추진 계획

|                |  |
|----------------|--|
|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육아휴직이 정착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17)</li> <li>- 대체 인력 지원: 지원금 중심에서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중심으로 대체 인력 지원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복지+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해 새일센터-대체인력뱅크를 아우르는 전국 단위 대체 인력 종합 지원체계 구축</li> </ul> </li> <li>- 직장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모델 확산 및 설치 지원 인프라(직장보육지원센터) 확대</li> </ul> |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li> <li>-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뿐 아니라 재고용도 패키지로 지원</li> </ul>  |
|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li> <li>- 공공 및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선도하도록 조성</li> </ul>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98-100의 내용을 요약 정리.

## 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뿐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임시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휴가, 휴직 시에 임금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에 현 제도에 대한 고용 현장의 불만,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표 5-3〉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                                       |  |
|---------------------------------------|--|
| 육아휴직 후<br>직장 복귀<br>지원프로그램<br>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표준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 재직자 직업훈련: 휴직자의 직장 적응 훈련 비용 지원</li> <li>- 제도적 여건 조성: 육아휴직 기간 중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단시간 근무 등의 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li> </ul>        |
| 육아기<br>근로시간 단축<br>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li> <li>- 기업별 컨설팅,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시간제 대체 인력 확보</li> <li>-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li> </ul> |
| 전환형<br>시간선택제<br>일자리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li> <li>· 종합 지원체계 구축, 육아휴직 종료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패키지 지원</li> </ul>   |
| 육아휴직<br>보편화를 위한<br>중장기 제도<br>개편 방안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낮은 임금 대체율을 보완</li> <li>· 적정 임금 대체율과 휴직 기간 재설정</li> <li>· 중소기업, 비정규직 추가 지원</li> <li>·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재원 검토</li> </ul>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98-100의 내용을 요약 정리.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

2006~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 현재,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이끌어 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차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의 당초 취지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종합 전략에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 가족 친화, 양성 평등 등 다양한 개념과 함께 주요 정책의 체계와 인프라 확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근본 취지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존에 합계출산율 회복 및 저출산 극복 중심이었던 기본계획의 비전을 삶의 질 제고로 재정립한

다. 또한 인구의 양적 성장과 유지를 목표로 하던 것을 인구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에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을 생애주기적 인구사회정책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정부의 가부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출생의 사회적 보수와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회적 투자 관점의 접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김종훈, 2018. 10. 31.).

특히 일·생활 균형 영역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수혜의 양극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등의 임금 대체율이 낮아 정책 호응도가 낮은 점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김종훈, 2018. 10. 31.). 또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대책이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여 동거가족, 미혼 부모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또한 한계로 남아 있다(변수정, 황남희, 2018).

위에서 언급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3차 재구조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의 실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마련과 제도 개편을 동시에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육아휴직 기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여전히 저조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육아시간을 장려한다. 노동시장, 근로기반과 관련해서는 대체 인력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김종훈, 2018. 10. 31.).



## 제2절 고용노동 관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 1. 고용노동 관련 일·생활 균형 정책<sup>31)</sup>

#### 가. 일하는 문화 개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제시하고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기업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형 기업문화는 야근과 회의, 대면 보고가 많은 것에 비해 야근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생산적인 업무시간이 줄어들고 형식적인 회의와 보고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시한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의 내용은 크게 1) 장시간 근무 관행 바꾸기, 2) 일하는 방식 바꾸기, 3) 일하는 문화 바꾸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5-4>와 같다.

<표 5-4> 고용노동부의 근무 혁신 10대 제안

|                 |  |
|-----------------|--|
| 장시간 근무 관행 바꾸기   |  |
| 1 정시 퇴근         |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br>· 가족 · 문화와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
| 2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 · 근무시간 외 전화 · 문자 · (단체)카톡 자제<br>· 퇴근 직전 업무 지시 자제           |
| 3 업무 집중도 향상     | ·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사적인 용무 자제<br>·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
| 일하는 방식 바꾸기      |  |
| 4 똑똑한 회의        | · 꼭 필요한 회의만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진행<br>· 회의 일정 · 안건 사전 공유            |
| 5 명확한 업무 지시     | · 무엇을 왜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br>· 보고서 방향 사전 협의로 명확화 |

31) 본 절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   |
|---------------|---|
| 6 유연한 근무      | ·업무의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br>·다양한 유연근무의 적극 도입 및 눈치 보지 않는 활용 유도 |
| 7 똑똑한 보고      | ·불필요한 대면 보고 안하기<br>·메모 · 구두 · 영상보고 활용                       |
| 일하는 문화 바꾸기    |   |
| 8 건전한 회식 문화   | ·꼭 필요한 회식만, 일정은 사전 공유<br>·문화 회식 활성화                         |
| 9 연가 사용 활성화   | ·연가 사유 묻지 않기<br>·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
| 10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부서장부터 장시간 근무, 일하는 방식, 문화 바꾸기 실천<br>·직원과 근무 혁신 가치 공유하기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위의 10대 제안을 골자로 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기존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하는 ‘일·가정양득 캠페인’이었으나 가정뿐 아니라 ‘일과 생활’ 전반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 캠페인’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캠페인의 내용 또한 1)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2)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3) 불필요한 회식과 야근 줄이기, 4) 육아 부담 나누기, 5) 알찬 휴가와 자기계발 지원 5가지 분야에서 1) 오래 일하지 않기, 2) 똑똑하게 일하기, 3) 제대로 쉬기 3가지 분야로 수정되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기업이 캠페인의 기본 과제(3대 핵심 분야의 내용을 관리자/부서장부터 실천하기)와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실천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 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노동자가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육아나 개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어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거나 재택근무제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 집중도와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복지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무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기업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심을 높일 수 있고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여가시간을 자기계발에 사용하여 다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업무 생산성 증대, 숙련된 노동자의 이직 방지를 통한 인적자원 확보, 직원의 조직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 증대 등의 이점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5〉 유연근무제의 종류

|        |   |
|--------|---|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근무와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
| 재량근무제  | 업무 특성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기업의 유연근무제 시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 용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통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시작하거나 확대할 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원격·재택 근무의 경우 기업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 시스템, 재택 업무가 가능한 기술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설치 비용을 지원금 혹은 용자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표 5-6>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및 내용

|                          |       |  |
|--------------------------|-------|--|
| 유연근무<br>활용 지원            | 개요    |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고용 문화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  |
|                          | 지원 대상 |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                          | 지원 내용 | ·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520만 원, 주 1~2회 260만 원 /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10만 원, 주 1~2회 5만 원   |
| 원격·재택<br>근무 인프라<br>구축 지원 | 개요    | ·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  |
|                          | 지원 대상 | · 재택·원격 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                          | 지원 내용 | ·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비용은 직접 지원금을 지급,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용자로 지원  |
| 일터 혁신<br>컨설팅             | 개요    | ·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부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을 진단·분석하는 제도<br>· 주요 컨설팅 분야는 장시간 근로 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
|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                          | 지원 내용 | · 교대 근무 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br>· 현행 근로시간 및 근무 형태 분석<br>·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 유형 제시<br>·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 설계<br>·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신규 고용 창출과의 균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수업, 빙과류나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의 계절적 업종, 일정 시간대에 업무량이 많은 음식서비스나 접객업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노동자나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날 또는 다른 주에 휴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특

정 기간 동안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 노동시간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된다(고용노동부, 2016).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500명 중 50.4%가 찬성하고 30.9%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 집중 근로에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나 임금 총액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tbs 현안조사, 2018. 11. 21.).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 혹은 시기에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편법이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6)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기존에 비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 보전 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발간한 자료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저하와 관련하여 임금 보전 방안을 사용자가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 보전의 방안으로는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뿐 아니라 여타 복지 혜택의 확충 등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임금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

## 라. 시간선택제

노동시간을 전일제에 비해 짧게 하면서 근로 조건과 처우를 차별 없이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만족도가 높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 노동자의 재취업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유용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업무 환경에 맞게 필요한 시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 확보와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숙련된 직원이 추가로 필요한 직군에서는 시간선택제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시간선택제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전환형과 신규 채용형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7〉 시간선택제의 의미와 종류

|         |   |
|---------|---|
| 시간선택제   |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 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  |
| - 전환형   |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 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 기간이 만료 되거나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 - 신규채용형 |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유연근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인건비와 같은 급여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전환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일부의 경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표 5-8〉과 같다.

〈표 5-8〉 시간선택제 지원 유형 및 내용

|               |  |   |
|---------------|--|---|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개요   | ·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 보육, 간병, 학업, 퇴직 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1년간 지원   |
|               | 지원 대상  | ·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br>※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지만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
|               | 지원 내용  | · 임금 감소 보전금: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전금 지급<br>· 간접노무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대기업 제외)<br>· 대체 인력 인건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개요   | ·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 지원 대상         | · 근무체계 개편,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 |   |
| 지원 내용         | · 근로자 인건비의 80% 한도로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 원 지원                     |   |
| 일터혁신 컨설팅      | 개요   | ·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부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을 진단·분석하는 제도<br>· 주요 컨설팅 분야는 장시간 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
|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br>·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사업주(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 지원 내용  | · 컨설팅 내용: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 재설계 및 취업 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 문화 개선 및 정착 방안 수립, 우수 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 제도 안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및 신규 도입·운영 방안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 마.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1) 근로자 지원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은 대표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으며 출

산한 여성이 아니더라도 유산·사산의 경우나 난임 치료 중인 경우, 출산한 여성의 남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또한 휴직 후에도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지원 제도 등이 있다. 임신출산육아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9>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 휴가 휴직 및 급여 지원    |   |
|------------------|---|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및 휴가급여                       |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와 동일한 지원  |
| 난임 치료 휴가         | ·난임 치료(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3일 이상의 휴가와 급여를 제공                                       |
| 육아휴직 및 급여        |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40~80%를 받도록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육아휴직 사용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급여를 받도록 지원                                     |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 100%로 지원 |
| 가족 돌봄 휴직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
| 근로시간 단축 등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                    |
| 태아 검진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 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  |
| 시간외 근로 금지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                                  |
|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                        |
| 수유시간 허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



|                |   |
|----------------|---|
| <b>근무업종 배려</b> |   |
| 유해·위험업종 근무 금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유해 및 위험 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장        |
| 근로 전환          | ·임신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 <b>돌봄 지원</b>   |   |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          |
| 만0~5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                           |
|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 양육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                   |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시간대의 보육료를 지원                            |
| 초등돌봄교실         |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 2) 사업주 지원

앞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노동자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에 사업주의 참여를 돕기 위해 인건비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금,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고용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0>과 같다.

<표 5-10> 임신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사업주 지원 |   |
|--------------------|---|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
|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 ·출산육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을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                      |   |
|----------------------|---|
| ·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   |
| 대체 인력의 정의            |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  |
| 서비스 제공 기관            | · 민간대체인력뱅크(수도권 담당 (주)커리어넷, 지방권 담당 (주)스카우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고용센터   |
| 지원금 내용               | · 출산육아기 및 시간선택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 1인당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최대 1년),<br>· 산재근로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금(20인 미만 사업장): 대체 인력 인건비 50% 지원(월 6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
|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   |
|                      | ·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사항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설치비(지원금, 용자), 운영비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하여 요약 정리

## 바. 아빠육아 지원(아빠넷)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문화적 개선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대표적인 일·가정 지원 제도인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로, 자녀가 있는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성 노동자에 비해 사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에 관한 국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고용노동 관점 일·생활 균형 정책의 쟁점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정부 부처들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은 삶의 균형 관점보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어 온 한계가 있다(이진숙, 이슬기, 2015). 또한 정책 효과를 양적인 수치로 파악하려 하다 보니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책 대상자들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이진숙, 이슬기, 2015).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정책은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법적 강제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할 경우 발생하는 경력 단절은 개인(가구)의 소득 하락이라는 미시적 문제와 사회의 인력 손실이라는 거시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등 일·생활 균형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정책적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와 조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고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이진숙, 이슬기, 2015).

### 제3절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국제 동향

#### 1. 육아휴직 남성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 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에 따라 부모 공용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Blum & Koslowski & Moss, 2017). 부모 공용 육아휴직은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여성 육아휴직은 여성만, 남성 육아휴직은 남성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 공용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을 말하며, 정해진 기간을 여성이나 남성 한 명이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원하는 비율로 일부분씩 소진할 수도 있다(Thevenon & Adema & Clarke, 2016).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3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부여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비율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Thevenon et al., 2016).

하지만 부모 공용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제도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한편 남성만 이용 가능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거나 부모 공동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은 남성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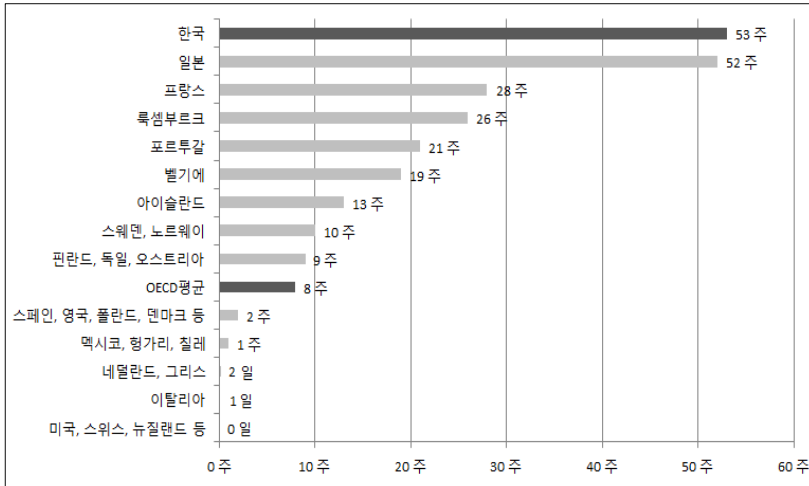
는 남성할당제(Daddy Quota)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가 증가하였다(Addati & Cassirer & Gilchrist, 2014).

부모 공용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의 불이익으로 인해 실제로 남성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성들도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짧은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외에는 육아휴직에 참여하기 어렵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반면 남성 육아휴직이 따로 있거나 부모 공용 육아휴직 중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남성이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경우에는 제도 참여율이 높아진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한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더욱 용이하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모 공용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남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없으면 남성도 공유할 육아휴직이 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SPL(Shared Parental Leave) 제도에 따르면 5명 중 2명의 남성이 배우자가 무직이기 때문에 공유할 육아휴직이 없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남성 휴직이란 남성 육아휴직, 공용 육아휴직 중 남성에게 할당된 기간 등 남성만이 이용 가능하고 여성의 휴직과 교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휴직 기간은 출산휴가(paid p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을 합친 기간이다.

[그림 5-2]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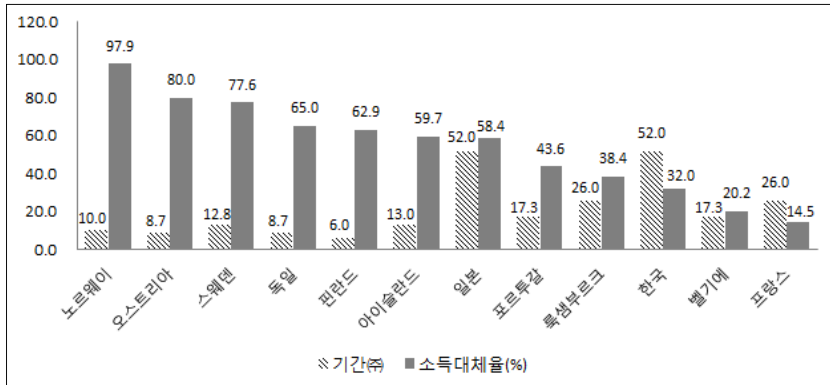
자료: OECD Policy Brief “Parental leave: Where are the fathers?”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3주로, 프랑스나 여러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부를 남성에게 할당하여 공유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남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OECD(2016)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Daddy Quota 도입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일수를 두 배로 증가시켰고 한국에서도 2007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남성 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길지만 그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다. 육아휴직 기간보다는 휴직하는 동안 지원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유급휴직 기간이 길어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남성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



자료: 허민숙. (2018).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22호.

최근의 경향은 남성 할당, 여성 할당, 공용 부분을 합친 형태의 부모 공용 육아휴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이슬란드가 이런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Moss, 2015)

## 나.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도 여성이 사용하는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남성이 사용하는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남성 육아휴직과 다른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의 출산 시기 전후로 정해져 있으며 육아휴직에 비해 휴가 날

짜가 짧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부모나 가족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은 반면 출산휴가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데, 유럽의 경우 28개의 유럽 국가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은 적게는 이탈리아가 1일, 많게는 슬로베니아가 64일로 평균은 12.5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일주일까지는 대부분 100%이며 그 이상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비해 기간이 짧은 대신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다(Thevenon et al., 2016). 육아휴직 남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도 할당제를 도입했을 때 남성의 참여가 매우 높아진다. 노르웨이의 경우 1993년 3%였던 남성의 출산휴가 참여율이 2000년에는 70%로 향상되었다(Van, 2016). 포르투갈의 경우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10일이 의무인데 강제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 참여율이 100%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도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참여 시 현금 급여로 보너스를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였다(Albrecht & Fichtl & Redler, 2017; 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 2. 국외 남성 육아휴직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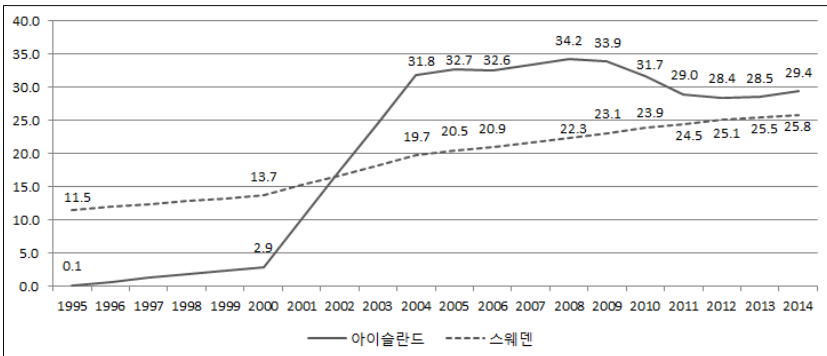
허민숙(2018)에 따르면 공적으로 운영되는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며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 등은 남성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본 절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은 순서로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포르투갈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1년에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한 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졌다. 부모 공용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할당하였는데 그 결과 2001년에 3%였던 남성 육아휴직률이 2008년에 34%까지 증가하여 기존에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높은 국가였던 스웨덴을 능가하게 되었다(Thevenon et al., 2016).

[그림 5-4]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



자료: Thevenon et al. (2016). Background brief on fathers' leave and its use, p. 15. OECD.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와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아이슬란드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OECD의 많은 나라들이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무급인 경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한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가 비

등한 국가들은 대부분 휴직기간 동안 소득대체율 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저조한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은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50% 이하이다(Thevenon et al., 2016).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7~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 급여 상한선이 80%에서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2008년에 평균 80%였던 소득대체율이 2012년에 59%로 감소했다.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기는 하지만 2008년에 34%였던 것에 비하면 2012년에는 28%로 감소하였다(Thevenon et al., 2016).

## 나. 스웨덴

스웨덴은 1974년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이는 유럽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목표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성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 참여와 양성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1974년에 제도가 개정될 당시 육아휴직 기간은 180일이었고 1990년에는 450일, 2002년에는 480일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480일의 유급 부부 공용 육아휴직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480일 중 390일은 상한선 연 44만 4000크로나(한화 약 5800만 원) 안에서 기존 소득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하루 180크로나로 정액 지급이다. 휴직급여는 상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도 있어서 무직, 학생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제공된다(송지원, 2018).

특히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시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성격을 가진다. 전일제로 휴직을 할 수도 있고 단축 근무 형식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도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는 노동시간을 최대 25%까지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Van, 2016).

육아휴직 제도가 부부 공용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크게 증가하지 않자 1995년에 450일의 휴직 기간 중 부모 각각에게 1개월씩 휴직 기간을 할당하는 쿼터제가 도입되었고 2002년에 전체 휴직 기간이 480일로 늘어나면서 할당 기간은 부모 각각 2개월로 확대되었다(송지원, 2015).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양성 평등 보너스 제도도 도입되었다. 양성 평등 보너스 제도란, 부모 각각에게 할당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 휴직 기간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용할 경우 세금 공제 등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송지원, 2015).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더 높다.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스웨덴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도 더욱 평등한 참여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의 남성과 여성 할당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사용률과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송지원, 2015).

#### 다. 포르투갈

3분의 2 정도의 OECD 국가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기간이 길고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다. 포르투갈에서 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한 달

이내에 근무일 기준 25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지며 25일 중 15일은 의무휴가이고 휴가급여는 상한선 없이 기존 소득의 100%이다(Blum et al., 2017). OECD 국가의 배우자 출산휴가 절반 정도는 그 기간이 1~2주 정도이며 짧게는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길고 급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Thevenon et al., 2016).

법적으로 15일은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한 부모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해 교육한다(Blum et al., 2017).

또한 남성이 초기 육아휴직(Initial Parental leave)을 사용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포르투갈의 경우도 아이슬란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할당한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여 육아휴직 이용자의 40% 이상이 남성이다(Thevenon et al., 2016).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 6

##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 변화와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년 데이터로 유배우 부부의 속성별 시간 사용 경향을 분석하고, 유배우 부부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시계열적 분석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매우 크게 감소한 것이고, 감소한 노동시간이 여가시간으로 전이된 것이었으나, 남성에게서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2014년의 데이터로는 개인 속성을 인구학적·경제적 속성으로 나누고, 거기에 더하여 부부의 형태(외벌이, 맞벌이)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주중과 주말의 시간 배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나누었는데, 먼저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경우와 주중, 주말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결과에서 남성은 노동, 여가, 가사, 육아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여성은 여가, 노동, 가사, 육아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가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7.2배, 육아시간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은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가사, 육아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나타

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외벌이일 경우에는 여성이 가사 및 육아를 하는 시간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이 외벌이인 케이스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의 노동시간이 아내에 비하여 1.3배 길고, 가사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7.4배, 육아시간도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수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감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실제로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노동시간이 시간 부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유배우 부부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아내의 노동 참가 및 임금함수를 추정된 결과, 아내의 노동 참가는 미취학 자녀라는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을 돌봐야 하는 등의 시간적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내의 시간 사용 분석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비선형성 경향을 보이는 점이며, 이는 M자 커브를 그리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내의 노동시간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감소하고, 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존재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



간의 감소 폭이 컸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사시간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했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감소하였는데, 이로써 자녀의 존재와 부모의 동거 여부가 가사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아시간은 자녀 변수 효과의 방향성이 노동시간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증가하고,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감소하였다.

또한, 육아시간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의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부모 동거 여부는 가사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었다. 여가시간의 경우는 다른 시간 사용에 비하여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0~2세) 자녀의 존재는 여가시간을 감소시키지만, 학령기(6~12세)의 자녀가 있으면 반대로 증가하는 것과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모 동거 변수는 여타 시간 사용과 다르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함께 있으면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편하게 여가를 즐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다. 기타시간은 개인 속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의 기타시간의 정의가 주로 생존시간이 포함되고, 자녀 이외에 의무적으로 돌봄에 사용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것이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기타시간의 감소 폭이 다른 자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 많아지면, 기타시간을 줄여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편의 시간 사용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자녀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육아시간은 아내와 유사하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증가하고,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은 유아(3~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감소했으나, 학령기(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였다. 기타시간은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였으나, 아내의 경우와는 다르게 13~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서는 아내의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 본인의 가사·육아·여가·기타시간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기타시간의 증감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기타시간이 감소한 만큼 노동시간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아내의 시간 사용 간에는 모두 상충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모든 시간 사용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에서도 아내와 동일하게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과 가사·육아시간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육아시간이 증가하면 가사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곧 육아를 하는 남편들이 가사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와 가사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여가시간과 기타시간과 가사시간이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들이 가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시간과 본인 시간과의 관계에서는 한쪽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다시 말하면 서로 보완적인 노동 공급 관계에 있었다. 이를 부가노동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남편이 실직 등의 이유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내가 대신 노동 공급을 하

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아내의 가사시간은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배우자의 시간 사용과 본인의 시간 사용 사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과 육아 시간이 서로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육아는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상대임금(임금 비율)을 교섭력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정치과 실측치를 모두 도입하여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상대임금이 증가하면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아내 자신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교섭력이 증가하면 아내의 육아시간이 감소하고, 아내의 임금 증가는 곧 아내의 시간당 기회비용이 남편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아내가 노동에 특화하여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부족감의 경우, 남편은 노동시간, 기타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아내는 육아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여가시간이 길면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내는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는데도 시간 부족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시간이 증가해도 그것이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과 가사·육아시간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와 육아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 배분 현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이 절대적 수치로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의 장시간 노동 완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곧 부부의 일·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육아·가사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타시간도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기타시간은 대부분 생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가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수면 등의 시간도 증가하게 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성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여성은 직장에서 일을 한 뒤에도 퇴근 후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에 치이는, 소위 독박 육아·가사로 인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그 감소한 시간이 육아·가사 시간으로 이전된다면 그 만큼 아내의 육아·가사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그럴 경우 아내도 일·생활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생활 균형의 포인트는 남편의 장시간 노동의 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노동 완화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

문에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였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의 7.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가진 부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의 국외 사례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점이고, 남성 육아휴직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 완화와 관련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중장기적 방안

### 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착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었던 68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즉, 이전에는 휴일이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 외에 16시간의 근무

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되어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16시간이 적어져 52시간으로 규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8시간 이내에서는 50%, 이후는 100%가 가산된다. 그리고 특례업종도 이전엔 26개 업종의 453만 명이 대상이었던 것이 개정되어 5개 업종의 102만 명만 적용이 되게 된다.

〈표 6-1〉 노동시간 단축, 달라진 근로기준법

|            | 현행  | 개정 근로기준법   |
|------------|---|--|
| 주당 최대 노동시간 | * 68시간<br>-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 * 52시간<br>-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 휴일근로 수당    | 통상임금 50% 가산   |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 50% 가산<br>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 100% 가산            |
| 노동시간 특례업종  | 26개 업종<br>(대상 노동자 453만명)                            |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대상 노동자 102만명) |

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

자료: 한겨레, (2018. 6. 12.). '잠시 커피 한잔' 근무지만, '끝나고 한잔' 회식은 아니에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8685.html>에서 2018. 10. 2.에 인용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은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2018년 7월부터는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50~299인은 2020년 1월 1일,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특례 제외 업종은 그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며, 2021년 7월이 되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04년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와 유사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별 근로자에게 허용된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산출물 및 생산량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1] 시간 단축 시행 시기

| 2018. 3. 20.<br>(공포)     | 2018. 7.        | 2019. 7. | 2020. 1. | 2021. 1. | 2021. 7. | 2022. 1. |
|--------------------------|-----------------|----------|----------|----------|----------|----------|
| 300인 이상 사업장              | 7월 1일           |          |          |          |          |          |
|                          | 7월 1일(특례 제외 업종) |          |          |          |          |          |
| 50~299인<br>(특례 제외 업종 포함) |                 |          |          | 1월 1일    |          |          |
| 5~49인<br>(특례 제외 업종 포함)   |                 |          |          |          | 7월 1일    |          |

주: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68시간→52시간

자료: 한겨레, (2018. 6. 12.). '잠시 커피 한잔' 근무지만, '끝나고 한잔' 회식은 아니에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8685.html>에서 2018. 10. 2.에 인출

##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다양화 및 기업 컨설팅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예를 들어 3개월을 단위 기간이라고 했을 때, 1개월 반을 70시간, 나머지 1개월 반을 34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산업에 따라 단위 기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날씨 및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3개월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2018. 11. 20.).

배규식 외(2011)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인력 수준을 최소화시키려는 기업의 행동 패턴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감 시기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 및 기업별 수요 증감 시기를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기간 단위를 6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다(동아일보, 2018. 11. 6.).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연장근로가 감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추가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11. 14.) 오히려 집약적인 노동시간의 증가, 임금 총액의 감소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노동시간의 증가와 관련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 단위로 확대할 경우,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주가 13주(3개월)가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기준과도 상충하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12주 평균 60시간 근무 혹은 4주 평균 64시간 근무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로 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과로사 기준에 달하는 장시간의 노동이 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연속 휴게시간 규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우려가 있다(조선일보, 2018. 11. 20.;한겨레, 2018. 11. 20.). 이와 관련해 노동자 측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노동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며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8. 11. 20.).

탄력근로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소도 노동자 측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 이유는 탄력근로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일해도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자 측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 손실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한겨레, 2018. 11. 20.).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시간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8. 11. 20.).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노사의 주장을 잘 조정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단기적 방안

단기적 방안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남성에게도 배우자의 출산과 함께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르투갈의 경우는 남성의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25일 부여하고 그중 15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남성의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아이슬란드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면서 육아휴직의 사용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32%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허민숙, 2018). 앞서 언급했던 포르투갈의 휴가 급여는 상한이 없이 소득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40%이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지만, 상한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면서 의무 휴직일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남성의 의무 출산전후휴가 중에는 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내가 대부분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육아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기회가 생겨도 육아를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육아하는 법을 아내가 남편에게 일일이 가르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육아교육을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이수. (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4(1), 43-87.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8. 11. 14.).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2016).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life.kr에서 2018. 9. 23. 인출.
- 고현미, 박재춘. (2017). 비서직 여성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요구와 일-가정 갈등 및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모바일 업무활용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4(3), 21-42.
- 김선미, 구혜령, 이승미. (2018). 외국계 it 기업 남녀 신입사원의 생애 전환기일-생활 균형 기획.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75-98.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영주, 안선영, 김현아, 박효진. (2014).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재단.
- 김종관, 이윤경. (2009). 업무구조, 조직문화, wlb 제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6, 57-77.
- 김종훈. (2018. 10.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토론회(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료.
- 김준기, 양지숙. (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251-280.
- 김희경, 조규진. (2017). 공사조직 간 일가정 양립수준 및 영향 요인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 26(2), 217-246.
- 김희재, 남기성. (2007). 동시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9(1), 343-357.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 동아일보. (2018. 11. 6.). 탄력근로 확대 합의했지만... “연내 입법” “추가 논의”

- 해석 달라. <http://news.donga.com/3/all/20181106/92743263/1>에서 2018. 11. 20.에 인출
- 박상철, 고준. (2014). 조직 내 스마트 기기 활용이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가? **경영학연구**, 43(5), 1707-1733.
- 박은정, 이성림. (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 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박재춘. (2017).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후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중매개역할. **노동정책연구**, 17(4), 55-82.
- 배규식, 윤자영, 김기민, 조인경, 윤정향, 권현지, . . . 문정혜. (2013).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riss.kr/link?id=M13548816> 인출.
- 배규식, 조성재, 홍민기, 김기민, 전인, 이영호, . . . 이문범. (2011).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i)**. 한국노동연구원
- 변수정, 황남희. (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 41-6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료집.
- 성지미. (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4), 1-29.
- 송지원. (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3(6), 78-85.
- 송지원. (2018).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16(1), 65-72.
- 신경민,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박정, 우원식, . . . 표창원. [의안번호20004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J6T0G6P2B2P1T5T4A0U5B1Z2I2M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J6T0G6P2B2P1T5T4A0U5B1Z2I2M4) 인출.
- 신경아. (2009). 일-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176-212.

- 신경아. (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 오성탁, 김종욱, 박상철. (2015). 테크노스트레스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2(2), 71-93.
- 윤자영. (2010). 모(母)의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3(2), 27-52.
- 이세영. (2013).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의 활용과 조직문화 유형 인식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이슬기. (2015). 일가족양립정책 이용이 일가족양립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4(2), 103-138.
- 장연주, 이기영, 최현자. (2012).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6(4), 195-21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8).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요구.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8(4).
- 조미라. (2017).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18. 11. 20.). 산업계 “탄력근로 6개월~1년 돼야 실효성” 노동계 “근로수당 줄고 52시간 취지 퇴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02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02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에서 2018. 11. 20.에 인출
- 조성호. (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ental time for preschool children in korea. **사회보장연구**, 30(2), 367-400.
- 주익현. (2015). 맞벌이 여성의 소득기여도가 가사 시간량에 미치는 효과: 2004년, 2009년, 2014년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6(2), 49-68.

통계청.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한겨레. (2018. 11. 20.). 주52시간제 늦춘 당정, 탄력근로 확대 서둘러…노-정 충돌 고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083.html#csidx7d3a7dad272227c86a6e74c071c0>에서 2018. 11. 20.에 인출

허민숙. (2018).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tbs. (2018).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 결과(2018. 11. 21.)

Addabbo, T., & Favaro, D. (2011). Gender wage differentials by education in italy. *Applied Economics*, 43(29), 4589-4605.

Addati, L., Cassirer, N., & Gilchrist, K. (2014). *Maternity and paternity at work : Law and practice across the worl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etrieved from

[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SITE\\_ID\]/detail.action?docID=1717574](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SITE_ID]/detail.action?docID=1717574)

Aguiar, M., & Hurst, E. (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3), 969-1006.

Albrecht, C., Fichtl, A., & Redler, P. (2017). Fathers in charge? parental leave policies for fathers in europe. *Ifo DICE Report*, 15(1), 49-51.

Baxter, J., & Chesters, J. (2011). Perceptions of work-family balance: How effective are family-friendly policies? *Austral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14(2), 139.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493-517.

Becker, G. S. (1994). Human capital revisited.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ition)* (pp. 15-2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dtmann, J. (2014). The intra household division of labor: An empirical analysis of spousal influences on individual time allocation. *Labour*, 28(1), 1-39.
- Bhola, S. (2016). Relationship between work life balance, quality of work life and quality of life of women working in service industry. *PMR:Pravara Management Review*, 15(1), 30-45.
- Bianchi, S. M., Robinson, J. P., &Milke, M. A. (2006). *The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 Blau, P. (1964). *Power and exchange in social life*. NY:New York: J Wiley & Sons.
- Bloemen, H. G., Pasqua, S., & Stancanelli, E. G.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time allocation of italian couples: Are they responsive?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8(3), 345-369.
- Bloemen, H. G., & Stancanelli, E. G. (2008). How do spouses allocate time: The effects of wages and income. *THEMA (Théorie Economique, Modélisation Et Applications)*, Université De Cergy-Pontoise, 40, 1-48.
- Blum Sonja, Koslowski Alison, & Moss Peter. (2017). *13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7*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Retrieved from [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 *Women in the labor force: A databook; 2015 ASI 6744-39; BLS rpt. 1052*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statistical.proquest.com/statisticalinsight/result/pqpresultpage.previewtitle?docType=PQSI&titleUri=/content/2015/6744-39.xml>
- Chiappori, P. (1997). Introducing household production in collective

- models of labor supp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1), 191-209.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Colombo, L., & Ghislieri, C. (2008). The work-to-family conflict: Theories and measures. *TPM: 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15(1), 35-55.
- Day, J. C., & Newburger, E. C. (2002). *The big payoff: Educational attainment and synthetic estimates of work-life earnings. special studies.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 Datta Gupta, N., & Stratton, L. S. (2008). *Institutions, Social Norms, and Bargaining Power: An Analysis of Individual Leisure Time in Couple Households*.
- Delecta, P. (2011). Work life bal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Research*, 3(4), 186-189.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analysis*.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Eagly, A. H. (2013).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Psychology Press.
- Enke, S. (1968). On the economics of leisure.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 437-440.
- Fagan, C., Lyonette, C., Smith, M., & Saldaña-Tejeda, A. (2012). *The influence of working time arrangements on work-life integration or 'balance':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Geneva: ILO.
- Fagan, C., & Vermeylen, G.1 working time trends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 since the onset of the great recession. Paper



- presented at the *Work-Life Balance in Times of Recession, Austerity and Beyond: Meeting the Needs of Employees, Organizations and Social Justice*, 2016, 38 1.
- Feeney, M. K., & Stritch, J. M. (2017). Family-friendly policies, gender, and Work-Life balance in the public sector.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 Fiksenbaum, L. M. (2014). Supportive work-family environments: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5), 653-672.
- Fisher, K., & Layte, R. (2004). Measuring work-life balance using time diary data.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1(1), 1-13.
- Forbes. (2018. 2. 2.). The Countries Where The Most Workers Are Putting In 60 Hours A Week.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8/02/02/the-countries-where-workers-are-putting-in-a-shift-of-more-than-60-hours-infographic>
- Friedberg, L., & Webb, A. (2005). *The chore wars: Household bargaining and leisure time*. Charlottesville, VA: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Virginia.
- Galea, C., Houkes, I., & De Rijk, A. (2014). An insider's point of view: How a system of flexible working hours helps employees to strike a proper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8), 1090-1111.
- Gershuny, J., & Fisher, K. (2000). Leisure. *Halsey, AH with webb, J.(eds.), twentieth-century british social trends, 3rd edition*, (pp.

620-649).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Graham, J. W., &Green, C. A. (1984).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a household production function with joint produc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77-282.

Greenhaus, J. H.,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Gronau, R.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123.

Hall, D. T. (1990). Promoting work/family balance: An organization-change approach. *Organizational Dynamics*, 18(3), 5-18.

Hawrylyshyn, O. (1978). *Estimating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canada, 1971* Statistics Canada= Statistique Canada.

Heckman, J. J. (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volume 5, number 4* (pp. 475-492) NBER.

Heckman, J. J. (1979). *Statistical models for discrete panel data* Department of Economics an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hicago*.

ILO. (1919). *C001-hours of work (industry) converntion, 1919(no.1)* (normlex) ILO.

ILO. (2018).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07th session conference paper: General survey concerning working-time instruments - ensuring decent working time for the future*. Geneva: ILO.

Kalenkoski, C. M., Ribar, D. C., &Stratton, L. S. (2009). The influence of wages on parents' allocations of time to child care and

- market work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2), 399-419.
- Kalenkoski, C. M., &Hamrick, K. S. (2014). Time poverty thresholds in the USA.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pp. 6650-6653) Springer.
- Kiker, B. F., &Ng, Y. C. (1990).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spousal time allo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19(2), 132-152.
- Kim, H. K. (2014). Work-life balance and employees'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affective commitment. *Global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6(1), 37.
- Kimmel, J., &Connelly, R. (2007).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 Kooreman, P., &Kapteyn, A. (1987).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2), 223-249.
- Lambert, E. G., Pasupuleti, S., Cluse-Tolar, T., Jennings, M., &Baker, D. (2006). The impact of work-family conflict on social work and human service work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 exploratory study.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0(3), 55-74.
- Lewis, S., Gambles, R., &Rapoport, R. (2007). The constraints of a 'work-life balance' approa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8(3), 360-373.
- Li, A., Bagger, J., &Cropanzano, R. (2017). The impact of stereotypes and supervisor perceptions of employee work-family conflict on job performance ratings. *Human Relations*, 70(1), 119-145.

- McNall, L. A., Nicklin, J. M., & Masuda, A. D. (2010).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family enrichment.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5*(3), 381-396.
- Montgomery, N. J. (2013). *Essays on public finance and time use*.
- Moss, P. (2015). *11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5*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Retrieved from <http://maennerundvereinbarkeit.at/wp-content/uploads/2017/01/International-review-of-leave-policies-2015.pdf>
-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 *Policy brief: Where are fathers*. Paris: OECD.
- OECD. (2017a). *employment outlook 2017*. Paris: OECD. Retrieved from [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SITE\\_ID\]/detail.action?docID=4940041](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SITE_ID]/detail.action?docID=4940041)
- OECD. (2017b).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 course OECD Social Policy Division-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s and Social Affairs
- Pichler, F. (2009). Determinants of work-life balance: Shortcomings in the contemporary measurement of WLB in large-scale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3), 449.
- Pollak, R. A. (2005). Bargaining power in marriage: Earnings, wage rates and household production. *NBER Working Paper, 11239*.
- Raja, S., & Stein, S. L. (2014). Work-Life balance: History, costs, and budgeting for balance. *Clinics in Colon and Rectal Surgery, 27*(2), 71.
- Rao, T. S., & Indla, V. (2010). Work, family or personal life: Why not all three?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52*(4), 295.
- Robinson, J. P., & Godbey, G. (1997). *Time for life*. University Park,

- Pa: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Sinha, C. (2012).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work life: Empirical evidence from indian organizations. *Australia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1(11), 31-40.
- Solberg, E. J., & Wong, D. C. (1992). Family time use: Leisure, home production, market work, and work related travel. *Journal of Human Resources*, 485-510.
- Stancanelli, E. G., & Stratton, L. S. (2010). Her time, his time, or the maid's time: An analysis of the demand for domestic work. *IZA Discussion Paper*, 5253
- 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Shared parental leave: Learning from other EU countries*. Retrieved from [https://wellbeing.bitc.org.uk/sites/default/files/eu\\_parental\\_policies.pdf](https://wellbeing.bitc.org.uk/sites/default/files/eu_parental_policies.pdf)
- Thevenon, O., Adema, W., & Clarke, C. (2016). *Background brief on fathers' leave and its use*. ().OECD. doi:10.13140/RG.2.2.27717.24808  
Retrieved from <http://www.dx.doi.org/10.13140/RG.2.2.27717.24808>
- Van Belle, J. (2016).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policies across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K: RAND Europe.
- Voss, J. (1967). The definition of leisure. *Journal of Economic Issues*, 1(1-2), 91-106.
- Wadsworth, L. L., & Facer, R. L. (2016). Work-family balance and alternative work schedules: Exploring the impact of 4-day workweeks on state employe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5(4), 382-404.



## 1.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표 1>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주말

|                | 아내    |        |       | 남편    |        |        |
|----------------|-------|--------|-------|-------|--------|--------|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 연령             | 2,694 | 39.480 | 5.753 | 2,343 | 40.706 | 5.312  |
| 교육연수           | 2,694 | 13.840 | 2.188 | 2,343 | 14.367 | 2.269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 0.547  | 0.498 |       | 0.711  | 0.453  |
| 비정규직           | 1,467 | 0.246  | 0.431 | 2,296 | 0.056  | 0.229  |
| 자영업·가족종사자      |       | 0.207  | 0.405 |       | 0.233  | 0.423  |
| 직종             |       |        |       |       |        |        |
| 관리·전문직         |       | 0.316  | 0.465 |       | 0.220  | 0.415  |
| 사무직            |       | 0.234  | 0.424 |       | 0.272  | 0.445  |
| 서비스·판매직*       | 1,467 | 0.269  | 0.443 | 2,296 | 0.174  | 0.379  |
| 농림어업           |       | 0.008  | 0.090 |       | 0.010  | 0.100  |
| 기능·장치          |       | 0.059  | 0.235 |       | 0.280  | 0.449  |
| 단순노무직          |       | 0.115  | 0.319 |       | 0.044  | 0.204  |
| 건강 상태(좋은=1)    | 2,694 | 0.388  | 0.487 | 2,343 | 0.429  | 0.495  |
| 자녀수            |       |        |       |       |        |        |
| 0-2세           |       | 0.323  | 0.468 |       | 0.212  | 0.436  |
| 3-5세           | 2,694 | 0.185  | 0.413 | 2,343 | 0.208  | 0.435  |
| 6-12세          |       | 0.183  | 0.414 |       | 0.595  | 0.709  |
| 13-18세         |       | 0.532  | 0.692 |       | 0.415  | 0.658  |
| 18세 이상         |       | 0.418  | 0.650 |       | 0.415  | 0.658  |
| 미취학아동 여부(=1)   | 2,694 | 0.323  | 0.467 | 2,343 | 0.367  | 0.482  |
| 부모 동거 여부(동거=1) | 2,694 | 0.418  | 0.649 | 2,343 | 0.082  | 0.318  |
| 주거지역           |       | 0.083  | 0.321 |       |        |        |
| 서울·경기*         |       |        |       |       | 0.282  | 0.450  |
| 광역시            | 2,694 | 0.284  | 0.451 | 2,343 | 0.376  | 0.484  |
| 기타 도지역         |       | 0.371  | 0.483 |       | 0.342  | 0.475  |
| 지역별 실업률        | 2,694 | 0.344  | 0.475 | 2,343 | 3.378  | 0.731  |
| 조사시기           |       | 3.383  | 0.730 |       |        |        |
| 7월             |       |        |       |       | 0.246  | 0.431  |
| 9월             | 2,694 | 0.251  | 0.434 | 2,343 | 0.497  | 0.500  |
| 12월*           |       | 0.484  | 0.500 |       | 0.257  | 0.437  |
| 주거면적           | 2,694 | 0.265  | 0.441 | 2,343 | 82.405 | 28.159 |

주: \*은 준거변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90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부표 2> 아내의 임금함수 추정: 주말

|                            | 노동 참가                | 임금률                  |
|----------------------------|----------------------|----------------------|
| 연령                         | 0.001<br>(0.063)     | 0.087<br>(0.081)     |
| 연령 제곱                      | 0.000<br>(0.001)     | -0.001<br>(0.001)    |
| 교육연수                       | -0.270*<br>(0.136)   | -0.148<br>(0.166)    |
| 교육연수 제곱                    | 0.006 †<br>(0.003)   | 0.006<br>(0.004)     |
| 연령*교육연수                    | 0.003<br>(0.002)     | 0.002<br>(0.003)     |
| 고용형태(Ref. 정규직)<br>비정규직     |                      | -0.006<br>(0.075)    |
| 자영업·가족종사자                  |                      | -1.415***<br>(0.081) |
| 직종(Ref. 서비스·판매직)<br>관리·전문직 |                      | 0.299***<br>(0.090)  |
| 사무직                        |                      | -0.074<br>(0.092)    |
| 농림어업                       |                      | -2.170***<br>(0.340) |
| 기능·장치                      |                      | -0.241 †<br>(0.135)  |
| 단순노무직                      |                      | -0.421***<br>(0.105) |
| 건강 상태                      | -0.034<br>(0.051)    |                      |
| 미취학 아동 여부(=1)              | -0.471***<br>(0.070) |                      |
| 부모 동거 여부(=1)               | 0.410***<br>(0.083)  |                      |
| 지역변수(Ref. 서울·경기)<br>광역시    | 0.044<br>(0.063)     |                      |
| 기타 도지역                     | 0.259**<br>(0.079)   |                      |
| 지역별 실업률                    | 0.029<br>(0.043)     |                      |
| 상수항                        | 1.363<br>(1.789)     | -2.48<br>(2.158)     |
| λ 추정치                      |                      | 0.758***<br>(0.222)  |
| log-likelihood             |                      | -1745.7              |
| R-squared                  |                      | 0.063                |
| left-censored              |                      | 1.268                |
| uncensored                 |                      | 1.426                |
| Observations               |                      | 2,694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3〉 아내의 시간 사용 추정: 주말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여가시간                  | 기타시간                    |
|----------------------|-------------------------|------------------------|-----------------------|-----------------------|-------------------------|
| 연령                   | -6.069<br>(37.370)      | -11.082*<br>(5.606)    | 11.220†<br>(6.653)    | 1.539<br>(7.784)      | 8.878<br>(5.721)        |
| 연령 제곱                | 0.273<br>(0.446)        | 0.072<br>(0.067)       | -0.298***<br>(0.082)  | -0.012<br>(0.093)     | -0.128†<br>(0.069)      |
| 교육연수                 | -60.380<br>(72.196)     | -11.815<br>(11.545)    | -9.328<br>(13.926)    | -4.563<br>(16.025)    | 7.918<br>(11.776)       |
| 교육연수 제곱              | 1.298<br>(1.596)        | -0.203<br>(0.274)      | 0.226<br>(0.362)      | 0.070<br>(0.379)      | -0.320<br>(0.279)       |
| 연령*교육연수              | -0.152<br>(1.132)       | 0.460**<br>(0.174)     | 0.240<br>(0.221)      | 0.169<br>(0.242)      | 0.021<br>(0.178)        |
| 자녀수                  |                         |                        |                       |                       |                         |
| 0-2세                 | -128.751*<br>(52.740)   | 5.124<br>(7.010)       | 97.648***<br>(7.535)  | -58.215***<br>(9.737) | -8.337<br>(7.156)       |
| 3-5세                 | -175.682***<br>(48.125) | 5.919<br>(6.368)       | 47.327***<br>(6.883)  | -30.297***<br>(8.848) | 14.425*<br>(6.502)      |
| 6-12세                | -19.036<br>(27.805)     | 13.544**<br>(4.281)    | 1.099<br>(4.836)      | -1.467<br>(5.937)     | 3.128<br>(4.363)        |
| 13-18세               | 28.062<br>(26.621)      | 23.831***<br>(4.377)   | -51.475***<br>(5.530) | 3.788<br>(6.074)      | -9.881*<br>(4.464)      |
| 18세 이상               | 9.358<br>(32.406)       | 10.992*<br>(5.585)     | -93.525***<br>(9.680) | 8.614<br>(7.753)      | -8.129<br>(5.697)       |
| 부모 동거 여부             | 120.926**<br>(38.490)   | -3.228<br>(6.657)      | -9.402<br>(7.823)     | -23.322*<br>(9.207)   | 1.901<br>(6.766)        |
| 조사월 (Ref.12월)        |                         |                        |                       |                       |                         |
| 7월                   | 2.315<br>(37.948)       |                        |                       |                       |                         |
| 9월                   | 21.925<br>(33.015)      |                        |                       |                       |                         |
| 주거전용면적               |                         | 0.182*<br>(0.078)      |                       |                       |                         |
| 주거지역 (Ref.서울·경기)     |                         |                        |                       |                       |                         |
| 광역시                  |                         |                        | 14.113*<br>(6.252)    |                       |                         |
| 기타 도지역               |                         |                        | -2.328<br>(6.437)     |                       |                         |
| 건강 상태<br>(약간 안 좋음=1) |                         |                        |                       | -26.717**<br>(9.370)  | -2.262<br>(6.886)       |
| 상수항                  | 71.452<br>(983.024)     | 444.174**<br>(150.938) | 28.217<br>(174.881)   | 296.218<br>(209.552)  | 517.275***<br>(153.996) |
| log-likelihood       | -5096.7                 |                        | -10568.8              |                       |                         |
| R-squared            | 0.017                   | 0.028                  | 0.087                 | 0.069                 | 0.017                   |
| left-censored        | 2,129                   |                        | 1,049                 |                       |                         |
| uncensored           | 565                     |                        | 1,645                 |                       |                         |
| Observations         | 2,694                   | 2,694                  | 2,694                 | 2,694                 | 2,694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9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부표 4> 남편의 시간 사용 추정: 주말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여가시간                   | 기타시간                 |
|----------------------|--------------------------|------------------------|------------------------|------------------------|----------------------|
| 연령                   | -37.802*<br>(16.168)     | 6.914<br>(6.578)       | 19.275*<br>(7.870)     | 5.056<br>(12.099)      | 20.691*<br>(8.327)   |
| 연령 제곱                | 0.441*<br>(0.189)        | -0.060<br>(0.077)      | -0.249**<br>(0.094)    | -0.043<br>(0.141)      | -0.282**<br>(0.097)  |
| 교육연수                 | -73.049**<br>(27.866)    | 32.746**<br>(11.785)   | 17.715<br>(13.678)     | 28.827<br>(20.848)     | 14.979<br>(14.348)   |
| 교육연수 제곱              | 1.996**<br>(0.653)       | -0.722*<br>(0.285)     | -0.145<br>(0.333)      | -1.047*<br>(0.489)     | -0.505<br>(0.337)    |
| 연령*교육연수              | -0.043<br>(0.465)        | -0.136<br>(0.190)      | -0.196<br>(0.238)      | 0.247<br>(0.348)       | 0.063<br>(0.239)     |
| 자녀수                  |                          |                        |                        |                        |                      |
| 0-2세                 | -32.916*<br>(16.540)     | 28.960***<br>(6.589)   | 60.147***<br>(7.381)   | -19.788<br>(12.374)    | -2.262<br>(8.516)    |
| 3-5세                 | -47.501**<br>(15.126)    | 10.977†<br>(6.128)     | 46.100***<br>(6.777)   | 3.992<br>(11.324)      | 11.314<br>(7.793)    |
| 6-12세                | -12.392<br>(10.275)      | 10.637*<br>(4.153)     | -7.084<br>(4.974)      | 13.319†<br>(7.688)     | 2.440<br>(5.291)     |
| 13-18세               | -4.087<br>(11.157)       | 3.878<br>(4.551)       | -55.912***<br>(6.339)  | 12.108<br>(8.345)      | 7.206<br>(5.744)     |
| 18세 이상               | -9.893<br>(16.433)       | 1.733<br>(6.854)       | -76.308***<br>(12.196) | 18.207<br>(12.287)     | 6.613<br>(8.456)     |
| 부모 동거 여부             | -2.048<br>(16.741)       | -4.275<br>(7.038)      | -3.098<br>(8.163)      | 6.402<br>(12.534)      | 0.506<br>(8.626)     |
| 조사월 (Ref.12월)        |                          |                        |                        |                        |                      |
| 7월                   | 7.096<br>(14.905)        |                        |                        |                        |                      |
| 9월                   | 9.190<br>(12.864)        |                        |                        |                        |                      |
| 주거전용면적               |                          | -0.086<br>(0.080)      |                        |                        |                      |
| 주거지역 (Ref.서울·경기)     |                          |                        |                        |                        |                      |
| 광역시                  |                          |                        | 3.399<br>(6.444)       |                        |                      |
| 기타 도지역               |                          |                        | 1.016<br>(6.645)       |                        |                      |
| 건강 상태<br>(약간 안 좋음=1) |                          |                        |                        | -50.762***<br>(14.380) | 9.879<br>(9.897)     |
| 상수항                  | 1671.316***<br>(423.806) | -417.225*<br>(174.145) | -481.859*<br>(203.785) | -67.812<br>(317.082)   | 219.610<br>(218.231) |
| log-likelihood       |                          | -8653.2                | -7063.1                |                        |                      |
| R-squared            | 0.030                    | 0.005                  | 0.059                  | 0.053                  | 0.005                |
| left-censored        |                          | 1,019                  | 1,280                  |                        |                      |
| uncensored           |                          | 1,324                  | 1,063                  |                        |                      |
| Observations         | 3,595                    | 3,595                  | 3,595                  | 3,595                  | 3,595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5〉 배우자 시간 사용과 본인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말

| 본인시간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본인 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추정치                   | 0.008<br>(0.013)     | 0.280***<br>(0.02)     | -0.269***<br>(0.038)    | -0.091***<br>(0.016)    | -0.098***<br>(0.011)    | -0.545***<br>(0.033)   |
| 가사시간 추정치                   | 0.114***<br>(0.016)  | 0.549***<br>(0.025)    | 0.320***<br>(0.047)     | -0.471***<br>(0.017)    | 0.202***<br>(0.011)     | -0.699***<br>(0.036)   |
| 육아시간 추정치                   | -0.194***<br>(0.004) | -0.170***<br>(0.007)   | 0.730***<br>(0.018)     | -0.124***<br>(0.01)     | 0.052***<br>(0.007)     | 0.140***<br>(0.022)    |
| 여가시간 추정치                   | -0.060***<br>(0.009) | 0.134***<br>(0.014)    | -0.295***<br>(0.026)    | 0.072***<br>(0.014)     | -0.228***<br>(0.009)    | -0.586***<br>(0.03)    |
| 기타시간 추정치                   | 0.056**<br>(0.021)   | 0.613***<br>(0.033)    | -1.641***<br>(0.068)    | -0.707***<br>(0.023)    | -0.123***<br>(0.015)    | 0.979***<br>(0.049)    |
| 연령                         | -1.889***<br>(0.359) | -9.081***<br>(0.556)   | 18.714***<br>(1.178)    | -35.576***<br>(0.608)   | 10.823***<br>(0.413)    | 16.534***<br>(1.305)   |
| 연령 제곱                      | 0.139***<br>(0.004)  | 0.031***<br>(0.007)    | -0.400***<br>(0.016)    | 0.398***<br>(0.007)     | -0.101***<br>(0.005)    | -0.236***<br>(0.015)   |
| 교육연수                       | 4.705***<br>(0.727)  | -17.065***<br>(1.125)  | -12.039***<br>(2.076)   | -73.604***<br>(1.052)   | 33.665***<br>(0.715)    | 11.648***<br>(2.257)   |
| 교육연수 제곱                    | 0.248***<br>(0.02)   | -0.123***<br>(0.031)   | 0.106†<br>(0.059)       | 1.992***<br>(0.025)     | -0.750***<br>(0.017)    | -0.236***<br>(0.053)   |
| 연령*교육연수                    | -0.495***<br>(0.012) | 0.546***<br>(0.018)    | 0.351***<br>(0.042)     | -0.024<br>(0.018)       | -0.147***<br>(0.012)    | 0.033<br>(0.038)       |
| 미취학 자녀수                    | -9.746***<br>(0.499) | 6.686***<br>(0.772)    | 15.278***<br>(1.401)    | -24.863***<br>(0.793)   | -4.517***<br>(0.539)    | 8.117***<br>(1.701)    |
| 부모 동거 여부                   | 28.436***<br>(0.407) | -0.806<br>(0.63)       | -2.621*<br>(1.128)      | 3.194***<br>(0.739)     | -7.272***<br>(0.502)    | -2.839†<br>(1.585)     |
| 상수항                        | 53.544*<br>(21.22)   | -101.001**<br>(32.858) | 1299.394***<br>(65.424) | 2235.378***<br>(24.121) | -365.705***<br>(16.396) | -769.630***<br>(51.76) |
| log-likelihood             | -6435.970            |                        |                         |                         |                         |                        |
| R-squared                  | 0.971                | 0.787                  | 0.377                   | 0.963                   | 0.893                   | 0.948                  |
| left-censored Observations | 699                  |                        |                         |                         |                         |                        |
| uncensored Observations    | 2,862                |                        |                         |                         |                         |                        |
| Observations               | 2,327                | 2,327                  | 2,327                   | 2,327                   | 2,327                   | 2,327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6> 본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주말

| 본인시간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본인 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추정치                   |                       | -0.359***<br>(0.059)   | -3.255***<br>(0.088)    |                         | -0.668***<br>(0.016)  | -2.302***<br>(0.051)    |
| 가사시간 추정치                   | -0.038***<br>(0.006)  |                        | -0.992***<br>(0.034)    | -0.656***<br>(0.015)    |                       | -1.215***<br>(0.065)    |
| 육아시간 추정치                   | -0.084***<br>(0.003)  | -0.221***<br>(0.011)   |                         | -0.202***<br>(0.004)    | -0.109***<br>(0.006)  |                         |
| 여가시간 추정치                   | 0.238***<br>(0.006)   | -0.002<br>(0.023)      | -0.391***<br>(0.037)    | -0.310***<br>(0.008)    | -0.221***<br>(0.009)  | -0.993***<br>(0.027)    |
| 기타시간 추정치                   | -0.807***<br>(0.008)  | -0.743***<br>(0.052)   | -1.850***<br>(0.075)    | -1.631***<br>(0.024)    | -1.257***<br>(0.033)  | -5.105***<br>(0.092)    |
| 연령                         | 4.481***<br>(0.202)   | -0.687<br>(0.678)      | 17.020***<br>(1.273)    | 7.708***<br>(0.743)     | 12.697***<br>(0.721)  | 66.278***<br>(2.168)    |
| 연령 제곱                      | 0.039***<br>(0.003)   | -0.052***<br>(0.008)   | -0.118***<br>(0.017)    | -0.148***<br>(0.01)     | -0.183***<br>(0.009)  | -1.028***<br>(0.027)    |
| 교육연수                       | 11.963***<br>(0.387)  | -8.690***<br>(1.379)   | 3.452<br>(2.272)        | -15.414***<br>(0.971)   | 10.157***<br>(1.01)   | -10.360***<br>(3.446)   |
| 교육연수 제곱                    | -0.053***<br>(0.009)  | -0.228***<br>(0.029)   | 0.183**<br>(0.062)      | 0.345***<br>(0.026)     | -0.275***<br>(0.027)  | -0.115<br>(0.091)       |
| 연령*교육연수                    | -0.500***<br>(0.007)  | 0.349***<br>(0.035)    | -0.681***<br>(0.061)    | 0.025*<br>(0.012)       | -0.033**<br>(0.012)   | 0.279***<br>(0.039)     |
| 미취학 자녀수                    | -0.720*<br>(0.323)    | 2.837**<br>(0.996)     | -5.763***<br>(1.485)    | -14.440***<br>(0.525)   | -5.071***<br>(0.601)  | 4.151*<br>(2.039)       |
| 부모 동거 여부                   | 34.355***<br>(0.263)  | 6.630**<br>(2.197)     | 74.132***<br>(3.422)    | -2.837***<br>(0.416)    | -5.445***<br>(0.409)  | -1.513<br>(1.42)        |
| 상수항                        | 452.724***<br>(7.547) | 864.794***<br>(31.455) | 1744.337***<br>(47.876) | 1615.988***<br>(12.365) | 890.506***<br>(30.95) | 3687.238***<br>(93.247) |
| log-likelihood             | -6614.116             |                        |                         |                         |                       |                         |
| R-squared                  | 0.992                 | 0.698                  | 0.388                   | 0.984                   | 0.898                 | 0.943                   |
| left-censored Observations | 1,113                 |                        |                         |                         |                       |                         |
| uncensored Observations    | 1,581                 |                        |                         |                         |                       |                         |
| Observations               | 2,694                 | 2,694                  | 2,694                   | 2,343                   | 2,343                 | 2,343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7〉 상대임금 추정: 주말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상대임금 추정치 | 0.006   | -0.014 | -0.017 | 0.003 | -0.007 | 0.000  |
| 상대임금 실측치 | 0.212** | 0.061  | 0.251  | 0.096 | -0.043 | 0.567* |

주: † 0.1 \* 0.05 \*\* 0.01 \*\*\* 0.001

〈부표 8〉 본인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남편                  | 아내                   |
|----------------|---------------------|----------------------|
| 본인 시간 추정치      |                     |                      |
| 노동시간           | 0.002<br>(0.006)    | -0.006<br>(0.006)    |
| 가사시간           | -0.004<br>(0.006)   | -0.004<br>(0.003)    |
| 육아시간           | 0.001<br>(0.002)    | -0.002<br>(0.002)    |
| 여가시간           | -0.010**<br>(0.003) | -0.011***<br>(0.003) |
| 기타시간           | 0.008<br>(0.013)    | 0.004<br>(0.004)     |
| 연령             | 0.128<br>(0.234)    | 0.018<br>(0.105)     |
| 연령 제곱          | -0.002<br>(0.003)   | -0.001<br>(0.001)    |
| 교육연수           | 0.262<br>(0.310)    | -0.476*<br>(0.208)   |
| 교육연수 제곱        | -0.006<br>(0.008)   | 0.014*<br>(0.006)    |
| 연령*교육연수        | 0.001<br>(0.004)    | 0.005<br>(0.004)     |
| 미취학 자녀수        | -0.298<br>(0.186)   | -0.162<br>(0.166)    |
| 부모 동거 여부       | 0.230 †<br>(0.132)  | -0.159<br>(0.137)    |
| 상수항 1          | 3.869<br>(10.892)   | -7.094 †<br>(3.909)  |
| 상수항 2          | 6.303<br>(10.891)   | -4.898<br>(3.908)    |
| 상수항 3          | 8.246<br>(10.891)   | -3.108<br>(3.908)    |
| log-likelihood | -2581.854           | -3248.638            |
| chi2           | 104.826             | 79.315               |
| Observations   | 2,343               | 2,694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9> 배우자의 시간 사용에 따른 시간 부족감

|                | 남편                 | 아내                 |
|----------------|--------------------|--------------------|
| 배우자 시간 추정치     |                    |                    |
| 노동시간           | -0.016*<br>(0.007) | 0.010*<br>(0.004)  |
| 가사시간           | -0.007*<br>(0.003) | 0.012*<br>(0.005)  |
| 육아시간           | -0.002<br>(0.002)  | 0.003**<br>(0.001) |
| 여가시간           | -0.003<br>(0.003)  | 0.004<br>(0.003)   |
| 기타시간           | 0.000<br>(0.004)   | 0.010<br>(0.007)   |
| 연령             | 0.137<br>(0.125)   | 0.091<br>(0.112)   |
| 연령 제곱          | -0.002†<br>(0.001) | -0.001<br>(0.001)  |
| 교육연수           | -0.171<br>(0.211)  | -0.507*<br>(0.229) |
| 교육연수 제곱        | 0.007<br>(0.005)   | 0.019**<br>(0.006) |
| 연령*교육연수        | 0.000<br>(0.004)   | 0.000<br>(0.004)   |
| 미취학 자녀수        | -0.190<br>(0.162)  | 0.220<br>(0.155)   |
| 부모 동거 여부       | 0.100<br>(0.142)   | 0.205<br>(0.128)   |
| 상수항 1          | -6.073<br>(4.039)  | 6.957<br>(6.631)   |
| 상수항 2          | -3.646<br>(4.036)  | 9.260<br>(6.632)   |
| 상수항 3          | -1.710<br>(4.036)  | 11.059†<br>(6.633) |
| log-likelihood | -2569.425          | -2778.626          |
| chi2           | 92.762             | 65.350             |
| Observations   | 2,327              | 2,327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2. 교섭력에 관한 추정 결과

### 가. 주종 분석 결과

〈부표 10〉 교섭력 추정(추정치): 주종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교섭력(상대임금)      | 0.004<br>(0.014)        | -0.008<br>(0.012)      | 0.008<br>(0.019)        | -0.015 †<br>(0.009)     | -0.002<br>(0.006)      | -0.011<br>(0.011)      |
| 본인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 -0.280***<br>(0.019)   | -0.889***<br>(0.022)    |                         | -0.302***<br>(0.015)   | -0.587***<br>(0.025)   |
| 가사시간           | -0.370***<br>(0.026)    |                        | -0.306***<br>(0.031)    | -0.599***<br>(0.030)    |                        | -0.168***<br>(0.040)   |
| 육아시간           | -0.336***<br>(0.014)    | -0.113***<br>(0.013)   |                         | -0.390***<br>(0.017)    | -0.056***<br>(0.013)   |                        |
| 여가시간           | -0.353***<br>(0.037)    | 0.371***<br>(0.032)    | -0.491***<br>(0.041)    | -0.842***<br>(0.036)    | 0.197***<br>(0.029)    | -1.217***<br>(0.041)   |
| 기타시간           | -1.068***<br>(0.034)    | -0.753***<br>(0.032)   | -0.436***<br>(0.047)    | -0.664***<br>(0.038)    | -0.196***<br>(0.029)   | -0.278***<br>(0.050)   |
| 배우자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0.769***<br>(0.031)    | -0.308***<br>(0.031)   | -1.018***<br>(0.037)    | -0.328***<br>(0.013)    | -0.227***<br>(0.009)   | -0.427***<br>(0.015)   |
| 가사시간           | -0.874***<br>(0.037)    | 0.134***<br>(0.037)    | -0.159***<br>(0.047)    | -0.177***<br>(0.015)    | 0.084***<br>(0.011)    | -0.215***<br>(0.019)   |
| 육아시간           | -0.845***<br>(0.023)    | -0.071**<br>(0.026)    | -0.319***<br>(0.033)    | -0.172***<br>(0.009)    | -0.006<br>(0.007)      | -0.097***<br>(0.011)   |
| 여가시간           | -0.928***<br>(0.050)    | -0.615***<br>(0.045)   | -1.388***<br>(0.056)    | -0.134***<br>(0.014)    | -0.067***<br>(0.010)   | -0.132***<br>(0.017)   |
| 기타시간           | -1.194***<br>(0.041)    | -0.151***<br>(0.043)   | -0.777***<br>(0.055)    | -0.316***<br>(0.025)    | -0.389***<br>(0.016)   | -0.166***<br>(0.032)   |
| 연령             | 17.310***<br>(0.650)    | 3.152***<br>(0.474)    | 18.079***<br>(0.867)    | 5.670***<br>(0.530)     | 3.070***<br>(0.382)    | 7.217***<br>(0.650)    |
| 연령 제곱          | -0.214***<br>(0.008)    | -0.032***<br>(0.006)   | -0.356***<br>(0.011)    | -0.081***<br>(0.006)    | -0.012**<br>(0.005)    | -0.070***<br>(0.008)   |
| 교육연수           | -23.052***<br>(1.227)   | -1.676 †<br>(0.895)    | 16.596***<br>(1.502)    | -3.911***<br>(1.088)    | -2.264**<br>(0.773)    | 11.586***<br>(1.312)   |
| 교육연수 제곱        | 0.984***<br>(0.031)     | -0.130***<br>(0.022)   | -0.461***<br>(0.044)    | 0.221***<br>(0.026)     | 0.399***<br>(0.016)    | -0.185***<br>(0.032)   |
| 연령*교육연수        | -0.019<br>(0.022)       | 0.055***<br>(0.016)    | 0.065*<br>(0.031)       | -0.003<br>(0.017)       | -0.190***<br>(0.011)   | -0.077***<br>(0.021)   |
| 미취학 자녀수        | 3.229**<br>(1.070)      | -7.367***<br>(0.780)   | 4.443***<br>(1.204)     | -6.060***<br>(0.925)    | 0.758<br>(0.665)       | 2.497*<br>(1.148)      |
| 부모 동거 여부       | 24.834***<br>(1.018)    | -5.771***<br>(0.743)   | 3.993***<br>(1.192)     | 5.951***<br>(0.804)     | 1.062 †<br>(0.579)     | 7.417***<br>(0.987)    |
| 상수항            | 2356.806***<br>(55.341) | 805.097***<br>(65.335) | 1809.252***<br>(75.939) | 1398.924***<br>(46.777) | 465.068***<br>(39.079) | 744.518***<br>(67.926) |
| log-likelihood |                         |                        | -5089.817               |                         |                        |                        |
| R-squared      | 0.981                   | 0.718                  | 0.416                   | 0.727                   | 0.757                  | 0.951                  |
| left-censored  |                         |                        | 504                     |                         |                        |                        |
| uncensored     |                         |                        | 1,334                   |                         |                        |                        |
| Observations   |                         |                        |                         | 1,838                   |                        |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11> 교섭력 추정(실측치): 주중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교섭력(상대임금)      | -0.077<br>(0.163)       | -0.076<br>(0.143)      | -0.385*<br>(0.193)      | 0.038<br>(0.103)        | 0.061<br>(0.075)       | 0.012<br>(0.129)       |
| 본인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 -0.298***<br>(0.020)   | -0.898***<br>(0.023)    |                         | -0.307***<br>(0.016)   | -0.588***<br>(0.026)   |
| 가사시간           | -0.388***<br>(0.026)    |                        | -0.312***<br>(0.031)    | -0.586***<br>(0.030)    |                        | -0.176***<br>(0.041)   |
| 육아시간           | -0.320***<br>(0.014)    | -0.106***<br>(0.014)   |                         | -0.377***<br>(0.017)    | -0.059***<br>(0.014)   |                        |
| 여가시간           | -0.405***<br>(0.038)    | 0.319***<br>(0.033)    | -0.498***<br>(0.042)    | -0.808***<br>(0.036)    | 0.222***<br>(0.029)    | -1.194***<br>(0.043)   |
| 기타시간           | -1.113***<br>(0.035)    | -0.790***<br>(0.034)   | -0.423***<br>(0.049)    | -0.695***<br>(0.039)    | -0.174***<br>(0.031)   | -0.254***<br>(0.053)   |
| 배우자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0.791***<br>(0.032)    | -0.335***<br>(0.031)   | -1.019***<br>(0.037)    | -0.338***<br>(0.013)    | -0.227***<br>(0.009)   | -0.425***<br>(0.016)   |
| 가사시간           | -0.847***<br>(0.038)    | 0.136***<br>(0.038)    | -0.154**<br>(0.048)     | -0.189***<br>(0.015)    | 0.080***<br>(0.011)    | -0.220***<br>(0.019)   |
| 육아시간           | -0.834***<br>(0.023)    | -0.086**<br>(0.027)    | -0.343***<br>(0.033)    | -0.165***<br>(0.008)    | -0.004<br>(0.007)      | -0.100***<br>(0.011)   |
| 여가시간           | -0.953***<br>(0.051)    | -0.650***<br>(0.046)   | -1.413***<br>(0.056)    | -0.140***<br>(0.014)    | -0.066***<br>(0.010)   | -0.127***<br>(0.017)   |
| 기타시간           | -1.215***<br>(0.041)    | -0.188***<br>(0.044)   | -0.787***<br>(0.055)    | -0.350***<br>(0.026)    | -0.381***<br>(0.017)   | -0.151***<br>(0.034)   |
| 연령             | 5.225***<br>(1.002)     | 11.670***<br>(0.840)   | 21.636***<br>(1.208)    | 5.592***<br>(0.542)     | 3.494***<br>(0.396)    | 7.634***<br>(0.673)    |
| 연령 제곱          | -0.043***<br>(0.011)    | -0.103***<br>(0.010)   | -0.391***<br>(0.014)    | -0.079***<br>(0.006)    | -0.018***<br>(0.005)   | -0.075***<br>(0.008)   |
| 교육연수           | -7.494***<br>(1.279)    | 6.001***<br>(1.122)    | -7.362***<br>(1.413)    | -4.037***<br>(1.086)    | -1.987*<br>(0.788)     | 11.772***<br>(1.332)   |
| 교육연수 제곱        | 0.482***<br>(0.038)     | 0.201***<br>(0.035)    | 0.146**<br>(0.046)      | 0.227**<br>(0.026)      | 0.401***<br>(0.017)    | -0.171***<br>(0.033)   |
| 연령*교육연수        | -0.123***<br>(0.034)    | -0.348***<br>(0.029)   | 0.240***<br>(0.040)     | -0.007<br>(0.018)       | -0.194***<br>(0.012)   | -0.087***<br>(0.022)   |
| 미취학 자녀수        | -15.008***<br>(1.375)   | -8.004***<br>(1.230)   | -6.737***<br>(1.464)    | -7.140***<br>(0.961)    | 1.432*<br>(0.705)      | 3.189**<br>(1.216)     |
| 부모 동거 여부       | 27.469***<br>(1.460)    | 21.941***<br>(1.301)   | 13.248***<br>(1.717)    | 6.779***<br>(0.812)     | 0.931<br>(0.599)       | 6.941***<br>(1.020)    |
| 상수항            | 2451.203***<br>(57.058) | 906.873***<br>(68.259) | 1817.012***<br>(79.297) | 1443.735***<br>(48.630) | 433.035***<br>(41.882) | 704.724***<br>(72.485) |
| log-likelihood |                         |                        | -4838.292               |                         |                        |                        |
| R-squared      | 0.980                   | 0.720                  | 0.417                   | 0.886                   | 0.826                  | 0.971                  |
| left-censored  |                         |                        | 497                     |                         |                        |                        |
| uncensored     |                         |                        | 1,275                   |                         |                        |                        |
| Observations   |                         |                        |                         | 1,772                   |                        |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나. 주말 분석 결과

〈부표 12〉 교섭력 추정(추정치): 주말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교섭력(상대임금)                             | 0.006<br>(0.004)       | -0.014<br>(0.012)     | -0.017<br>(0.025)       | 0.003<br>(0.008)        | -0.007<br>(0.007)      | 0.000<br>(0.017)      |
| 본인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 -0.350***<br>(0.083)  | -1.686***<br>(0.116)    |                         | -0.483***<br>(0.022)   | -0.737***<br>(0.059)  |
| 가사시간                                  | -0.043***<br>(0.010)   |                       | -0.020<br>(0.054)       | -0.596***<br>(0.027)    |                        | -0.196**<br>(0.070)   |
| 육아시간                                  | -0.054***<br>(0.005)   | -0.098***<br>(0.014)  |                         | -0.158***<br>(0.013)    | -0.034**<br>(0.012)    |                       |
| 여가시간                                  | 0.165***<br>(0.010)    | -0.144***<br>(0.031)  | -0.153***<br>(0.042)    | -0.356***<br>(0.015)    | -0.131***<br>(0.016)   | -0.958***<br>(0.029)  |
| 기타시간                                  | -0.858***<br>(0.016)   | -0.253**<br>(0.085)   | -1.062***<br>(0.114)    | -1.681***<br>(0.060)    | -0.905***<br>(0.065)   | -4.345***<br>(0.110)  |
| 배우자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0.060***<br>(0.010)   | 0.326***<br>(0.028)   | -0.235***<br>(0.043)    | -0.020<br>(0.013)       | -0.050***<br>(0.012)   | -0.090**<br>(0.029)   |
| 가사시간                                  | -0.247***<br>(0.016)   | 0.508***<br>(0.049)   | -0.102<br>(0.075)       | 0.105***<br>(0.020)     | 0.226***<br>(0.017)    | 0.349***<br>(0.042)   |
| 육아시간                                  | -0.012*<br>(0.005)     | -0.166***<br>(0.013)  | 0.554***<br>(0.028)     | -0.074***<br>(0.009)    | -0.008<br>(0.008)      | -0.002<br>(0.020)     |
| 여가시간                                  | 0.003<br>(0.008)       | 0.193***<br>(0.022)   | -0.165***<br>(0.032)    | -0.032*<br>(0.014)      | -0.154***<br>(0.012)   | -0.123***<br>(0.030)  |
| 기타시간                                  | 0.075***<br>(0.017)    | 0.750***<br>(0.045)   | -1.124***<br>(0.080)    | 0.017<br>(0.036)        | -0.098**<br>(0.032)    | 1.933***<br>(0.054)   |
| 연령                                    | 4.559***<br>(0.305)    | -8.012***<br>(0.927)  | 23.210***<br>(1.542)    | 7.374***<br>(1.546)     | 12.400***<br>(1.358)   | 82.783***<br>(2.351)  |
| 연령 제곱                                 | 0.038***<br>(0.004)    | 0.059***<br>(0.012)   | -0.293***<br>(0.021)    | -0.136***<br>(0.020)    | -0.151***<br>(0.018)   | -1.134***<br>(0.029)  |
| 교육연수                                  | 11.977***<br>(0.522)   | -11.580***<br>(1.773) | 1.501<br>(2.560)        | -13.099***<br>(2.017)   | 17.419***<br>(1.777)   | 64.878***<br>(4.010)  |
| 교육연수 제곱                               | -0.055***<br>(0.015)   | -0.113**<br>(0.042)   | 0.155*<br>(0.064)       | 0.317***<br>(0.053)     | -0.352***<br>(0.048)   | -2.033***<br>(0.101)  |
| 연령*교육연수                               | -0.492***<br>(0.010)   | 0.352***<br>(0.049)   | -0.358***<br>(0.075)    | -0.013<br>(0.017)       | -0.132***<br>(0.015)   | 0.239***<br>(0.036)   |
| 미취학 자녀수                               | -4.178***<br>(0.482)   | 3.466*<br>(1.424)     | -2.600<br>(1.923)       | -12.781***<br>(1.009)   | -8.429***<br>(0.937)   | 30.998***<br>(2.142)  |
| 부모 동거 여부                              | 31.525***<br>(0.349)   | 4.836†<br>(2.826)     | 40.161***<br>(3.944)    | -2.393***<br>(0.593)    | -6.532***<br>(0.503)   | 0.133<br>(1.291)      |
| 상수항                                   | 467.980***<br>(17.373) | -28.978<br>(63.466)   | 1638.551***<br>(85.754) | 1644.699***<br>(29.241) | 570.462***<br>(47.840) | 212.448†<br>(121.461) |
| log-likelihood                        |                        |                       | -2678.845               |                         |                        |                       |
| R-squared                             | 0.993                  | 0.826                 | 0.435                   | 0.985                   | 0.924                  | 0.980                 |
| left-censored uncensored Observations |                        |                       | 706                     |                         |                        | 1,188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13> 교섭력 추정(실측치): 주말

|                | 아내                     |                       |                         | 남편                      |                        |                      |
|----------------|------------------------|-----------------------|-------------------------|-------------------------|------------------------|----------------------|
|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노동시간                    | 가사시간                   | 육아시간                 |
| 교섭력(상대임금)      | 0.212**<br>(0.065)     | 0.061<br>(0.191)      | 0.251<br>(0.323)        | 0.096<br>(0.120)        | -0.043<br>(0.110)      | 0.567*<br>(0.261)    |
| 본인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 -0.344***<br>(0.087)  | -1.602***<br>(0.122)    |                         | -0.480***<br>(0.023)   | -0.715***<br>(0.061) |
| 가사시간           | -0.040***<br>(0.010)   |                       | -0.014<br>(0.055)       | -0.573***<br>(0.028)    |                        | -0.217**<br>(0.070)  |
| 육아시간           | -0.047***<br>(0.005)   | -0.098***<br>(0.015)  |                         | -0.152***<br>(0.013)    | -0.039**<br>(0.012)    |                      |
| 여가시간           | 0.156***<br>(0.010)    | -0.146***<br>(0.032)  | -0.162***<br>(0.044)    | -0.350***<br>(0.016)    | -0.128***<br>(0.017)   | -0.964***<br>(0.029) |
| 기타시간           | -0.859***<br>(0.016)   | -0.244**<br>(0.088)   | -0.963***<br>(0.119)    | -1.639***<br>(0.061)    | -0.905***<br>(0.066)   | -4.355***<br>(0.110) |
| 배우자시간 추정치      |                        |                       |                         |                         |                        |                      |
| 노동시간           | -0.062***<br>(0.010)   | 0.335***<br>(0.028)   | -0.215***<br>(0.044)    | -0.020<br>(0.013)       | -0.050***<br>(0.012)   | -0.077**<br>(0.029)  |
| 가사시간           | -0.249***<br>(0.016)   | 0.518***<br>(0.050)   | -0.068<br>(0.077)       | 0.101***<br>(0.020)     | 0.226***<br>(0.017)    | 0.371***<br>(0.042)  |
| 육아시간           | -0.014**<br>(0.005)    | -0.165***<br>(0.013)  | 0.560***<br>(0.029)     | -0.066***<br>(0.009)    | -0.009<br>(0.008)      | 0.001<br>(0.020)     |
| 여가시간           | 0.002<br>(0.008)       | 0.199***<br>(0.023)   | -0.153***<br>(0.034)    | -0.037**<br>(0.014)     | -0.149***<br>(0.012)   | -0.102***<br>(0.030) |
| 기타시간           | 0.073***<br>(0.017)    | 0.761***<br>(0.046)   | -1.129***<br>(0.082)    | -0.017<br>(0.037)       | -0.078*<br>(0.034)     | 1.968***<br>(0.055)  |
| 연령             | 4.749***<br>(0.307)    | -8.194***<br>(0.963)  | 22.620***<br>(1.587)    | 6.335***<br>(1.564)     | 12.550***<br>(1.392)   | 83.259***<br>(2.361) |
| 연령 제곱          | 0.035***<br>(0.004)    | 0.060***<br>(0.012)   | -0.295***<br>(0.021)    | -0.123***<br>(0.020)    | -0.153***<br>(0.018)   | -1.142***<br>(0.029) |
| 교육연수           | 11.915***<br>(0.519)   | -11.550***<br>(1.817) | -0.017<br>(2.611)       | -15.024***<br>(2.048)   | 17.648***<br>(1.844)   | 66.908***<br>(4.095) |
| 교육연수 제곱        | -0.059***<br>(0.015)   | -0.124**<br>(0.043)   | 0.168*<br>(0.066)       | 0.363***<br>(0.054)     | -0.351***<br>(0.049)   | -2.102***<br>(0.102) |
| 연령*교육연수        | -0.488***<br>(0.010)   | 0.360***<br>(0.051)   | -0.310***<br>(0.078)    | -0.007<br>(0.017)       | -0.136***<br>(0.015)   | 0.252***<br>(0.036)  |
| 미취학 자녀수        | -4.840***<br>(0.500)   | 3.658*<br>(1.526)     | -1.793<br>(2.061)       | -14.037***<br>(1.046)   | -7.885***<br>(1.003)   | 33.013***<br>(2.241) |
| 부모 동거 여부       | 31.413***<br>(0.355)   | 4.671<br>(2.936)      | 37.547***<br>(4.120)    | -2.448***<br>(0.591)    | -6.527***<br>(0.509)   | 0.069<br>(1.293)     |
| 상수항            | 469.654***<br>(17.390) | -44.946<br>(65.582)   | 1576.002***<br>(89.037) | 1673.434***<br>(30.077) | 547.307***<br>(50.647) | 151.068<br>(126.235) |
| log-likelihood |                        |                       | -2698.852               |                         |                        |                      |
| R-squared      | 0.993                  | 0.818                 | 0.432                   | 0.986                   | 0.919                  | 0.980                |
| left-censored  |                        |                       | 477                     |                         |                        |                      |
| uncensored     |                        |                       | 671                     |                         |                        |                      |
| Observations   |                        |                       |                         | 1,148                   |                        |                      |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